

수산특정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신어업 · 어촌발전전략연구

신어업 · 어촌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New Strategies
for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2003. 2

연구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어업·어촌발전전략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	김 정 택
연구원	:	김 정 봉
연구원	:	신 영 태
연구원	:	류 정 곤
연구원	:	주 문 배
연구원	:	김 성 귀
연구원	:	최 성 애
연구원	:	이 승 우
연구원	:	정 명 생
연구원	:	강 종 호
연구원	:	홍 현 표
연구원	:	윤 동 한
연구원	:	조 정 희
연구원	:	이 상 민
연구원	:	최 종 두

신어업 · 어촌발전전략 연구

A Study on New Strategies
for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요 약)

목 차

I.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1
1.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2.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II.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5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 기반의 조성	5
1. 과학적 조사·평가 시스템의 구축	
2. 내수면 잠재력 조사	
3.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6
1. 어업관리제도 전회과 TAC제도 확대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3. ITQ 제도의 도입 추진	
4.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9
1.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2. 자율관리어업 확대·보급	
III.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1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11
1.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2.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13

1.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2.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 확대
3.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4.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5. 해외양식어장 개발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15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2.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 강화 16

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2.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3.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4.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제5절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17

1.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2.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IV.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18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18

1.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2. 원산지표시제 강화
3. 수산식품의 종합위생관리시스템 도입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19
1.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2.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3.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방안 연구	
제3절 거점산지·소비지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20
1. 산지 유통체계의 개선	
2.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3.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4.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5.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21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2.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3.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22
1. 소비자 정보체계 구축	
2.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3. 생선회 유통 활성화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23
1.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2.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3.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4.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제7절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24

V.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25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25
1. 직접지불제 도입	
2.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25
1.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2.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3.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28
1.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제4절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28
1.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2.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VI.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30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30
1. 수산통계의 기반확충	
2. 수산·어촌 정보화 확충	
3. 수산분야 산업연관분석 시스템의 구축	
4.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제2절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31

1. 첨단수산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추진
2. 최신기술의 보급체제 개편
3. 수산전문인력 양성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33

1. 지방 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지방의 역할
2. 수산관련조직의 개편
3. 수산어촌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VII.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34

제1절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34

1. 어촌종합개발사업
2. 어항시설의 정비·확충 방안
3.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4. 어항·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5. 어촌·어항제도 개선
6. 정주어항 개발
7. 어항의 최적규모 결정 및 현대화 방안 연구

제2절 어업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37

1.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2.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3.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4.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5.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39

1.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2.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3.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연안여객선 중심)
4. 친환경적 어촌 정비
5.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6.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41

1.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2.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3. 어촌 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4.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5.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6.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7. 어촌 문화복지 개선
8.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9. 어촌 노인복지 증진
10. 『어촌복지특별조치법』(가칭) 제정 및 운용방안

I. 수산환경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1.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 개방화·자유화·국제화·분권화 등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 해소 및 열린 세계의 실현을 통한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
-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산정책으로 전환
- DDA 협상과 FTA 추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전망
- 국내생산량은 정체되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까지 수급불균형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1-1〉 수산물 장기수급 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1998	2000	2003	2007	2010
국내소비량(A)	2,769	3,183	3,570	3,550	3,620
국내생산량(B)	2,835	2,779	2,860	2,920	2,960
부족량(B-A)	66	-404	-710	-630	-660

-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어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
- 남북 긴장의 완화로 수산분야의 지원과 협력관계의 중요성 증대

2.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고 공해 및 EEZ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요구
- WTO/DDA 협상에서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은 관세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수산물의 수입 증가 우려
- 해양오염·자원남획으로 2001년 현재 연근해 수산자원의 톤당 생산량이 75년 대비 32% 감소
-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소비량은 증가하여 자급율이 1980년 138%, 1990년 127%, 2001년 82%로 계속 하락

〈표 1-2〉 수산물 자급율 변화

구 분	1970	1980	1990	2001
수산물생산(천톤)	935	2,410	3,275	2,665
국내소비량(천톤)	776	1,746	2,583	3,260
자급율(%)	120	138	127	82

- 어가소득 정체 및 어촌정주여건 악화로 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 어가소득은 1991년 11,309천원에서 2001년 22,252천원으로 96.7% 증가율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은 126.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저조

〈표 1-3〉 어가소득 추이

구 분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감('01/'00)	
							금액	%
어가소득	11,309 (12.8)	18,780 (9.8)	16,794 (-17.4)	18,428 (9.7)	18,875 (2.4)	22,252 (17.9)	3,376 (-)	17.9 (-)
어업소득	5,285	9,437	9,254	10,323	10,078	11,087	1,009	10.0
어업외소득	3,776	6,075	5,201	4,882	5,313	6,504	1,191	22.4
이전수입	2,248	3,268	2,339	3,23	3,484	4,661	1,177	33.8

※ 주 : ()는 전년비임

3.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 19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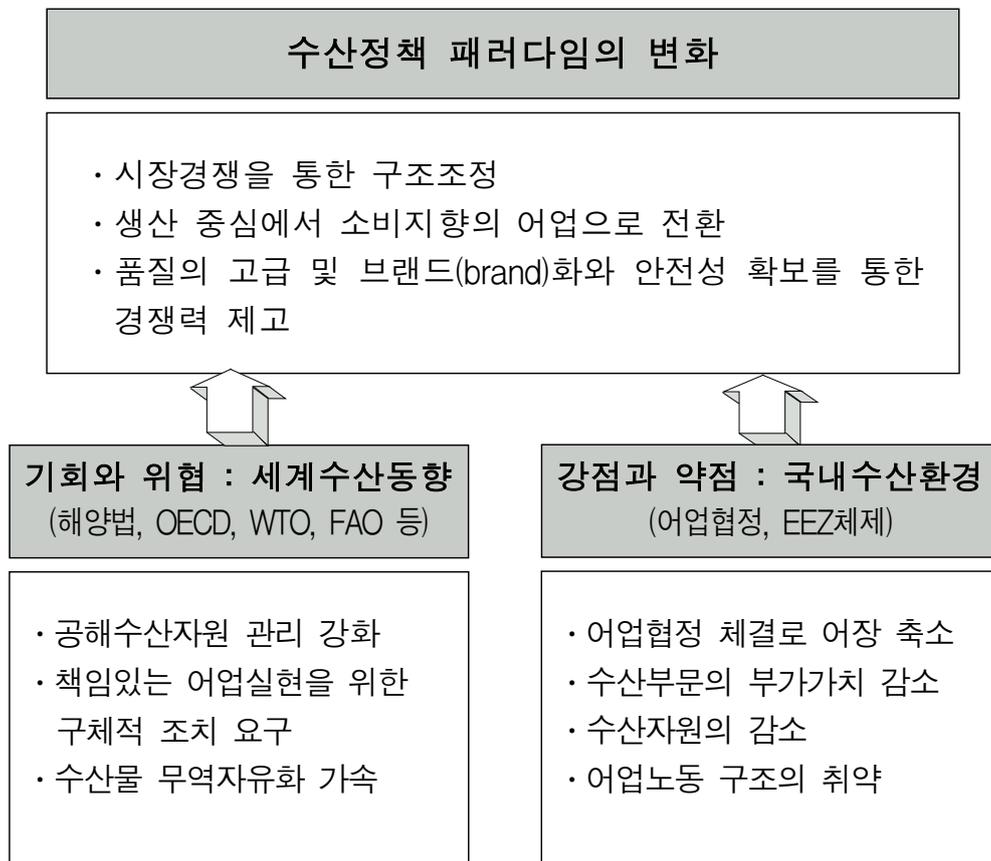
- UR 타격을 앞두고 농어촌구조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
 - 어업구조개선사업('92~'98)과 수산진흥종합대책('99~'04) 추진
-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을 억제하고, 바다목장과 인공어초사업 추진 등 수산자원조성의 기틀을 마련
- 무허가어업, 허가어선의 탈법어업 등 위법적 어업행위의 지속으로 생산중심의 어업정책 실효성이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어업인·어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
-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과 여건변화 등으로 유통·가공산업의 취약점과 수산

물 공급 시스템의 비효율성 노출

- 어촌의 생활개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과, 도시와의 교육·문화적 격차는 여전히 확대
- 지역적 특성이 강한 수산정책 집행주체의 역할분담 미흡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 수산동향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과 위협요인 제거, 국내 수산여건 변화로 인한 강점·약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산정책을 수립
 -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품질의 고급 및 브랜드(brand)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기비전
 - 자립할 수 있는 수산업
 -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 실현
 - 바다·어장의 공익적 기능 유지로 수산자원의 국민적 가치를 극대화

4 요약

□ 수산정책의 기본방향

-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사는 어업 구현
- 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중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육성
- 어업 생산단위의 효율화와 자율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과 경쟁력 향상
-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어항의 개발 등 어업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
- 정책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융자 정책과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의 운용

□ 세부추진 과제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 소비자 지향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 중앙·지방 및 관·민의 역할분담과 제휴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 수산정책 과제의 계획시점에서부터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집행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
-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사후평가 및 관리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

Ⅱ.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의 기반의 조성

1. 과학적 조사·평가 시스템의 구축

- 200해리 EEZ제도 시행, 책임있는 어업의 실현,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대응을 위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시스템을 구축
 -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자원관리 수행을 위한 자원평가자료의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 조사·평가 시설 확충
 - TAC 어종의 확대, 연안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와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연구인력 확충
- 「수산자원 조사·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수행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합진단 및 기본(안) 제출
 - 해양수산부, 관계전문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협의 후 계획 확정
 - EEZ내 자원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700톤급 자원조사 전용선 2척 확보
 - 과학어탐, 트롤어획 시험장비 등 자원조사 필수 첨단 장비 확보
- 연안수산자원의 조성, 평가, 관리의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 구성

2. 내수면 잠재력 조사

- 내수면 자원은 바다생물자원과 더불어 중요한 자연자원이므로, 이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및 미래자원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내수면 잠재력 조사 시행
 - 조사대상 수면은 댐·호, 호소(저수지·늪), 강·하천, 양어장, 낚시터 등
 - 댐·호 및 양어장은 전수조사하고, 호소는 1ha 이상의 호소, 강·하천은 직할 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낚시터의 경우는 허가, 신고 낚시터 및 개발가능 수면을 대상

3.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설립
 - 법률 근거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20조
 - 조직은 본부(1), 동(2)·서(2)·남해(4) 등 9개를 설치하고, 인원은 약 100여명으로 하며,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 주요기능은 수산자원조성수면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관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위탁,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TAC제도 읍저버 운영,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운영·관리 및 기타 자원 관리·조성에 관련 정부위탁사업으로 함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1.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 어업자원을 보전하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업자원 관리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입구규제방식인 종전의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출구규제방식인 TAC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및 어업관리의 선진화 도모
- 효율적인 어업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TAC 어종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상업종도 확대하여 TAC제도 실시
 - 현재 TAC 실시 8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 소라)을 2010년까지 20여개 어종(꽃게, 갈치, 삼치, 강달이, 오징어, 병어, 골뱅이, 황아귀, 가자미, 복어류, 말쥐치, 참조기, 붕장어 등)으로 확대
- TAC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체제 구축 및 읍저버 제도 확대 실시

- TAC 대상어종 확대에 따라 양륙항 읍저버를 2010년까지 100여명으로 확충하고, 대상어선 2,400여척 중 10%를 표본승선 조사하기 위하여 승선 읍저버를 2010년까지 60여명 확보
- 어업자원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업자원관리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도입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휴식장 확대 및 자원의 인위적 증식을 통하여 고급 수산물 공급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 및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수용능력 증대, 다양한 바다이용에 부응한 수산자원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기능성 어초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재 51% 수준인 인공어초사업을 2004년까지 60%(185천ha), 2010년까지 100% 달성하여 인공어초 어장을 확대 조성함
 - 연안어장 수심 70m이하 수역에 일반어초 15종 및 시험·연구어초를 시설함과 아울러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어초를 개발함
 - 연안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종합정보망 조기 구축
 - 기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폐어망 수거, 보존상태 파악 등 어초어장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전 인공어초어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추진
 - 해역별로 규모화·단지화하여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사업 및 해중림 조성등과 연계 추진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특화품종을 종묘방류하여 경쟁력 강화
 - 해역특성에 적합한 특화 품종을 적극 육성하여 방류하고, 방류품종 다양화 및 확대 지원을 통한 민간종묘 배양장 활성화 도모
 -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중간육성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2010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연안으로 확대
 - 2010년까지 남해안 다도해, 동해안 개방연안, 서해안 갯벌 및 제주도 연안암반형 등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
 - 해역별 모델을 기초로 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으로 바다목

장을 확대해 나가며, 3단계에서는 어업인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일반사업으로 추진하여 전 연안을 바다목장화

- 해역별 모델 개발에 이어서 순수어촌형, 낙도형, 도시근교형 및 기능형 바다목장 모델을 개발하여 전 연안을 바다목장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

3. ITQ 제도의 도입 추진

- 개별할당량을 양도할 수 있는 ITQ제도는 어업자원의 최적배분이 가능하고, 어업에 투입된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업관리제도임
- 우리나라 TAC제도를 ITQ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ITQ제도의 도입조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ITQ 분배체계 및 공급관리체계, ITQ 거래체계 및 보고체계, 자료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방안의 검토가 필요

4.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 우리나라 내수면 토산어종은 산란·서식지가 무분별한 내수면 개발로 파괴되었고, 내수면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에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 또는 야생동식물 보호 등으로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
- 내수면 토산자원을 증강하여 생태계 보존을 꾀함과 동시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면 유어의 활성화로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
- 목표 연도까지 약 2억 마리의 종묘를 방류하기 위하여 시·도 내수면시험장의 토산어종 인공종묘 생산 방류 사업 지원을 확대
- 종묘생산업의 활성화와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으로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표연도까지 약 5억 마리의 토산어종 치어를 매입하여 방류
- 연어치어 방류는 연어 치어의 인공 부화 방류 사업확대를 통한 연어자원의 증대,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등에서의 국제적인 모천국 지위 확보,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국민의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
- 따라서 연어방류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연채포 연어치어를 매입하여 축양 후 성숙 채란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연안의 중간 육성장 시설을 설치
- 목표 연도까지 연어치어 약 6억 마리를 방류하고 생존율 증대를 위한 중간육

성 방류크기를 3g 이상으로 하며, 연안 소상 하천 환경 정화 및 새로운 하천을 개발

- 연어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연어부화장 신축 및 노후 연어 부화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방류어종의 확대 및 북한에도 방류를 시험적으로 실시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1. 자율관리어업 모형 개발 및 정립

- 자율관리어업의 이론적 모델 구축
 - 자율관리어업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참여운동, 의식면에서는 의식개혁운동, 활동면에서는 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함
 -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와 연계된 개념으로 시작하여 차츰 확대하여 수협 등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촌사회 운동으로 확대 적용
 - 자율관리의 방식, 자율관리 주체의 역할, 법제도적인 정비, 지원 혹은 인센티브의 제공방식 등에 관한 자율관리 모델 구축
- 자율관리 모델의 개선과 사례발굴
 - 자율관리어업의 추진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을 계속 수집·분석하여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함
- 자율관리어업은 우선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추진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함
 - 어장관리·자원관리·생산관리에 있어 어업인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
 - 정부는 자율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 우선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추진

2. 자율관리어업 확대·보급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방안 수립
 - 자율관리어업 모델 정립 및 제도개선 등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정부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민·관·학·연이 협동하여 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사업이 아닌 어업인 자율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킴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체제의 개선
 - 자율관리어업 집행주체는 현행대로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되 지방해양수산청 주관의 형태에서 자율관리협의회(가칭) 주관으로 이행
 -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지역별 자율관리협의회(가칭)를 두어 정부와 민간의 완충, 중재,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
 - 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은 제도, 예산 등의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술지도 및 연구지원은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
 - 자율관리어업의 추진방식은 자율관리 규약, 자율관리위원회 등의 세부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대상자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모범사례를 제시
 - 자율관리 내용과 제도의 상충, 분쟁 등의 문제는 자율관리협의회(가칭)에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자율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의 사업내용 중 합당하다고 협의회에서 판단되어 정부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

Ⅲ.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1.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 연근해어업 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연근해수역의 자원량에 비해 어획량은 과도한 수준이므로 2003년까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선 감척계획의 전면적 재조정

〈표 3-1-1〉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어업자원량

한·중·일 주변수역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자원량	적정어획량	어획량	자원량	적정어획량	어획량
2,800만톤	800만톤	1,178만톤	479만톤	125만톤	160만톤

※ 현재 어획량 160만톤(한국 117, 중국 40, 일본 3) : 과학원 분석자료(1999)

- 근해어선은 기존 감척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감척을 완료하고, 연안어선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연안어선의 10%수준을 추가 감척 실시
 - ※ 연안어선 감척규모(2004~2008) : 6,300척
 - 대 상 업 종 : 연안의 산란·서식수역에서 자원을 남획하는 연안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선망, 연안조망 어선 등
 - 감척우선순위 : 노후어선, 고령어업자, 자율관리주체(어촌계등)가 선정한 어업자 등
- 자원회복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원의 재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획노력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
 - 어선 기관마력, 선복량 및 어구 사용규모를 제한하고, 아울러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성·안정성을 갖춘 표준어선형 10종을 2007년까지 개발·보급 확대
 - ※ 어장여건, 수산자원수준,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어업별로 경제성 있는 기관마력 및 선복량 제한 설정

-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연근해 업종별 허가정수를 전면 조정하고, 유희 어업허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하며, 정기적인 허가 일제정비를 제도화 하여 허가관청의 관리의무를 강화
- 아울러 연안어업은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
 - 지역특화 어업의 발굴 및 어선어업과 증양식 어업의 효율적 결합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우수한 어업기술이나 양식기술도 어장환경이 악화되면 기술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어장환경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커지므로 어장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검토
 - 앞으로 어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업의 생산지인 어장의 환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어장관리의 종류·구분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
- 경쟁적으로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오염 및 어장선점 등으로 인해 어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인과 어구의 실명연계를 통하여 어구실명제 도입
 - 대상어업 : 통발·자망·안강망어업, 일부 정치성구획어업
 - 표시사항 : 허가사항, 어업자명 등을 기재
 - 어구표지 모델개발 및 보급 추진(2004년)

2.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하여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어기중 매년 2~3개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휴어할 수 있도록 휴어제를 실시
 - 저인망·트롤·통발·안강망·선망 등을 대상업종으로 하며, 휴어기간 중 추정 소득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 어업에 있어서 직접보조금의 경우 향후 상당부분이 감축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어획노력량을 줄여 어업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허용가능한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어업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휴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
 - 외국의 휴어제 실시 및 그에 따른 소득보전방안 사례분석 및 도입여건의 적합성 여부검토와 함께 휴어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1.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능력과 해류의 흐름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어장재배치와 양식시설물의 조정, 무면허 및 법정기준 초과시설의 철거 및 양식어장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 어촌계와 수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조류 양식어장 관리주체를 지구별 수협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 어장개발·이용, 양식 품종 선택 및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수협에 권한 부여
- 연안어장 환경평가를 통하여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기반을 조성·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양식품목의 점진적인 생산량 감축 유도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생산과잉 양식품목에 대한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

2.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 등 친환경적 사료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
 - 사료급여 자율개선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고, 배합사료 기술개발 확대 및 연구방향을 정립하여 배합사료와 환경·질병 등을 병행 연구
 - 사료검사규정 및 사료공정규격고시의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연구·지도인력 확보 및 협의회 구성 등을 제도화
 - 배합사료 사용어업인 지원금 및 생산업체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

※ 외국의 사례 : 노르웨이에서는 단위면적당 사료사용량을 규제하여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

3.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해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
 - 어병방역센터를 운영하고 어장관리 지도 강화를 강화하여 질병 조기발견에 의한 적정 치료대책을 강구
 - 어병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한 질병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질병 관리사·관리원 제도를 신설
-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2002.1)에 따라 2004.1부터 제도 시행
- 난치성질병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및 인력 확충

4. 지속적인 어장환경 개선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증가와 장기연작에 따른 자가오염 등으로 어장 자정능력 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어장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전국 연안어장 238천 ha를 대상으로 어장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적조 등 어업피해가 빈발하는 지역 및 어업권 밀집해역 82천ha를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
 -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과 정화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어업권자의 어장청소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강제수단을 확보
- ※ 법적근거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질 및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고시(어장관리법 제11조)
-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제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도입을 추진

5. 해외양식어장 개발

- 해외 양식수산물의 생산증대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저비용의 고급수산물을 생산·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어업인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양식어장 개발
-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하여 해외 양식어장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개발·투자전략 수립 후 추진

- 투자의 안전성 검증 및 현지 고급어종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양식 추진
-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외국의 어장과 노동력 결합하는 국제분업을 통해 고급어종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해외 양식어장에 대한 적지 및 타당성 조사 후 해외진출 시도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 불법어업의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은 물론 업종간 균형발전을 지향
- 국내외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하고 단속체제를 개선
 - 불법어업 지도단속시 집단저항·도주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지도선 및 첨단장비 연차적 확충
 - 기관별 책임단속제 도입, 어업지도 단속기관 조직개편, 어선입출항 통제기능 보장, 위반어선 벌칙 강화 등 제도개선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가칭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설치·운영 근거 마련(2003 이후)

2.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 수산자원관리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국민여론 형성을 도모
 - 어업인 결의대회 개최 및 자율신고체제(포상금제도 도입) 활성화
 - 불법조업 시기 파악, 사전교육 실시, 불법어업정비 우수기관 표창 등
- 정부주도의 자원관리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관리어업의 모형을 개발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 및 제도적 지원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 강화

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 경쟁력이 약한 업종 및 노후된 원양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
- 대상어업 : 오징어채낚기, 콩치붕수망, 해외(기지)트롤, 북양트롤

2.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업종에 대한 노후선 신조대체지원을 강화하여 산업기반의 확충을 유도
 - 참치연승어업의 원양 주력업종화

3.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 원양업체의 경영안정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강화 및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으로 금융부담 경감 도모
 - 원양 출어자금 연간 운영규모 3,740억원 유지(해외생산지원자금 2,590억원, 영 어자금 1,150억원)
 - 시중 일반대출금리 및 경쟁국 금리를 감안,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4.5% → 3%)
- 참치연승어업은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나 선박노후화로 인 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체선 건조를 지원

4.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협정에 따른 어장상실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이에 타격을 받는 원양 어업에 대하여 업종별 감척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통하여 해외 신어장 개척사업을 확대 추진
 - 주요 연안국 어장정보를 제공하여 업계 스스로 신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유도
- 해외어장 조사사업 전담기구 설립
 - 어장성이 있는 수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사업 추진필요
 - 전담기구가 수익성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여 정부지원을 최소화

제5절 신해양 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1.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협력사업 강화와 책임어업 이행
 - 어업협정 및 약정 체결국의 기술연수생 초청과 주요 수산국에 어업 교섭관 파견으로 수산외교 활성화
 - ※ 브라질·모로코 등 주요 연안국과 어업협력 약정체결, 남동대서양수산기구·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등 가입 추진
 - 국제규범 이행 및 지역수산기구 참여로 우리 원양어업 이익확보

2.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 EEZ의 경계 확정 이후에도 회유어종에 대한 자원 관리는 반드시 3국이 공동으로 행해져야하며, 정착성 자원 역시 인접국의 어업에 따라 연관된 생태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업자원에 대한 3국의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
 - 동북아 공동어업관리위원회 설치 방안의 검토 및 동 위원회의 운영과 연근해 어업 연동 관리체제 구축
- 국가 간 공동어업관리를 위해서 통일되어야 할 선행과제
 - 어획량 할당제 실시방법과 과학적인 파라메타 추정
 - 어업관리의 투명성과 상이한 기준의 조정
 - 어구어법의 표준화

Ⅳ.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1.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 수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 수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됨. 극복을 위해 단편적인 수산업 보호조치를 넘어선 고품질 품목개발·생산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구조를 구축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 품질인증 선정기준 및 방식의 객관성 제고와 대상품목 확대·발굴, 업체 우선 지원 등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2. 원산지표시제 강화

- 수입 수산물의 국내 대량 유통과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여 국내 수산업종사자 보호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립이 필요
 - 국제규범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고, 유통 건전성 확보와 함께 환경표시제, 식품표시제도 등과 연계한 식품위생안전 확립방안으로 활용
 -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 제작·배포, 표시방법 및 식별방법 홍보 교육, 국내법 정비 및 보완, 품목확대 시행방안 등을 추진

3. 수산식품의 종합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 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와 수입수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HACCP를 확대 시행 할 필요성 대두
 -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 수출입 및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의 강화 및 검사장비를 확충
 - 수출입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수산물 전반으로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

- 수산식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생안전모니터링 및 위해관리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위생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HACCP의 조기 정착과 Traceability System의 공동 운영을 통해 소비 전단계의 위해요소 제거와 수입관리효과를 확보
 - HACCP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기관의 정비, Traceability System 도입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 마련 및 어업인과 유통인들의 의견조사 강구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1.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 수산물가공산업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실한 기초자료 확보로 정부정책 수립·시행, 업체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

2.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수산물가공산업의 업종별 비교우위 분석 등 대내외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한 집중육성 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산업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
 - 업종 및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및 수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업종 및 품목을 도출
 - 국내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3.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방안 연구

- 경영활동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화·협업화의 유도를 통한 영세·중소업체의 효율성 제고
 - 동종업자간 공동사업 및 협력관계를 맺어 원료구입에서 제품판매까지 전 사업과정 합리화, 설비 공동사용에 따른 투자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 영세·중소형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공동화·협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제3절 거점산지·소비지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1. 산지 유통체계의 개선

- 수산물 산지시장은 물량집적을 통한 권역별 거점시장, 물류 강화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산지시장을 선정, 육성
 - 전국 주요 위판장 5개소를 대형거점시장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산지가격교섭력 강화, 규모의 경제 달성, 해당 권역 수산물 공급거점으로 활용

2.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 수도권 소비지도매시장은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심각히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국제적·현대적인 수산물 유통중심기지로 조성
 - 수산물시장의 시설낙후, 협소로 본연의 기능 발휘 힘들
 - 가락시장은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노량진시장은 리모델링하여 잔존

3.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 사회적 물류비용 절감, 시장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산물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
 - 수산물 물류개선 총괄기본계획의 수립이 우선되고, 이후 세부 각론(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제품규격 등)의 동시 추진이 필요

4.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 공영 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 정착과 수산물 식품산업으로 발전
 - 상장경매 실질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상품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 거래제도 도입 유도, 불합리한 거래제도는 농안법 개정으로 수산물 특성을 반영 추진
 - 유통, 가공, 안전성 등을 망라한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으로 수산물 유통에서 수산물 식품산업으로 발전 기틀 마련

5.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

- 향후 비용절감과 물량조달 원활을 위해 중개자 중심 B2B인 수산물 e-Marketplace 형의 사이버도매시장이 장기사업으로 구축될 필요성 대두
 - 미래지향적 기반조성으로 사이버도매시장, 수산물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합한 21세기 e-비즈니스에 부합하는 거래환경 조성
 - EDI표준 제정, 거래시스템(경매, 역경매 등), 결제 및 리콜시스템(recall system) 등 개발이 필요
 - 비생산요소의 단일 거래보다 생산요소거래를 동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B2C 결합으로 이용률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적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 수매비축제도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면서 WTO 대비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시스템으로 개편
 - 정부수매 점진적 축소 및 탄력적 수매, 정부비축사업 기능을 점진적으로 민간 이양, 생산자단체 출하조절 자금 조성 지원 추진

2.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
 -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후 도상훈련과 김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품목확대 및 민간이양

3.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업 관측센터를 설립

- 어선어업에 비해 생산량의 불확실성이 적고 계획생산이 가능한 양식수산물 (김, 미역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사업성과에 따라 타 양식품목으로 확대(굴, 넙치, 피조개, 조피볼락 등)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1. 소비자 정보체계 구축

-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산업간·업체간 경쟁 촉진요인으로 작용해 생산중심의 수산업 진흥정책은 실효성이 저하
-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소비형태를 설정하여 유도
 - 소비선호 변화 등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피드백 체제를 구축

2.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 수산물 소비가 1990년 중반 이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동시에 전개
 -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불식시키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
- 잠재적 수요층 육성을 위해 소비자선호를 반영한 요리법 및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위해요인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수산식품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방안 모색

3. 생선회 유통 활성화

- 생선회 유통활성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증대하고, 선어회를 보급함으로써 저렴한 가격, 간편·안전한 생선회 문화 정착을 유도
 - 선어회 가공공장 육성과 선어회 마케팅 및 홍보체계 구축으로 가격안정, 불필요한 비용절감으로 산지가격경쟁력 제고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1.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

-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 우수 수산물 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수출주력품목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 부가가치 제고로 수출 증대
 - 서울국제수산박람회 개최로 수출시장 활성화 도모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확충으로 수출기반 조성
- WTO/DDA 협상대응력 강화
 - WTO 도하개발 아젠다 관련 협상대책단을 운영, 연구용역수행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최적의 협상전략을 마련
 -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진행되는 현지협상에 적극 참여
 - 주요 협상동향을 어업인에 수시 전달하여 협상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2. 수산물 관세인하 대응체제 구축

-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수출상대시장에 대한 조사와 수산물 관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대두
 - WTO/DDA 협상결과에 따른 단계적 점진적 관세인하
 -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지속유지
 - 수출주력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증대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 할당제도(TRQ)의 도입을 검토

3.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 향후 FTA, WTO/DDA 등으로 인해 원양 및 수입수산물의 유통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 실태 파악하여 정책 반영 필요 증대
 - 수입 및 원양,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실태 및 물류체계의 조사와 효율성 분석이 필요

- 연근해산 수산물과의 경합관계 및 경쟁요인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소비인식 및 선호분석, 물류거점 확대를 통한 시장유통체계의 구축 및 수입·원양수산물의 유통개선 방안 검토
- 원양어획물 수급정보 일반화, Cross-Check System개발을 통한 거래투명성 확보, 반가공품 반입촉진

4.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산물 물류중심(Hub) 시장 조성을 위하여 부산에 산지를 대표하는 수산물 종합유통기지를 구축함
-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활용하여, 부산 감천항에 수출입 수산물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 일괄(one-stop) 체계의 수산물종합보세구역을 조성

제7절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
 - 남북수산협력기금의 별도 조성, 수산교류협력을 위한 관·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한측 협력파트너의 조직화 등
 - 대북 수산협력사업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수협중앙회), 기업 등 협력주체별 효율적인 기능의 분담이 필요
 - ※ 정부 : 수산협력에 관한 제도설정 및 운용, 재정자금 및 기금의 배정
 - ※ 수협중앙회 : 협력사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조직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체제를 고도화하고, 북한 수산업 전문연구 기능을 신설하여 체계적 연구를 수행
 - 활어 및 선어의 반입 촉진, 반입수산물의 현지 품질확인을 위한 간이집하시설 등 현지 유통시설 지원을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어로, 가공 및 조선·수리 등 협력범위를 확대
 - 남북한 학계·연구기관·생산자단체 등 공동으로 어업실태 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를 검토

V.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1. 직접지불제 도입

- WTO 출범에 따른 국내수산물 보조금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의 생계형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검토
 - 환경어업, 자원 보전, 노령어가 조기은퇴, 조건불리어촌, 재해보상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대상
 - WTO/DDA의 협상추이에 따라 도입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형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2.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 환경이라는 바다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직접지불제 시범실시가 필요
 - 가두리 및 수조식 양식어업의 경우 생사료 사용이 전체의 90%로 연안어장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 시범실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류 양식어업의 경영비조사,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의 전환에 따른 제반문제, 지원수준 및 지원조건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1.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통폐합
 - 세분화된 수산정책사업(약 90여개)을 사업별·재원별·시행주체별·금지 가

- 능성별·직불제 전환 가능성별로 재분류
 -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 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고, 부정적 보조금 사업은 직불제로 전환 또는 폐지 및 축소 방안 강구
- 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
 - 영어자금제도는 국내 금리가 선진국 금리수준으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 규모 확대 및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신보의 기금규모, 역할 및 어업 담보물건 대상 확대
- 수산발전기금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수산발전기금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기금의 적정규모 산출 및 효율적 운영 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기금 확보를 위해 각종 수산관련 융자성 정책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등 제정시 FTA 체결로 발생한 관세감면액을 출연하는 방안과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3조 2항에 따라 차관 및 채권의 발행 등을 검토
- 종합자금제도 도입
 - 종합자금제도는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실시 등 3단계로 나누어 도입 추진함
- 민간 수산금융제도 활성화
 - 수산기업 및 어가에 대한 수산금융 기능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수협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여 상업금융(commercial banking)을 활성화
 - 수산금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어업인들의 금융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관련 각종 금융정보 네트워크 구축

2.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 어업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WTO/DDA 개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구축
-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방안을 마련
-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직접직불제 등을 통한 소득보전 기능강화 도모

3.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 일반부채를 장기 저리부채로 전환
 - 어가의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일반부채 규모의 비율을 전체 부채 규모의 약 60%로 하고, 일반부채를 현행 정책자금 금리 수준인 4%로 5년간 대체
- 기존 수산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현행 평균금리 4.87%를 단계적으로 1.5%까지 인하하여 금리부담을 경감
- 대손보전기금의 법정화 및 기금 확대
 - 미법정 대손보전기금을 법정화하여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출연 등을 통하여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신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신보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 농업보다 불확실성이 큰 수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의 확대와 더불어 수산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손보전 기금의 비율을 확대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현행 어업용 석유류 면세체제 유지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추진
- DDA 논의에 따라 규제가능성이 높은 수산관련 조세지원체제를 개선할 필요성 증가
 - ※ 조세 감면중 면세유 공급에 의한 어업인 수혜액은 5,218억원(2001년 기준)으로서 전체 어업인 수혜액 7,050억원의 3/4을 차지
 - 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 등 수산세제지원제도는 현행을 유지하되, 향후 DDA의 협상결과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환급 또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어업인 경영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수산관련 세제의 개편을 추진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 추진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1.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 어업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선원보험제도를 개선
 - 어선톤급에 따라 적용법률이 이원화되어 있는 선원보험을 일원화하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수협이 어선원 및 어선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 양식어업의 지속·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어류양식에 대하여 태풍(폭풍)·해일·적조의 위험을 부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양식보험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품종, 대상재해, 대상어가 및 국고보조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선행연구 필요
 - 재해보험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 대상어업인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어업재해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본사업 추진

제4절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1.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회원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 회원조합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합 경영개선을 조기에 완료
 -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감사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지원·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2003년 상반기)을 추진

2.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 수협중앙회의 잠식된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
 - 신용사업 부문의 자본분리 등으로 잠식된 자본적립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

- 원하고, 자체 자구노력을 실시하여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
- 국제원유가 불안정 및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고 안정적 유류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40만 드럼 규모의 대형 유류저장시설 설치를 지원

Ⅵ.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1. 수산통계의 기반확충

- 통계조사기획, 집계·처리, 결과공표 및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
 - 수산기초통계 확립을 위한 어업생산통계 조사방식의 개선 및 새로운 통계 개발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조사지침서 개편
 - 조사대상 표본어가 1,360호중 1/3을 개편

2. 수산·어촌 정보화 확충

- 어촌과 도시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의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정보화 환경을 조성
 - 공익적인 수산정보의 관리·운영을 위한 「수산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3. 수산분야 산업연관분석시스템의 구축

- 수산부문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수산정책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세분류 산업별 연관효과 분석, 거시경제 요인의 수산부문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이 필요
 - 수산분야의 타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유발효과, 유통 및 가공업을 포함한 수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수산분야의 산업연관표 작성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투입구조와 산업연관 관계를 연구 검토

4.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수산업의 생존전략과 국제 수산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분석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정책 추진 필요
 - 수산업의 개념과 산업분류, 수산업 생산자 단위와 어가, 산업의 구조, 행동,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및 추정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방안 도출
 -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산물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해 교역 대상국과의 산업 내 무역 발생 요인과 산업경쟁력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산업경쟁력 결정요인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국내시장의 조건, 즉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산업정책의 개발
 -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 효율화와 안전성 관리체계의 개선

제2절 수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1. 첨단수산기술개발 사업의 확대 추진

- 수산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촉진
 - 생명공학, 인공지능제어, 환경수산기술 등의 미래유망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형 신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단순한 생산성 증대에서 친환경적 안전성, 고품질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
 - 환경친화적 양식기술 및 어구·어법 연구개발과 보급, 양식생물 질병예방 백신 개발, 양식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2. 최신기술의 보급체제 개편

- 기존의 수산기술관리소의 기능을 환경변화에 적합한 체제로 정비
 - 수산기술관리소를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품 발굴을 위한 시범어장의 운영 등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로 육성
 - 현재 13개 관리소가 보유중인 기술지도선을 「1관리소 1지도선」 확보를 통하

- 여 현장출동 기능을 강화
 - 최신첨단 시험분석장비의 확보로 새로운 기술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과학적인 수산기술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확립
- 수산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체제 재정비
 - 연구관리체제를 성과관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엄정한 목표관리체제를 구축
 - 기술이전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및 평가시 기술이전 성과를 반영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과학기술정보 보급의 네트워크를 구축

3. 수산전문인력 양성

- 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
 - 수산계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학부), 대학원(석·박사), 박사후 과정을 연계하는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
 -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 관련 기관 및 행위주체간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
 - 수산계 대학의 특성화 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체제를 강화
-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 수산계 고교의 운영체제를 자영수산고와 일반수산고로 이원화하고 자영수산고는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로 전환을 추진
 - 수산계 고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의 확대와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 수산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외적 환경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
- 수산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수산계 학교 졸업자의 어민후계자 선정의 우선권 부여와 동시에 어업경영기반 지원을 확대
 - 국가 및 지방직 수산공무원, 수협, 수산관련 단체의 직원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특별 채용 확대
 - 합리적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산·학·관 연계를 진작
 - 노령경영이양연금지도를 도입하여 전문수산인력의 신규진입 촉진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1. 지방 수산정책 강화 및 중앙·지방의 역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산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고유업무는 중앙정부로 환원,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으로 이관
- 중앙정부는 시도별 수산여건과 수산세력의 분포, 시도별 지방비중 수산분야 투입에 상응하는 국고 배분방안을 연구검토(2003년) 후 추진(2004년 이후 적용)

2. 수산관련조직의 개편

- 한·중,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협상전략의 수립과 회담참석, 불법어업 단속, 어업분쟁의 조정 등 행정업무의 확대에 따라 어업협상 및 어업지도 기능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 증대
-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지도를 위해 관련 전담부서의 증설 또는 확대를 추진
- 어업인들의 사회참여와 장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NGO의 협력 및 지원, 사회정책보험의 개발, 어촌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어촌사회복지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
- 수입수산물의 급증, 유전자변형(GMO)수산물의 확대 가능성 등 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부에 수산식품의 안전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보강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장비·인력을 확충

3. 수산어촌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UN 해양법협약, 수입자유화, WTO/DDA의 수산보조금 규제 논의 등 국제수산여건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산어촌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
- 현재 대부분 사안이 수산관련 개별법 위주로 제정·운영되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음
- 수산·어촌을 구성하고 있는 어업, 자원관리, 양식, 유통·가공 및 국제협력, 어촌개발 등 각 부문별 시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적 성격을 부여

Ⅶ.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제1절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1. 어촌종합개발사업

- 주변인구를 어촌으로 유입하여 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 어촌의 생산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변지역의 인구를 어촌으로 유입
 - 생산 및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을 전 국민을 위한 어촌공간으로 개발
 - 160개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2008년 완료
 - 대상사업은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 유통·가공, 관광·복지시설, 생활환경시설 등으로 설정

2. 어항시설의 정비·확충 방안

- 어항의 완공율과 어항의 다기능성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어항수요에 대처
 -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어항을 개발하고, 지방어항의 완공율을 제고하고, 어업활용도가 높은 어항은 어항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어업활용도가 낮은 어항은 환경친화적 어항으로 정비
 - 이용자 편의 위주로 정비
 - 다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정비하고, 계획된 국가어항의 건설 촉진으로 거점별 수산업 SOC를 구축하고, 지방어항의 기본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어촌정주어항의 지속적 정비·개발
 - 국가어항의 경우 기공사중인 어항 21개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모두 준공하고, 신규항만은 종합기능어항으로 개발
 - 지방어항의 경우 조기완공을 추진하고, 지역별 거점어항으로 발전

3.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 어항의 다기능을 확보하여 어항수요의 변화에 대처능력 함양
 - 어항수요가 수산업 생산기능지원과 더불어 문화, 관광, 복지, 휴양 등 복합기능으로 변함에 따라 종합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개발
- 휴양, 레저,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된 신규고용창출
 -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어항의 확대개발
 - 수산업 중심기능, 생활거점 중심기능, 교통물류 중심기능, 관광중심기능으로 세분하여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개발방향을 사전에 설정하여 개발
 - 다목적 어항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고려
 - 신규 지정어항 및 이용율이 낮은 어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 집중투자 대상을 선정
 - 민자유치 대상범위 설정

4. 어항·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 어촌·어항을 정비하여 어항시설의 현대화에 기여
 -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항배후시설 매각 등 민간자본에 의한 어항시설설치 적극유도
 - 공공자본 투자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시자본의 어촌투자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민자유치를 통한 어촌·어항 개발
 - 자본유입 촉진방안 개발
 - 유치자본 구분하여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유도
 - 개발이익의 주민분배 방안강구
 - 어촌의 자연경관, 고유의 전통문화가 보존되도록 민자유치 유도

5. 어촌·어항제도 개선

- 어촌·어항을 정비하여 주변의 인구가 유입되어 어촌경제 활성화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가칭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검토
 - 농어촌정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어촌개발관련 규정을 어항법과 통합정비

- 사문화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체계를 정비
-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이념에 입각한 어촌어항 정비계획제도 정립
- 어촌과 어항정비에 관한 방향과 목표설정 및 체계적 종합적 추진

6. 정주어항 개발

- 육지 소규모 어항을 정비하여 부족한 어항시설 해소에 기여
 - 어항의 규모 및 어촌의 특성 조사
 - 투자효과가 큰 소규모 어항을 선정하여 소규모 어항과 어촌을 통합정비하고 개발
 - 생산기반시설 정비
 - 소규모어항을 차별화하여 중요도가 높은 어항을 개발
 - 소규모 어항의 특성,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소규모 어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항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어촌의 생산기능과 관광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을 정비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7. 어항의 최적규모 결정 및 현대화 방안 연구

- 어항의 규모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어항의 개념 및 어항의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어항에서 필요시설물의 표준규격을 산정하여 자원배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어항의 최적규모를 산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
 - 표준화된 어항의 모습을 구상하여 미래 어항의 향후 발전모습을 외래관광객에게 소개
 - 수용할 어선의 척수 및 규모가 정해진 어항의 최적규모를 산정
 - 어선규모별 주요 어항의 시설량에 대한 과부족 여부를 파악하여 어항의 서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제2절 어업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1.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 어촌관광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어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를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사업을 추진
 - 어촌관광 경영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며 아울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어촌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장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조직체의 구성을 유도하고, 어촌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

2.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 어촌민속전시관

- 사라져가는 어촌의 민속과 풍물의 보존과 아울러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업외소득원 확대를 모색
 - 2003~2006년 중 6개소(계속4, 신규2)의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운영하여 어촌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자원화를 추진
 - 동해안의 「풍어굿」, 여수 「영당풍어굿」, 제주도 「칠머리당굿」 등 사라져가는 어촌의 전통적인 민속행사를 보전·복원하여 관광자원화

□ 어촌체험마을

- 어촌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
 - 우선 전국 연안 시·군에 1개 마을씩 시범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여건이 양호한 시·군은 중점 개발하여 2003~2008년 중 52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 인프라시설은 중앙정부가, 체험프로그램등 운영에 대해서는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등 역할을 분담

3.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 어업인들의 어촌관광산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선도어업인 육성
- 어촌관광산업에 어업인 참여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 각종 전문 교육시스템 활용
- 지역 전문 유관기관, 대학 등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수협, 지자체 등의 역할 분담에 의한 공동 참여방안을 마련
- 어촌의 생태·문화 체험도우미 육성
- 어업인 및 관광교육 방안
- 추진위원회와 같은 어촌관광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마인드를 육성
- 어촌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광마인드를 가진 전문화 추진

4.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 어업인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촌민박에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어가구 소득증대
 - 어촌민박 예약시스템 마련
 - 어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마을 가꾸기를 통한 어촌민박마을 조성
 - 어업인의 관광마인드 확산 및 민박 등급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
 - 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 어촌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과 관련된 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민박 운영프로그램 작성

5.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 도시민들의 어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학생들의 어촌체험 활동을 장려하며, 어촌관광 관련 정보를 홍보하는 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
 - 전국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부족과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해 어촌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어촌 고유의 지명, 형성배경, 관광자원, 숙박시설, 관광상품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1.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 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린 정주권 조성
 - 권역을 고려한 중심소도읍의 집중적인 개발추진
- 어촌의 정주체계를 확립하여 살기 좋은 어촌 건설
- 최소한의 집적이익을 갖춘 중심도소읍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원의 효율적 투자 도모
- 대도시 인구집중, 과밀화방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과 도시가 연계된 접근방식을 추구
- 상위 소도읍과 기초소도읍 개발전략을 구분하여 접근
 -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어촌 조성
 - 특색있고 매력있는 어촌지역 조성
 - 풍요로운 어촌의 미래체제 만들기

2.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 어촌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어촌의 환경개선에 기여
- 어촌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추구
 - 도시와 차별화된 어촌정비
 - 혼주화에 따른 어촌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비
 -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
 - 어촌 및 어항과 관련된 배후지 개발계획 발굴

3.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연안여객선 중심)

-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및 어촌방문객에게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어촌여행의 쾌적성 제고
 - 선착장건설 지원

- 여객선 신규투입
- 연안여객선 조세지원
-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원
- 국고여객선 건조지원
- 계획조선자금 지원

4. 친환경적 어촌 정비

-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촌을 정비하여 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
 - 어촌의 역할변화에 따라 어촌의 자원을 재평가
 - 어업의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온 정비사업들을 재검토
-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어촌환경, 자연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어업외소득원을 개발
 - 어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어촌환경의 질적인 면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보완
 - 어촌 정비의 원동력은 어업외소득원의 개발
 - 효율적인 환경정비를 위한 통합적인 추진계획 수립
 - 환경 친화적 정비방식 도입

5.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 국토계획체계와 어촌개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속적 추진
 - 어촌체험 및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취약지구 개발계획 수립
 - 어촌·어항·어장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연계개발이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
 - 과거의 어촌개발에 대한 인식을 전환
 - 어촌지역을 도시와 연계한 개발방식으로 접근
 - 연안관리 및 경관형성 측면에서 어촌개발계획을 수립

6.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지속적 추진
 - 2004년경에 완료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재원인 「농특세」 연장방안

- 어촌개발사업 재원의 지속적 확보
-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1.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 어촌주민의 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어촌의 복지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유도
- 어촌, 농촌, 도시지역에서 경제활동수준, 생활 수준, 환경수준 혹은 오염수준, 등을 이용하여 생활 정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welfare index)를 개발
 - 각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경제자료, 환경지표, 생활과 연관된 기초자료가 있으나 자료집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어촌 의료복지시설의 계량화, 교육관련 지표, 환경지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는 복지지표로 개발

2.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 의료체계 개선으로 어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어 어촌 주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어촌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상 유도
 - 어촌지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금 확보방안
 - 어촌지역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구축
 - 어촌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자질향상 및 활용방안 수립
 - 어촌의 응급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시설 및 운송체계 개선

3. 어촌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 어촌여성 지원책을 실시함으로써 어촌 기피현상 완화
- 출산과 어가 경영주 또는 여성 어업인이 어로작업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가도우미제도를 도입
 - 출산의 경우에도 어로작업과 가사작업을 병행하는 것을 일정기간(출산후 1~3주) 인정

4.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의료의 서비스 차이를 반영한 의료보험료 부담율을 개선하여 형평성 강화
- 잠수병과 같은 어촌지역에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뿐만아니라 어촌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건강관리시설을 확충하고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필요
 - 과도한 영어 활동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대학병원 등과 제휴하여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

5.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 기여
- 어촌과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어촌 후생복지의 향상
 -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연장
 - 지속적인 어업 종사자 확보를 위한 사업장적용의 확대
 - 국민연금제도 홍보를 통한 어촌지역 국민연금 정착화
 -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산식 개선
 - 어업인에 대한 소득추정의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문제 개선
 - 어촌지역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모색
 -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 모색

6.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 어촌거주자 복지후생 증대에 기여
 - 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및 차별화를 위한 특성조사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
 -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개인단위 급여 지급
 - 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의 확대
 -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7. 어촌 문화복지 개선

- 문화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어촌의 자부심 고취
-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확충방안
 -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고 문화정책을 지역정책의 중심에 두고 타 지역정책과 조화롭게 추진
 -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자원을 개발하도록 육성하여 지역의 특성 부각
 - 어촌주민들이 고품위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고
 - 어촌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어촌 지역 문화정책을 국가정책과 조화롭게 추진

8.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 어촌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여 어촌여성 인력의 노고를 경감
- 여성어업인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여성의 어촌 정착을 유도
 - 영유아 보육, 도시·어촌의 교류, 어한기 문화활동·교양강좌 등을 지원하고, 지역특성 및 여성 어업인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어촌 노인복지 증진

- 어촌 노인의 복지증진책을 마련하여 어촌의 안정화에 기여
- 생활안정기반 조성
- 고령어업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
- 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선용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어촌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인간성 회복을 통하여 어촌의 유지·발전에 기여
 - 노인복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정책 실시
 - 정책수단의 연계방안 모색

10. 『어촌복지특별조치법』(가칭) 제정 및 운용방안

- 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어촌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어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어촌복지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 검토
 - 각 부처에 산재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 특별법 제정 마련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Contents

Chapter I . Changes of fishery environment and a way of our fisheries	1
Chapter II . Reinforcement of resource management to attain sustainable fisheries	5
Section 1. Development of foundations for effectiv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5
Section 2. Activ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6
Section 3. Establishment, extension and popularization of voluntary fishery management	9
Chapter III. Attainment of fishery competitiveness by reorganization of production structure	11
Section 1. Construction of production foundations for sustainable costal and inshore fisheries	11
Section 2. Consolidation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fisheries	13
Section 3. Establishment of fishing regularity	15
Section 4. Structural reforming of distant-water fisheries and increase development and support of overseas fishing grounds	16
Section 5.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orresponding to New Maritime Order	17
Chapter IV. Bringing up of consumer-oriented fishery food processing industry	18
Section 1. Establishing consumer-oriented supply system and ensuring food safety of fishery products	18
Section 2. Supporting activation of fishery processing industry	19
Section 3. Improvement of circul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by bringing up of places of production and consumers markets	20
Section 4. Establishment of demand and supply system based on market signal	21
Section 5. Changes of consuming pattern and extension schemes for consumption of fishery products	22

Section 6. Export promotion of fishery products and attainment of effectiveness in export-import distribution system	23
Section 7. Building cooperation system of fisher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4
Chapter V. Ensuring rational supporting system for fisheries	25
Section 1. Induction of direct payment in fisheries	25
Section 2. Improving support system of political funds in fisheries	25
Section 3. Induction of Insurance system in fisheries	28
Section 4. Early management normaliz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28
Chapter VI. Attainment of developing power for fisheries	30
Section 1. Constructing foundation of fishery policies	30
Section 2. Expanding potential growth energy of fisheries	31
Section 3. Rearranging driving system of fishery policies	33
Chapter VII. Activation of fishing villages and expansion of fishers welfare	34
Section 1.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nd ports	34
Section 2. Fishing village tourism for development of extra earnings	37
Section 3. A plan for settlement system in fishing villages	39
Section 4. Improvement i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of fishing village residents	41

SUMMARY

I . Title

A Study on New Strategies for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II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conditions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concerned with international fisheries have fluctuated recently. Also, the acceleration in relation to open-door policy, liber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has died down trade barriers among nations and resulted in new global market. Most of advanced countries transfer fishery police to new one that pursues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arket liberalization. In addition, the UN/FAO mad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 as well as requiring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 in the high sea and EEZ.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agreements of WTO/DDA and FTA, including WTO affiliation of China, called upon opening a country concerned in the fishery market to foreign intercourse.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strengthening to the domestic fishery policy in the present.

In spite of financial investment policy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fishery production in coastal and off-shore was reduced continuously due to ocean pollution and over-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 consumption increased steadily. It resulted in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fishery product in Korea. Therefore, real income of fisherman stagnated for a long time, and living condition of fisherman dropped out, and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is decreased,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of fishing village was weakened as time go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ope the new paradigm of fisheries policy, to dissolve structure problems faced by fishing village and fisheries, to grow fishery sector that has competitiveness strategically, and to suggest new fishery policies in 21century.

For solving above problems, this research would be suggested the basic

direction of fisheries policy coincided with the new paradigm of fisheries policy and explored special policy topics for improving fisheries plans in Korea. Several workshops, symposiums and seminars were conducted to make efficient research on the broad research scope and purpose of research. These meetings provided helpful opinions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suggested specific policies by government officers. Also, to maximize belief and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this paper included both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study in foreign, from entire paradigm change to specific research. Each section that related to fisheries topics in Korea suggested the primal policies as well as researchable issues.

III. Results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included 8 sections. Each section shows issues and policy pla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sector. Especially, the summary section described shortly for the rest of paper, representing specific plans of new fisheries policies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in Korea. First of all, the summary section is consisted of the synthetic report and the compressed report that summarize the synthetic report, including the President paper.

First section was focused to suggest new policy paradigms and policy direction based on both condition change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actual analysis for fishing village in Korea. To achieve research goals, this section explored agreement tre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DDA and FTA, including fisheries policy trend of major fisheries countries. In this section, actual situation of fisheries in Korea is also introduced as well as described concepts and status in relation to fisheries. There exists the long-term view for primal index in fisheries sector.

The second and third sections suggest many project titles to make sustainable and competitive structures for fishing industries. In the second section, new fisheries policies including TAC, ITQ, voluntary community based management, infrastructures for fisheries are suggested to make sustainable fisheries. Also in the third section, the restructuring of in and off shore fisheries, new order for solving the chronic problems of IUU fishing, restructuring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and the way of increase competitive in aquaculture are suggested.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front the 'The New Order' for responsible fisheries is groped.

The fourth section includes the way of assuring food safety, the activation way of fishes processing industry and the way of improving market's ability. Specifically, it is very important times to consider the signals from consumer and market because of market liberalization. New policy must confront the change of these. Also the way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suggested. The ways of facilitating export are suggested.

The fifth section includes some policies to ensure the reasonable support system for finances. To confront the subsidy negotiation in WTO/DDA, the theoretical base of direct payment is suggested. The policy insurance system which include the characteristic of fisheries such as uncertainty and the way of revitalizing manag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e suggested.

In the sixth section, the necessity of the policy base of fisheries, including the information-oriented fishing village and statistical system, are suggested. Also, the ways of increasing R&D and enhancement of human resource are suggested.

In the final section, many measures of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and increasing welfare for fishermen are mentioned. Also the detail plans for increasing welfare of fishermen such as medical service, old-age pension, cultural welfare and so on are included.

신어업 · 어촌발전전략 연구

목 차

I.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1
제1절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1
1.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어업에의 영향	1
2.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산정책으로 전환	1
3.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예상	2
4.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수산물 수요 및 소비는 꾸준히 증가	2
5.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어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증대	2
6. 남북관계의 변화	2
제2절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1.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3
2. 해양오염·자원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3
3. 수산물 자급율 하락과 수입의 급증	4
4.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4
제3절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6
1.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6
2.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7
3. 수산정책의 기본방향	8
4. 세부추진 과제	9
5.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10
II.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12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의 조성	12
1. 과학적 조사·평가시스템의 구축	12

2. 내수면 잠재력 조사	13
3.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15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19
1.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19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21
3. ITQ 제도 도입 추진	24
4.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26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28
1. 자율관리어업 모형개발 및 정립	28
2. 자율관리어업 확대·보급	29
Ⅲ.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32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32
1.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32
2.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37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38
1.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38
2.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확대	39
3.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40
4.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41
5. 해외 양식어장 개발	45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47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47
2.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49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 강화	51
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51
2. 참치연승어업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52
3.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52
4.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53
제5절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55
1.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55
2.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56
IV.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58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58
1.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58
2.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59
3. 수산물 HACCP 도입과 안전관리체제 구축	59
4.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61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63
1.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63
2.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65
3.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 방안 연구	67
제3절 거점 산지·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69
1. 산지유통체계 개선	69
2.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70
3.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71
4.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72
5.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방안	73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75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75
2.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76
3.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77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78
1.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78
2.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79
3. 생선회 유통 활성화	81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82
1.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 방안	82
2. 수산물 관세인해 대응체제 구축	84
3.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개선 방안	85
4.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86
제7절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88
1. 사업내용	88
2. 추진목표와 방향	88
V.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90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90
1.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90
2.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92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94
1.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94
2.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97

3.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98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100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103
1.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추진	103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104
제4절 수협외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106
1.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106
2.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107
VI.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09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109
1.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109
2. 수산·어촌 정보화 확충	110
3.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시스템의 구축	111
4.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112
제2절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114
1.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114
2.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116
3.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18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120
1. 지방수산정책의 강화와 중앙·지방의 역할	120
2. 수산관련 조직의 개편	121
3. 수산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123

VII.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124
제1절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124
1. 어촌종합개발 사업	124
2. 어항시설의 정비·확충 방안	125
3.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126
4. 어항·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128
5. 어촌·어항제도 개선	129
6. 정주어항 개발	130
7. 어항의 최적규모 결정 및 현대화 방안 연구	131
제2절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133
1.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133
2. 어촌체험마을 조성과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133
3.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135
4.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136
5.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137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138
1.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138
2.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139
3.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연안여객선 중심)	140
4. 친환경적 어촌 정비	141
5.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142
6.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143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144
1.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144
2.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145
3. 어촌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146

4.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147
5.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147
6.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148
7. 어촌 문화복지 개선	149
8.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150
9. 어촌 노인복지 증진	152
10. 『어촌복지특별조치법』(가칭) 제정 및 운용방안	153
VIII. 중장기 투융자 계획	155
제1절 투융자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반조성	155
1. 투융자사업 현황	155
2. 여건변화와 추진방향	156
3. 자원조달 방안	157
4. 투융자 사업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159
제2절 부문별 투융자 계획	161

〈 표 차 례 〉

〈표 1-1-1〉 수산물 장기수급 전망	2
〈표 1-2-1〉 연근해 어선 톤당 생산량의 변화	3
〈표 1-2-2〉 수산물 자급율 변화	4
〈표 1-2-3〉 어가소득 추이	5
〈표 8-1-1〉 수산정책자금 투융자 사업별 및 재원 비중('92-'99년 기간)	155
〈표 8-1-2〉 수산업진흥종합대책('99-'04)	156

I.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제1절 수산 여건변화와 전망

1.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어업에의 영향

- 개방화·자유화·국제화·분권화 등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 해소 및 열린 세계의 실현을 통한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됨
 -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무한경쟁은 우리 어업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
- 세계화 속에서 지방화·분권화가 동시에 진행(glocalization)
 - 인간·생명·환경을 중시하는 풍조 확산으로 생명산업·환경산업으로의 어업의 가치 재평가
- 주5일근무제 확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관광과 여가활동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도시생활의 피로, 전국 일일 생활권의 구축으로 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증대

2. 주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장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수산정책으로 전환

-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에 초점
- EU의 공동어업정책(The common fisheries policy, CFP)은 어업과 양식업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유자원을 관리
- 미국은 상업적·여가적·생계적으로 중요한 수산자원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

3.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예상

- DDA 협상과 FTA 추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전망이다
 - 개방확대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
 - 수산분야의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도 필연적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적인 수산보조금의 감축·금지가 예상된다

4.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수산물 수요 및 소비는 꾸준히 증가

- 현재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2010년까지 수급불균형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산물 국내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3,572천톤, 2010년에는 3,619천톤이 될 것으로 예측

〈표 1-1-1〉 수산물 장기수급 전망

(단위 : 천톤)

구 분	1998	2000	2003	2007	2010
국내소비량(A)	2,769	3,183	3,570	3,550	3,620
국내생산량(B)	2,835	2,779	2,860	2,920	2,960
부족량(B-A)	66	-404	-710	-630	-660

5.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어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증대

- 어촌관련 자원을 이용한 상품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 제고
- 어촌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전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

6. 남북관계의 변화

- 남북 긴장의 완화로 수산분야의 지원과 협력관계의 중요성 증대
 -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생산기반 복구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어업용자재 지원, 공동어로 합작사업 등이 주요 협력분야
 - 북한산 수산물의 국내 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제2절 우리 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용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국제기구의 수산자원관리 강화 요구
 -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고 공해 및 EEZ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요구
 - WTO/DDA 협상에서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은 관세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수산물의 수입 증가 우려
 - ※ WSSD 이행계획에서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과 과잉 어획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폐지기로 함

2. 해양오염·자원남획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 수산자원 감소 및 연안어장 오염 등으로 연근해 어선의 톤당 생산량이 75년 대비 32% 감소
 - 연근해 어선의 톤당 생산량은 75년에 4.7톤에 달하였으나 80년대에는 3.4톤, 90년대에는 3.2톤으로 감소

〈표 1-2-1〉 연근해 어선 톤당 생산량의 변화

구 분	1975	1985	1995	2001
생산량(M/T)	1,209,361	1,494,940	1,425,213	1,252,098
톤수(G/T)	253,063	434,511	444,676	386,179
톤당생산량	4.7	3.4	3.2	3.2

-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지역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증가
-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세계 연안각국 EEZ 선포로 우리어선의 조업어장 축소
 - 세계 주요어장의 90%가 연안국의 EEZ내에 포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관리체제의 문제점 노정

4 I. 수산환경변화와 우리수산업의 진로

- 양적성장 위주의 어선세력 확충과 무허가 어선 및 허가 어선의 불법어업 관행지속

3. 수산물 자급율 하락과 수입의 급증

- 수산물 자급율은 1980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소비량은 증가하여 자급율이 1980년 138%, 1990년 127%, 2001년 82%로 계속 하락
- 냉동어류와 활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수입 급증
 - 1990년대 수산물 수입증가율이 2-3배에 이르고 특히 활어의 수입 증가는 양식 전업어가의 생존 위협
 - 일본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산물 무역에서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긴급

〈표 1-2-2〉 수산물 자급율 변화

구 분	1970	1980	1990	2001
수산물생산(천톤)	935	2,410	3,275	2,665
국내소비량(천톤)	776	1,746	2,583	3,260
자급율(%)	120	138	127	82

4. 어가소득 정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

- 어촌의 생산성 저하 및 정주환경의 열악으로 어가인구의 감소
 - 어가인구는 1990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496천명에서 2001년 234천명으로 53% 감소
- 어가소득 증가율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어가소득은 1991년 11,309천원에서 2001년 22,252천원으로 96.7% 증가율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은 126.6% 증가

〈표 1-2-3〉 어가소득 추이

구 분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감('01/'00)	
							금액	%
어가소득	11,309 (12.8)	18,780 (9.8)	16,794 (-17.4)	18,428 (9.7)	18,875 (2.4)	22,252 (17.9)	3,376 (-)	17.9 (-)
어업소득	5,285	9,437	9,254	10,323	10,078	11,087	1,009	10.0
어업외소득	3,776	6,075	5,201	4,882	5,313	6,504	1,191	22.4
이전수입	2,248	3,268	2,339	3,23	3,484	4,661	1,177	33.8

※ 주 : ()는 전년비임

제3절 수산정책 평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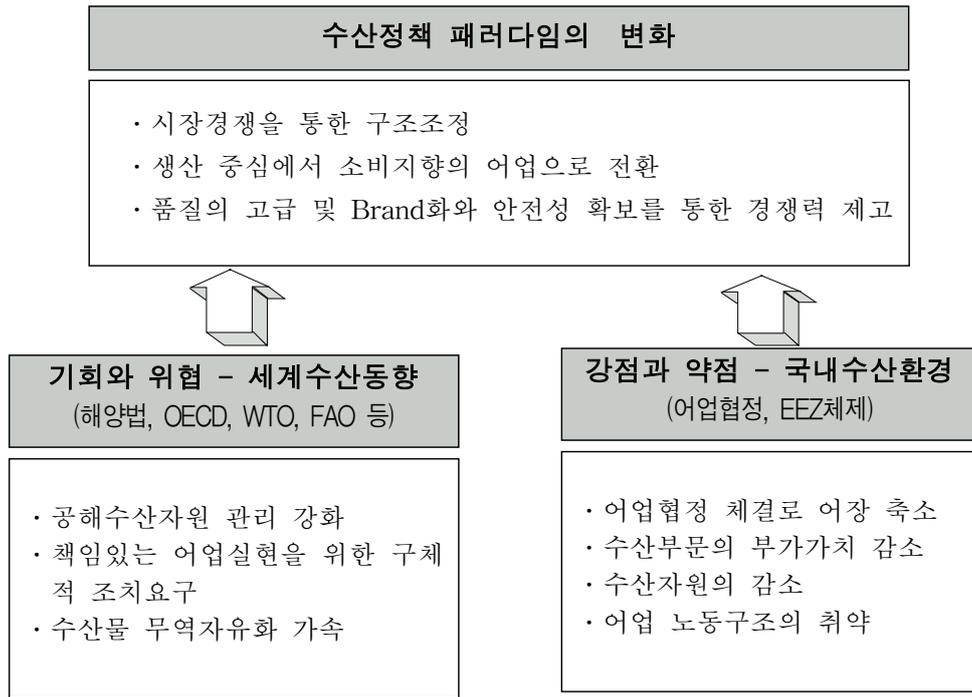
1. 90년대 수산정책의 평가

- UR 타결을 앞두고 농어촌구조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 1993년 UR 협상 타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으로 90년대 수산부문의 구조개선 정책 방향을 수립
 - 어업구조개선사업('92~'98)과 수산진흥종합대책('99~'04)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과 한계
 -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 정책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을 억제하고, 바다목장과 인공어초사업 추진 등 수산자원조성의 기틀을 마련
 - 미성숙어의 포획, 무허가어업, 허가어선의 탈법어업 등 위법적 어업행위의 만연 지속으로 생산중시 어업정책의 실효성 저하
 - 실질적으로 어업인·어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고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어업창출 노력도 부족
-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과 여건변화 등으로 유통·가공산업의 취약점 노출과 수산물 수급불균형 유발
 - 생산중심의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여건변화로 수산물 수급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애로 요인으로 작용
 - 수입확대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수산물 안전성과 품질의식 확대
- 어촌의 생활개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과, 도시와의 교육·문화적 격차는 여전히 확대
 - 지역 특성과 소득원 다양화 방안을 연계하는 어촌개발
 - 국민과 함께하는 어촌 건설 필요성
- 지역적 특성이 강한 수산정책 집행주체의 역할분담 미흡
 - 수산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

- 사업추진 대상자 선정의 곤란, 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 사후관리의 부족 등이 문제

2.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세계 수산동향 변화에 따른 기회 포착과 위협요인 제거, 국내 수산여건 변화로 인한 강점·약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산정책을 수립
-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 시장지향적 국제 수산여건 변화에 따라 시장경쟁에 부응하는 구조조정 추진 필요성
 -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
 - 정부는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시장실패의 보완 역할을 수행
 - 백화점식 재정지원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시장유인정책으로 전환
 -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구축 필요성
- 생산중심에서 소비지향의 어업으로 전환
 - 수산물은 소비자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상품의 역할 수행
 - 유통·가공등 종합식품산업으로 육성
 - 수요 욕구가 높은 어종의 자원조성과 양식방법의 개발
- 품질의 고급 및 Brand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제고
 - 소비자 요구에 알맞는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선도·품질·안전성·적정 가격 등으로 안정공급
 - 소비자의 생활양식이나 의식 등의 변화에 수반하는 다양한 욕구 충족
 - 수산식품 고급화 및 Brand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



□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기비전

- 자립할 수 있는 수산업
-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어촌 실현
- 바다·어장의 공익적 기능 유지로 수산자원의 국민적 가치를 극대화

3. 수산정책의 기본방향

-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수산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사는 어업 구현
 - 고품질의 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효율화하고 안전성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개선
 - 소비자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수산물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통·가공 등 종합식품산업을 육성
- 수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중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과 집중으로 적극 육성
 - 수산지표를 생산량 목표에서 수산부문 GDP 목표로 전환

- 고부가가치 어종개발과 어구어법의 개선, 품질의 고급 및 Brand화와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의 접목과 가공수산물의 제품차별화 등으로 수산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
- 어업 생산단위의 효율화와 자율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질서확립과 경쟁력 향상
 - 어촌계 및 수협을 어업인 중심체제로 활성화하고 자율과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일관성 있는 어업질서를 확립
-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어촌어항의 개발 등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
 - 어촌개발을 해역별로 특성화하여 특색있고 매력있는 어촌지역으로 육성
 - 지자체 등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투자하여 개발 효율성 증대
 - 매력있는 어촌 건설을 위한 복지후생 제도의 확충
- 정책자금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융자 정책과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의 운용
 - 정책자금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융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금융정책수단의 확대
 - 수협의 기능을 어업인에 대한 종합서비스체제로 개선

4. 세부추진 과제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어장관리 등에 어업인 자율관리체제를 도입
 - EEZ내의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근해 자원수준을 향상
 -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어업분쟁이 심화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근해어업의 종합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자원 유지
 - 양식어장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하며 저비용·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기르는 어업의 경쟁력 강화
 - 어장휴식년제 실시 등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추진

□ 소비자 지향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생산자·수협 등 산지유통기능을 개선하고, 수산업 관측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상황을 예측하여 생산·출하 조정능력 제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선어유통 활성화를 통해 싼 값에 간편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먹거리 문화 창출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확보
 -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어업인 소득의 불안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제 실시, 수산정책자금의 개편과 공제·보험제도 등을 실시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산업 발전동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보화기반의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어촌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역별로 특화 개발하고, 어업생산기반 시설 및 편익·복지시설을 정비·확충
- 도시수준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비전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어촌을 조성하고, 도시민과의 교류확대가 가능한 열린 어촌 건설
- 어촌지역 핵심시설인 어항을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문화 및 관광산업을 수용하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확대 개발하여 수산업발전기반 조성
- 어촌문화와 생산현장을 연계하는 어촌관광 산업화를 추진하고, 어촌관광 시설기반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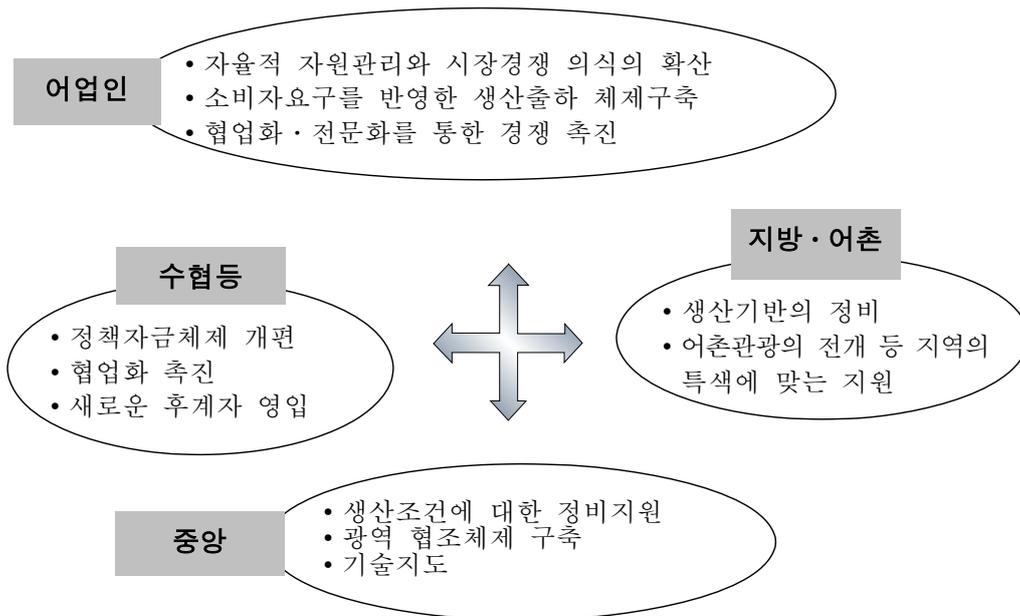
5. 정책추진체계의 개편

□ 중앙·지방 및 관·민의 역할분담과 제휴

- 분권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대등과 협력의 새로운 역할을 분담하여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여 지역 수산업과 주민복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편
- 정부·수산업·어촌·어업인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Feed-back 시스템의 구축과 모럴해저드의 제거

- 수산정책 과제의 계획시점에서부터 장기적인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집행의 객관성·투명성·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
-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사후평가 및 관리와 다음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Feedback System을 구축



Ⅱ.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제1절 효율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의 조성

1. 과학적 조사·평가시스템의 구축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자원관리의 강화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증가와 함께, 한·중·일 등 동북아 수역 3국은 인접국가간 공동이용 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 필요성 확대
- 책임있는 어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국 EEZ내의 정확한 자원조사 및 평가가 필요
- 국제적 자원관리 방식도 단일어종 중심의 자원관리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자원관리로 전환
- 자율관리어업이 제대로 수행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도 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어업인과의 원활한 정보교류 등이 필요함
- TAC대상 어종의 확대에 따른 자원조사 및 평가 대상 증가에 따른 자원조사 및 평가 인력, 장비 및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요구됨

나. 사업내용

- 「수산자원 조사·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수행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합진단 및 기본」(안) 제출
 - 해양수산부, 관계전문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협의 후 계획 확정
 - EEZ내 자원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700톤급 자원조사 전용선 2척 확보
 - 과학어탐, 트롤어획 시험장비 등 자원조사 필수 첨단 장비 확보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한·중·일 어업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EEZ까지 확대된 수산자원의 과학적인 조사·평가 체제를 구축

(2) 추진방향

- 『수산자원 조사·평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계획에 삽입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향후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시 반영 조치
- 한·중·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동·서·남해의 특성에 맞는 해역별 자원 조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자원조사 체계를 확립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원평가 및 관리기술의 개발
- 연안수산자원의 조성, 평가, 관리의 피드백 시스템 구성
- 해양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자원생물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원평가 및 관리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생태계를 고려하는 자원관리 기법 개발
-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연구체제 구축
- TAC 어종의 확대, 연안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보다 연구인력 확충

라. 기대효과

- 수산자원 조사·평가 방법의 개선·발전을 통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정확한 조사·평가를 통한 수산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및 지속이용 가능한 어업체제 구축

2. 내수면 잠재력 조사

가. 사업의 필요성

- 내수면 자원은 바다생물자원과 더불어 중요한 자연자원이므로, 현재의 경제

적 이익 뿐 아니라 미래세대 및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성 증대

- 내수면의 이용에 있어서 자칫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오염관리가 필요
-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내수면 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보전이 필요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관리를 통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대
-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업뿐만 아니라 레저수요를 위한 자원조성을 실시
- 내수면 생물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자원화를 도모

(2) 주요 사업내용

- 내수면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수면에 대한 잠재력 조사

다. 사업추진 계획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내수면 잠재력 조사 시행
 - 조사대상 수면은 댐·호, 호소(저수지·늪), 강·하천, 양어장, 낚시터 등
 - 댐·호 및 양어장은 전수조사하고, 호소는 1ha 이상의 호소, 강·하천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낚시터는 허가, 신고 낚시터 및 개발 가능 수면 대상
-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특별시 1, 광역시 6, 도 9개), 251개 시·군·구(시 72, 군 91, 자치구 69, 시의 구 19개) 및 3,598개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읍 200, 면, 1,223, 동 2,089, 출장소 86개)
- 조사내용은 내수면 일반현황(기본 환경여건, 생물서식분포, 자원조성실태), 수질오염(수질오염원 및 수질), 양식업(양식어업 현황, 개발가능성 및 경제

성), 어업(어업현황, 어가수, 소득), 낚시터 개발(낚시터 현황 및 개발가능성), 기반시설(가공시설, 위판장 및 관광지 등) 등

- 조사체계는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가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조사총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3개 내수면연구소(진해, 양양, 청평)의 협조하에 수행하며, 합동조사반은 국립내수면연구소, 독립시험장 및 시·도와 시·군·구가 시행
- 지역별 세부 조사계획 수립, 지역별 조사원 교육, 조사장비 확보 및 현지 조사실시와 조사자료 취합 및 종합분석 업무를 국립내수면연구소에서 수행

라. 기대효과

- 내수면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
-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증강
- 국민 레저수요에 부응

3.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가.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
 -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사업은 많은 자금과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체제구축도 필요함
 - 자원조성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체계가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체적 평가도 합리적이므로 전문적·체계적이며 객관성을 가지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수산생물)의 출발점인 연안 수역의 산란장·성육장·생태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와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관리체제 미흡으로 사업효과가 감소

- 지자체·연구기관에서 자원조성사업을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현 체제는 효율성 저하, 책임성 결여, 연구업무 방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효과 분석 및 효과증진을 위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원조성사업을 사전조사부터 사후평가까지 효율적·종합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 「기르는어업육성법」(2003년 7월 시행)에 의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인공어초, 바다목장 시설 또는 예정 수면)을 시·도지사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 수면의 보호와 이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
- 성공적인 TAC제도 추진의 필수요소인 수산자원 조사·평가, 감시·감독, 어획실적 조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현장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

나. 사업내용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설립
 - 2003년 : 센터설립에 관한 추진단을 구성
 - 조직은 본부(1), 동(2)·서(2)·남해(4) 등 9개를 설치하고, 인원은 약 100여 명으로 하며,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함
 - 주요기능은 수산자원조성수면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관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위탁,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TAC제도 옹저버 운영,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운영·관리 및 기타 자원 관리·조성에 관련 정부 위탁사업으로 함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UN해양법 협약,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 이행, WTO/DDA 협상, 한·중·일 어업협정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자원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통한 지속적·안정적 이용을 추구

(2) 추진방향

- 수산자원관리·조성 관련 국가 또는 공공 업무(정책 지원업무) 수행
- 담당업무 및 재정 독립을 통한 책임있는 업무 수행

라. 추진계획

- 동 기구의 성격은 특수법인으로서 수산자원 관리·조성 관련 국가(공공)업무 수행 및 업무·재정 독립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으로 함
 - 기관 명칭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 법률 근거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20조
 - ※ 농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임
- 센터설립 기획단 또는 추진반을 구성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설립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 하반기에 센터설립 및 2004년 출범(사업실시)
- 센터의 관리·감독기관은 수산자원관리 및 자원조성의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를 주무 관리·감독기관으로 하고 관리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예산확보, 감사 등으로 함
-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책임있는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함
- 우선 해양수산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과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함
- 전담기구 조직은 동·서·남해 해역적 특성과 수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9개소(본부 1, 동해 2, 서해 2, 남해 4)를 설립하되 연차적으로 설립 추진
- 구성원은 행정, 조사·관리, 기술분야로 구분하되 조사·관리분야 중심으로 구성하고, 9개소 설립시 총 인원은 100여명 확보
- 향후 수산자원관련 정책지원기관으로 육성하고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킴
- 전담기구 주요기능
 - 자원조성수면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관리
 - 자원조성 사업 집행
 -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 TAC제 읍저버 운영,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운영·관리
 - 기타 자원 관리·조성에 관련 정부위탁사업

마. 기대효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의 효율적 전문적 추진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의 수행을 민간기구에서 담당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 간의 역할분담으로 수산자원관리조성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업수행으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효과 제고

제2절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1. 어업관리제도 전환과 TAC제도 확대

가.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일부 어종은 감소의 차원을 넘어서 고갈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어업자원을 보전하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업자원 관리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어업자원관리는 세계의 모든 연안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임과 동시에 수산관련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가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임
- 유엔해양법에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해 연안국에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부여하고,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어업자원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며, TAC를 설정하여 자원을 관리할 경우 또한 과학적 자원조사를 통한 자원량이 추정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함
- 입구규제방식인 종전의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출구규제방식인 TAC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및 어업관리의 선진화 도모

나. 사업내용

- 연차적으로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어업관리제도로 정착
- TAC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제도의 확대실시
- 어업자원관리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도입

다. 추진목표 및 방향

(1) 추진목표

- 효율적인 어업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TAC 확대
 - 현재 TAC 실시 8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 소라)을 2010년까지 20여개 어종(꽃게, 갈치, 삼치, 강달이, 오징어, 병어, 골뱅이, 황아귀, 가자미, 복어류, 말쥐치, 참조기, 붕장어 등)으로 대상어종을 확대
 - 어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상 업종의 확대
 - 기존 어종 중 부적합한 어종은 제외하고, 적용 타당성이 높은 어종에 대한 확대 실시
- TAC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체제 구축 및 읍저버 제도 확대 실시
 - TAC 대상어종 확대에 따라 양륙항 읍저버를 2010년까지 100여명으로 확충하고, 대상어선 2,400여척 중 10%를 표본승선 조사하기 위하여 승선 읍저버를 2010년까지 60여명 확보
- 어업자원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업자원관리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도입

(2) 추진방향

- 자원평가시스템의 확립
 -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평가시스템의 확립
 - 어획량 조사를 통한 평가된 자원의 검증(feedback system)
- 할당 및 할당물량에 대한 원활한 추진체계의 확립
 - 합리적인 어획량 결정 및 할당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심의위원회 및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 배분 후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저버 제도의 강화

(3) 추진계획

- 현행 TAC 대상어종과 업종의 실태조사 및 현행제도의 적합성 검증
-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TAC형 어업에 적합한 어구·어획노력량의 정량화 연구

- TAC실시 대상어종의 확대방안 연구
-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제 구축 및 읍서버 운영 방안 강구
 - TAC 대상어종 확대에 따라 양륙항 읍서버를 2010년까지 100여명으로 확충하고, 대상어선 2,400여척 중 10%를 표본승선 조사하기 위하여 승선 읍서버를 2010년까지 60여명 확보
- TAC 대상어선 2,400여척 중 10%를 표본승선 조사하기 위하여 승선 읍서버 체도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60여명의 승선 읍서버 확보
- 자원량조사 및 자원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자원량 추정방법 및 조사기법의 개발 적용
- 어업자원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업자원관리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도입

라. 기대효과

- UN 협약법 준수로 국제사회 참여 강화 및 세계 수산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수산동식물의 무분별한 어획방지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확대 재생산 기반구축
- 한·중·일 등 인접국과의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확대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휴식장 확대 및 자원의 인위적 증식을 통하여 고급 수산물 공급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
-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통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수용능력 증대
- 다양한 바다이용에 부응한 수산자원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의 효용을 극대화

나. 사업내용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기능성 어초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인공어초 시설사업 확대추진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특화품종을 종묘방류하여 경쟁력 강화
 - 방류품종 다양화 및 확대 지원을 통한 민간종묘 배양장 활성화 도모
 -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2010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전 연안에 확대
 - 국내 최초로 1998년도에 통영해역 20km²를 시범목장으로 조성하고 기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바다목장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기존의 자원조성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바다이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자원조성사업의 확대방안 강구

(2) 추진방향

-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지속, 확대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적 특화품종 육성, 방류품종 다양화 및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 시범사업으로 동해, 서해, 남해 및 제주해역에 적합한 바다목장 모델 개발 및 이를 기초로 전 연안으로 바다목장 확대
- 인공어초, 종묘방류 및 해중림 조성 등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3) 추진계획

(가) 인공어초 사업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연안어장 수심 70m이하 수역에 일반어초 15종 및 시험·연구어초를 시설함과 아울러 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어초를 개발
 - 연안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종합 정보망 조기 구축

- 기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폐어망 수거, 보존상태 파악 등 어초어장 사후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전 인공어초어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추진
- 인공어초 시설사업 확대 추진
 - 현재 51% 수준인 인공어초사업을 2004년까지 60%(185천ha), 2010년까지 100% 달성하여 인공어초 어장을 확대 조성
 - 해역별로 규모화·단지화하여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사업 및 해중림 조성 등과 연계추진

(나) 종묘방류 사업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특화품종을 종묘방류하여 경쟁력 강화
 - 해역특성에 적합한 특화 품종을 적극 육성하여 방류하고, 방류품종 다양화 및 확대 지원을 통한 민간종묘 배양장 활성화 도모
 -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중간육성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다) 바다목장 조성 사업

- 2010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전 연안으로 확대
 - 남해안 다도해, 동해안 개방연안, 서해안 갯벌 및 제주도 연안암반형 등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
 - 해역별 모델을 기초로 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으로 바다목장을 확대해 나가며, 3단계에서는 어업인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일반사업으로 추진
 - 순수어촌형, 낙도형, 도시근교형 및 기능형 바다목장 모델을 개발하여 전 연안을 바다목장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
- 바다목장조성 후 바다목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및 체제 구축

라. 기대효과

- 유용 수산생물의 산란장·서식장 등 생산기반 확대 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산

물 생산·공급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어촌정주권 유지, 낚시객 방문 등으로 인한 유어수익 증대, 불법어업 방지 및 관광객 증가 등의 간접소득 향상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유어낚시객 등 바다레저 관광객의 바다이용 기회 확대 및 어촌의 간접소득 증대
- 바다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 양식업, 수산업 및 해양건축·토목 등 관련산업의 육성 및 기술발전
- 스킨스쿠버, 수중 탐험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해양 문화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ITQ 제도 도입 추진

가. 사업의 필요성

- 어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주로 경쟁적 조업에서 발생함
- 어획량에 대한 배타적 어업권을 의미하는 ITQ 운영체제하에서 어업권은 어업자간에 양도가 가능하여 어업자원의 최적배분이 가능하고, 어업에 투입된 자본이용의 효율성이 증대
- 호주의 사례연구(Green, G, W. Nielander and T.F. Meany, 1993)에 의하면 ITQ 제도는 기술적 어업관리수단이나 투입노력량 관리수단과 같은 전통적 어업관리 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잉노력량이나 남획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
- 따라서 ITQ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사업내용

- 시범적으로 ITQ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4개년에 걸쳐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

다.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연근해 어업자원을 지원수준에 맞도록 관리하여 자원을 회복 및 보전시킴
- ITQ제도 도입으로 어획능력 및 경영능력이 있는 어업인은 생존하고 그렇지 않은 어업인은 퇴출하도록 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
- 초과어획능력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퇴출시킴으로써 초과어획능력의 감축, 정부재정의 절감 및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 어업자원관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

(2) 추진방향

- 이론적 측면과 우리나라의 실정 및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TQ 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출
- TAC를 실시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조업실태, 경영실태 및 ITQ 제도 도입가능성 등 국내 어업여건 분석
- 쿼터 배분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ITQ 배분방법 등 ITQ 배분체계 및 자원량, TAC를 고려한 어획량 결정, ITQ 관리기간 설정 등 ITQ 공급관리체계 구축
- ITQ 거래소 설치, 거래장소, 거래시기, 거래단위 및 거래방식과 운용방법 등 ITQ 거래제도 도출
- 어획량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 양륙자의 양륙보고서 내용, ITQ 소유자의 ITQ 거래 내역 등을 어떻게 정하며 관리 할 지에 대한 ITQ 및 보고체계 도출
- 자료정보망 구축 및 운용방안, 자료의 이용방법 등 자료관리체계 연구
- 어선 및 ITQ 소유자의 불법 여부 감시 및 제재조치 방안 등 제도시행에 따른 관리규제체계 강구
- ITQ 제도 적용 및 시행방안 도출
 - ITQ 제도 적용방안 : 대상어종 및 어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검토
 - 시행방안 :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방안, 제도 및 법적 정비, ITQ

제도 시행 기본계획서 작성, 시범실시를 포함한 단계별 시행방안 등 마련

라. 기대효과

- 연근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체계 구축
- 어업을 대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합리성을 관철
- 어업경쟁력 증대
- 초과어획능력의 감축, 정부재정의 절감

4. 내수면 토산 어종 및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가.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 내수면 토산어종은 무분별한 내수면 개발로 산란·서식지가 파괴되고, 내수면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미흡하여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등으로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 토산자원을 증강하여 생태계 보존을 꾀함과 동시에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면 유어의 활성화로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
- 연어 치어의 인공 부화 방류 사업확대를 통한 연어자원의 증대,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등에서의 국제적인 모천국 지위 확보,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국민의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어치어 방류가 필요한 실정임

나. 사업내용

- 내수면 잠재력 조사
- 연어치어 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와 방향

- 자원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존

(2) 추진계획

(가) 내수면 잠재력 조사

- 조사기간 : 2003~2006(4년간)
- 조사대상 : 댐·호·호소(1ha 이상), 강, 하천, 양어장, 낚시터
- 조사내용 : 기본환경여건, 생물서식분포, 자원조성실태, 수질오염, 양식업, 어업, 낚시터개발, 기반시설(가공시설, 위판장, 관광지 등)

(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 토산어종 치어 방류 사업 확대
 - 종묘 생산방류 : ('02)5,077천미 → ('03)6,295 → ('10)20,442(197,352)
 - 종묘 매입방류 : ('02)17,456천미 → ('03)15,650 → ('10)42,777(396,454)
- 연어 치어 방류사업 확대
 - 연어치어 방류 : ('02)10,450천마리 → ('03)20,000 → ('10)58,000(517,773)
 - 시설보강 : ('02)900백만원 → ('03)700 → ('10)600(5,700)
 - 남북 연어자원 증대 공동개발

라. 기대효과

- 토산어종의 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생태계 종 보존을 통한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 증대
- 천연기념물 등 지역 특화 어종 보호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 종묘매입 방류사업의 확대는 종묘생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체의 활성화 및 종묘생산기술 발전에 기여
-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 수산자원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연어자원 이용개발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환경개선 노력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연어방류를 통해 NPAFC 가입, 연어 자원 공동 조사·연구 및 국제 수산외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

제3절 자율관리어업의 개념정립 및 확대 보급

1. 다양한 형태의 자율관리어업 모형개발 및 정립

가. 사업의 필요성

- 어업자원의 합리적 관리는 모든 연안국의 당연한 관심사이며, 최근 자원상태의 악화로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정부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체제는 다양한 지역적·어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정부와 어업인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별 및 어업별 갈등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어업의 생산기반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수입 극대뿐만 아니라 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불법어업의 해소를 위해서도 자율적 어업관리의 정립이 필요함
-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장의 이용, 수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착방안과 자율관리 실천방안 및 모델의 도출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임

나. 사업내용

- 기존의 사례 및 문헌연구 등을 통한 이론적 정립과 이론모델의 완성
- 시범사업과 자생적 자율관리형태의 발굴을 통해 이론적 모델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수행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자율관리어업은 사회적 운동의 형태로 추진
- 자율과 협력, 협동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의 정립
-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역할을 수행

(2) 추진계획

- 자율관리어업의 이론모델 구축
 - 국내외 사례분석 및 국내 시범실시 어업을 대상으로 유형화
 - 유형별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체계 정립
 - 정부와 어업인 및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 설정
 - 자율관리어업의 한국형 모형 개발
- 자율관리 모델의 개선과 사례발굴
 - 자율관리모델을 현실에 적용하여 평가하고, 다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
 -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을 계속 수집·분석하여 모델을 완성시켜나가도록 함

2. 자율관리어업 확대·보급

가.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은 대상 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민·관·학·연이 협동하여 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여야 함
 -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사업이 아닌 어업인 자율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운동임
- 기존의 시범사업형태를 전환하여 사례발굴에 노력하고, 자율관리에 힘쓰고자 하는 곳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지원으로 자율관리어업을 보급해 나가야 함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규제와 처벌위주의 전통적 어업관리를 어업인의 자율의식에 의한 어업관리(자율관리어업)로 전환
-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는 각종 제도나 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도와주는 협조자의 역할

(2) 주요사업내용

- 어장관리 및 자원관리

- 어초투하사업, 해조장, 해중림 조성사업, 치어, 치패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및 어장관리 사업
- 자원관리사업은 마을어장에 대한 구역표시 및 채취시기, 체(각)장 제한, 마을어장내 통발, 자망 등 어구(망)사용제한, 특정어업에 대한 구역 및 시기제한
- 생산관리
 - 1일 조업량 제한, 1일 위판량 제한 등 연간생산계획, 조업일수 및 회수의 제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확대방안의 수립
 - 모델정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의 제시
 - 우리에게 맞는 형태를 찾아 개념, 방식, 제도, 확대방안을 마련
 - 성공사례의 육성과 발굴
 -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체제의 개선
 - 사업주체와 추진방식, 육성 및 평가방식의 개선
 - 민·관·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각 지역별 자율관리협의회(가칭) 설치
 - 인센티브 제공방식의 도입과 홍보자료 활용

다. 사업추진계획

- 자율관리어업은 제도나 사업이 아닌 사회적 운동의 형태로 추진될 필요
 - 자율관리어업의 기본방향이 자율과 협력,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이 수산업에 정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
- 자율관리어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단지 슬로건으로 끝날 뿐임.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업인들과 정부의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자율적 어업관리가 관건임. 따라서 모델정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의 제시가 필요
- 정부의 직접개입보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시범사업 이외에 자생적인 자율관리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이므로 조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임
 -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 평가, 사례발굴, 이론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저야 함

-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확대 보급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민·관·학·연이 협동하여 운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는 각종 제도나 마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도와주는 협조자의 역할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원관리의 효과 제고 및 관리비용 감소
-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건전한 조업질서 형성 및 자체적으로 불법어업 예방
- 주인의식으로 효율적 어장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 공동자원관리 및 생산조절로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및 안정적 소득향상 도모
- 어업관리를 통한 어가경영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어업인들 사이에 인식

Ⅲ.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제1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1. 어획노력 조정을 통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

가. 사업내용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 자원을 남획하고 경쟁력이 없는 연안어선 6천여척을 감척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

- 어선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어업활동 편의도모
- 연근해어업 업종별 허가정수 재조정 및 유사업종 통폐합
- 연근해어업의 업종별 허가정수를 재조정·정비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 단순화
- 정기적인 허가일제정비를 제도화하여 허가관청의 관리의무 강화

유사 어구어법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

- 실질적인 어획노력의 감축 및 어획노력량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어업별 어구어법 기준고시를 제정
- 적정 어구수의 사용으로 자원회복, 어업경비 절감, 어장환경 개선 도모 및 폐어구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식 고취 유도

연안어선선복량 제한

- 연근해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 연근해어업 전체 업종에 대한 실태파악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종별·어선규모별 적정마력 산출
 - 어장여건, 수산자원 수준, 어업경영 측면(유류비 등 어업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어업별로 경제성 있는 기관마력 설정
 - 업종별로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연안조망 및 연안선인망어업 등 인망류어업의 기관마력부터 우선 제한하고 기타 어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 연안어선에 대한 선복량 제한
 - 3톤이상 어선을 근해어업과 같이 현재의 톤수를 선복량으로 제한
 - 다만, 3톤 미만의 어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3톤까지 증톤을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단계를 설정하여 제한
- 연근해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 제도적 규제를 통한 어업별 적정 마력수의 사용 유도로 어업경비의 절감 및 어업자원 보호를 동시에 실현
 - 업종별로는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망류어업의 기관마력부터 우선 제한
- 경제성 표준어선형 개발·보급
- 새로운 어선어업 환경에 적합한 어선의 세력기반을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경제성어선개발 적극추진 및 보급확대
 -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논의등 국제 여건변화에 대비한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지원계획을 재수립
 - 연안 노후어선대체지원은 기수립된 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추진
 - 2005년부터 개발 경제성 표준어선 건조지원 추진
 - 노후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보호설비대체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추진
 - 사업내용변경
 -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 ⇒ 어선안전운항 및 인명보호설비지원사업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선세력 감축을 통한 과잉어획 방지와 수산자원 지속적인 관리
- 잔존 어업자는 현대화된 어선과 설비를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실현

(2) 추진방향

- 현재 수립·추진되고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계획에 의거하여 어선감축을 추진
-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을 억제
- 연안어선 선복량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증톤 억제

(3) 추진계획

□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1단계 감척사업을 완료(2,990척, 9,024억원 : 연안 712척, 근해 2,278척)하되
- 그동안 추진해온 감척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전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을 재수립, 우선 2004년부터 년차적으로 연안어선 10% 수준을 추가로 감척하고 어업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 감척규모(2004~2008) : 6,300척(연안), 7,340억원
 — 대상업종 : 연안의 산란·서식수역에서 자원을 남획하는 연안 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선망, 연안조망 어선 등
 — 감척 우선순위 : 노후어선, 고령어업자, 자율관리주체(어촌계 등)가 선정한 어업자 등

□ 어업허가제도 재편 및 신규진입 억제

- 어업허가 일제정비
 - 관련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2002)
 - 수산업법 개정 (2003)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2003)

- 연근해 업종별 허가정수 재조정
 - 1단계
 - 연안·구획어업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02)
 - 근해어업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2002~2003)
 - 2단계
 - EEZ내 총어업 자원량 조사 (2002~2004)
 -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전면 재조정 (2005)

- 유사 어구어법의 통합 및 어구사용규모의 제한
 - 장어통발, 기타통발 및 문어단지어업을 근해통발어업으로 통폐합(1원화)
 - 근해채낚기, 근해외줄낚시, 근해연승어업을 근해낚시어업으로 통폐합
 - 중장기 과제로서 우선 대형선망어업과 소형선망어업을 근해선망어업으로 통폐합
 - 대형기저 외끌이어업과 동해안 서남구기저어업을 통폐합
 - 장기적으로는 대형트롤어업과 대형기저 쌍끌이어업, 서남해안 서남구 기저어업을 근해기저어업으로 통폐합

- 연안어업 어선선복량등 제한
 - 시·도, 전문가, 어업인 등의 의견 수렴후 제한범위 등 설정
 - 수산관계법령을 개정 제도화
 -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에 대한 의견 수렴 (2002)
 - 수산업법 개정 (2003)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2004)

- 연근해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 수산업법 개정(2004), 수산자원보호령 개정(2005) 등의 조치가 필요

- 경제성 표준어선형 개발·보급
 - 주요 업종별로 적정규모 어선을 선정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을 갖춘 표준어선 10종 선형을 2007년까지 개발·보급
 - 우리나라 근해어선에 적합한 선형 연구

- 선형시험 및 주요성능(경제성, 안전성, 편의성)평가
- 표준어선형 모델개발 및 대표업종별 기본설계도서 작성
- 표준어선 개발계획
 - 대형기저(외), 대형기저(쌍) 어선형개발 : 2003
 - 대형트롤, 대형선망 어선형개발 : 2004
 -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어선형개발 : 2005
 -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어선형개발 : 2006
 - 근해유자망, 근해연승 어선형개발 : 2007
- 주요사업별 지원계획
 - 대형기저 등 10종을 대상으로 표준어선형 개발자금 1종당 250백만원기준 100% 보조지원(25억원, '03~'07)
 - 개발된 표준어선형 건조지원
 - 연승어선 등을 대상으로 신조자금 톤당 21백만원기준 보조 20%, 용자 60%, 자담 20%(450톤, 75억원, '05~'07)
 - 대형기저 등을 대상으로 연승어선 등 9종을 대상으로 신조자금 톤당 21백만원기준 용자 80%, 자담 20%(615톤, 139억원, '05~'07)
 - 노후된 어선 및 기관 등 안전설비지원
 - 연안 노후어선대체를 위하여 톤당 12백만원기준 보조 20%, 용자 60%, 자담 20%(2,760톤, 265억원, '03~'04)
 - 노후안전·설비대체를 위하여 대당 2백만원기준 보조 30%, 지방비 20%, 용자 30%, 자담 20%(6,725대, 81억원, '05~'07)
 - 노후기관 대체를 위하여 마력당 160천원기준 용자 80%, 자담 20%(160천마력, 207억원, '05~'07)
 - 노후장비 개량을 위하여 척당 5천만원기준 용자 80%, 자담 20%(213척, 85억원, '05~'07)

□ 어구실명제 도입

- 경쟁적으로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오염 및 어장선점 등으로 인해 어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 어업인과 어구의 실명연계를 통한 정책실효성 확보
- 어구(틀)에 실명을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
- 표지판의 재질, 표시위치, 부착요령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법령을 개정·제도화

- 어구표지 모델개발 및 보급 추진(2004년)
- 경쟁적으로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오염 및 어장선점 등으로 인해 어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 어업인과 어구의 실명연계를 통한 정책실효성 확보
 - 대상어업 : 통발·자망·안강망어업, 일부 정치성구획어업
 - 표시사항 : 허가사항, 어업자명 등을 기재
 - 부착된 실명표지의 탈락, 훼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 실시 후 본격 도입
 - 실명이 없이 설치된 어구는 불법어구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

2.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가. 사업내용

- 어선을 감척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획노력량을 경감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실현
- 다수의 어업인이 어촌에서 어업을 영위하면서 수산자원을 동시에 보호

나. 추진계획

-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하여 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하여 어기중 매년 2~3개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휴어 할 수 있도록 휴어제를 실시
- 연안어업은 어업자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요 어업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가 있거나 구성할 수 있는 업종별로 시행하고, 근해어업은 업종별 수협이 구성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
 - 대상 업종 : 저인망·트롤·통발·안강망·선망 등
 - 휴어기간중 추정 소득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 검토
- 휴어대상 어가를 위한 국가의 최소생계비 지원방안과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형식의 도입이 요구되며, 휴어제 도입 및 휴어기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관계 법령 개정(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 휴어제 실시를 위한 근거 신설)이 필요

제2절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1. 시장의 수급 및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정

가. 사업내용

- 주요 품종별로 수요와 공급분석 결과에 따라 어장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과잉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활용
- 어업인의 자율적인 생산조절만으로 양식수산물 가격안정을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생산조정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
-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양식품목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여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예상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스스로 생산을 조절하도록 유도
- 어촌계 및 수협 소유의 해조류 양식업(면허어업)을 구획어업(허가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1995년 FAO에서 채택한 ‘책임 있는 수산업에 관한 규범(The Code for Responsible Fisheries)’ 제9조에 규정되어있는 양식업개발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국내양식산업의 구축
- 수요량에 적합한 양식생산 기반을 갖추으로써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식시설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

(2) 추진방향

- 양식생산량 조정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에 의한 조정과 정부 주도의 조정방안을 병행

(3) 추진계획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능력과 해류의 흐름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어장재배

치와 양식시설물의 조정

-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양식품목의 점진적인 생산량 감축 유도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생산과잉 양식품목에 대한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하여 양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능력과 해류의 흐름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어장재배 치와 양식시설물의 조정, 무면허 및 법정기준 초과시설의 철거 및 양식어장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어촌계와 수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조류 양식어장 관리주체를 지구별 수협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별 어장개발·이용, 양식 품종 선택 및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수협에 권한 부여

다. 기대효과

- 양식수산물의 과잉생산을 예방하여 적정 생산량을 통한 가격안정이 가능해 지고 시장동향에 따른 과학적인 양식이 가능
- 공급 또는 생산증대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에 대응한 적정 생산체제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을 제고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력에 대응한 적정 시설을 갖춤으로써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을 위한 생산체제를 구축
- 기르는 어업활성화로 인한 생산증대 뿐 만 아니라, 관련 관광·레저활동의 증가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 필연적으로 확충됨으로써 어촌개발을 촉진시킬 것임
- 지방분권화에 대한 수요증대로 타 지역 양식산업의 가능성 존재

2. 친환경적 사료개발 및 보급 확대

가. 사업내용

-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보급

나. 추진계획

- 관련제도 정비 추진
 - 사료검사규정 및 사료공정규격고시 개정 추진(생사료 및 습사료 사용 제한)
- 어업인 지원사업 확대
 - 배합사료 사용어업인 보조금 및 생산업체 시설자금 지원
- 사료급이 자율개선시범지역지정 및 운영
 - 수산발전기금 등을 이용한 자금 지원
- 배합사료 기술개발확대 및 연구방향 정립
 - (1998년까지) 1,079백만원(7과제) → (2001) 370백만원(5과제) → (2004) 1,000백만원(8과제) → (2011) 2,000백만원(15과제)
 - 사료에 따른 성장연구 → 사료와 환경·질병 등 병행 연구
- 연구·지도인력 확보 및 협의회 구성
 - 수산과학원에서 사료연구실 신설 및 지방청 지도직공무원 채용시 양어사료 전공자 우선 확보
 - 양식사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다. 기대효과

- 어장오염, 어류질병의 사전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수산물의 생산
- 어류 양식어가의 경영구조 개선
- 양식 경영비 절감 및 양식 생산성 향상
- 어류양식 산업의 안정적 발전

3. 양식어류 질병 관리체계 강화

가.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

나. 추진계획

- 백신 개발 연구 강화

- 넙치 에드워드백신 등 산업화 추진
- 난치성질병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및 인력 확충
- 수산질병관리사·관리원 제도 신설
- 어병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한 질병진료 체제 구축
 -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2002.1)에 따라 2004.1부터 제도 시행
- 어병방역센터 운영
 - 백신개발, 질병정보시스템 구축 등 어병피해 저감 및 양식수산물 안전성 제고
- 질병 조기발견에 의한 적정 치료대책 강구
 - 수산기술관리소 어병예찰 기능 강화
 - 병원미생물에 대한 D/B 구축으로 신속한 어병정보 제공
- 어장관리 지도 강화
 - 과밀사육 및 감염어 이동 금지, 비타민제 투여, 수질관리 철저 등

다. 기대효과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양식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질병 폐사율 저감을 통한 어업인소득 제고
- 어류질병 피해 규모 축소로 생산성 극대화(연간 2,500~3,000억원 소득 증대)
- 난치성 질병의 예방으로 양질의 건강어류 생산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 경감
- 효율적인 약제 사용방법 개발·보급에 의한 치료효능 증대로 생산원가 절감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건강어류 생산으로 국민 신뢰성 제고 및 소비 촉진

4. 지속적인 어장환경개선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 및 규모 : 전국 연안어장 238천 ha
 - 특별관리어장(82천ha) : 적조등 어업피해 빈발 및 어업권 밀집해역
 - 남해안 9개만(灣) :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강진만, 고성만, 자란만, 한산만, 진해만
 - 양식어장(156천ha) : 수협·어촌계의 마을·양식어장 및 주변 개인어장

※ 어장별 정화소요기간('02년도 사업량기준): 특별관리어장 10년, 양식어장 9년

- 사업내용 : 오·폐물 수거, 경운, 객토 등 어장환경 개선
- 양식어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적된 오염물질은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양식어장 생산성을 제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증가와 장기연작에 따른 자가오염 등으로 어장 자정능력 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어장환경 개선 사업 추진

(2) 추진방향

- 어장 정화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하여 정화사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단위사업별 정화수역을 광역화
- 퇴적물, 수질 등 표준화된 어장청소기준 마련을 통한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 무 성실 이행
- 폐각, 폐어구·기자재 등 어업폐기물의 어장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사업 활성화
- 어장정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업인 및 관련자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율어장 관리 실현

(3) 추진계획

□ 정화사업 추진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사업수행

- 정화사업 집행주체의 시·군 일원화
 - 어업권자와 사업협의, 사업의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정산 등 용이
- 정화사업 설계자와 시공자 분리
 - 설계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조)
 - 시공자는 시·도지사에게 정화업체로 등록한 자(어장관리법제15조)

- 정화사업에 대한 전문감리시스템 구축
 -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등에 전문감리업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
- 정화사업 사후환경 평가체제 구축
 - 기존 어업인 설문조사 방식에서 탈피,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평가기법 도입을 통한 사후환경 등의 효과적인 분석·검증
 -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 익년도 사업에 반영

□ 제도정비를 통한 정화사업 추진기반 구축

-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의무이행 강제수단 확보
 - 지역별 여건 및 양식품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어장청소기준을 마련하고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확정(500만원 이하 벌금)
 - 퇴적물, 수질 등 적정 양식 환경기준 설정

※ 법적근거 :

-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수질 및 퇴적물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고시(어장관리법 제11조)
- 해역에 대한 환경기준(수질)이 설정되어 있으나 퇴적물에 대한 기준은 없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육성 방안 강구
 - 정화 전문선박 및 우수장비(형망 특허취득 등) 보유업체의 입찰 등록시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가능여부 등 적극 검토
 - 정화·정비업 등록업체 보유선박의 타목적에 사용금지(어장관리법시행령 개정)

□ 연안어장 환경평가를 통한 어장휴식년제 시행 기반 조성

- 연안어장 환경평가사업 실시(국립수산과학원)
 - 기간 및 총사업비 : '99~'04년 (12억원)
 - 전국연안 양식어장 환경조사 완료('99~'02)
 - 어장관리해역 환경용량 산정 및 관리방안 수립 등('02~'04)
 - 연안어장 오염도 작성 등을 통한 체계적 정화사업 추진('03)
- 어장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매 5년마다 수립(기본계획 : 우리부, 시행계획 : 시·군)

- 어장관리 정책방향, 양식면적 및 시설량 조정, 어장정화, 어장휴식 등

□ 단위사업별 정화수역 광역화로 사업효과 제고

- 특별관리어장 지정을 폐지하고 연안어장 환경평가사업 이후 오염도 등을 고려, 어장관리해역과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분리하여 사업 수행
 - 어장관리해역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 등 동시갱신 실시 가능 해역
 - 어장관리특별해역 : 어장관리해역중 오염이 심화된 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어장휴식 가능해역

□ 폐각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효과적 정화방법 개발로 어장정화효과 거양

- 폐각(조개껍질) 재활용업체 운영 활성화로 폐기물량 최소화
 - 폐각폐기물을 재활용, 폐화석비료 및 탄산칼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간접지원을 통한 원활한 수거·처리
 - 저리용자지원 및 금리하향조정 추진(재원 : 수산발전기금) :
 - 지원규모 : '01년 8억원, '02년 6.5억원
 - '03년 계획 : 예산당국과 금리 하향조정등 협의 추진
 - GR(Good Recycled Products)인증업체 선정을 현재 추진중(5개업체)이므로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정부우선 구매협의 추진(농림부 토양개량체지원사업반영)
- 가두리 양식어장 정화방법 개발로 실효성 확보
 - 가두리 양식어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화방법 및 전용정화선(2선단 4척 : 40억원) 개발 추진

□ 연안어장 정화사업에 대한 어업인 의식전환

- 정화사업 효과 및 우수 사례, 청소 불이행 어업권자 제재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배부, 수산교육기관(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의 교과목 편성, 어업인 대상 회의시 내용 전달 등
- 어장관리 우수 지자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년도 증액 지원
 - 우수 어업인 및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및 상금 수여

다. 기대효과

- 경운, 객토, 어장 재배치 등의 어장개선을 통해 환경회복 및 생산성이 향상되어 시설증가 없이 어업인 소득증대 가능
 - 어장정화사업 효과 조사결과 김, 미역, 톳 등 해조류 및 굴 등 패류의 단위 생산량 증가
 - ※ 해조류(7~24%, 110만원/ha), 패류(22.5~60%, 496만원/ha)
- 깨끗하고 위생적인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 어장오염 심화해역의 정화·정비로 적조, 병해 등 어업피해 최소화

5. 해외 양식어장 개발

가. 사업내용

- 해외 양식수산물의 생산증대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저비용의 고급수산물을 생산·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어업인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양식어장 개발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해외어장 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수입대체 및 전략수출 품종을 생산

(2) 추진방향

- 국제분업(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외국의 어장과 노동력 결합)을 통해 고급어종의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해외 양식어장에 대한 적지 및 타당성 조사 후 해외진출시도

(3) 추진계획

-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하여 해외양식어장개발에 필요한 자료 및 투자전략 개발을 위한 경제성 검토 및 타당성 조사
- 투자의 안정성 검증 및 현지 고급어종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양식 추진

-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외국의 어장과 노동력을 결합한 국제분업화 형태로 추진하여 상호협력체제 구축

다. 기대효과

-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구축
- 증가하는 국제수산물 교역량과 수산관련 WTO 협상결과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해외양식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추진

제3절 어업질서의 확립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 강화

가. 사업내용

- 현행 제도에 의한 규제의 검토
 - 조업금지구역, 허가정수와 조업구역, 허용되지 않는 어업, 수산자원보호령 속의 기술적 규제, 불법어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
- 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어업지도선 및 단속장비 확충
- 매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합동단속계획의 수립 및 연중 육·해상 합동단속 정례화
- 외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 수산업법에 불법어선의 강제매입 및 수용근거 신설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가칭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불법어업의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은 물론 업종간 균형발전을 지향

(2) 추진방향

- 어업질서 확립으로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 어업인에 대한 지도·홍보 및 지속적 단속 추진
 -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발굴·개선으로 불법어업자 양산 방지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 영해 및 EEZ 조업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
 -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장비 확충
- 수산업법에 불법어선의 강제매입 및 수용근거 신설

(3)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어업지도선 및 단속장비 확충(2003~2010)
 -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현재25척→38척으로 증강)
 - 신규건조 어업지도선 규모 : 1,500톤급 1척, 500톤급 9척, 200톤급 3척
 -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선 대체(10척)
- 첨단단속 장비 확보
 - 쾌속보트, 전자해도시스템, GPS비디오카메라 등
-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확충(2004~2006)
 - 현재 69척에서 80척 수준으로 증강
 - 소형 및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 5톤 미만 및 선령 20년 이상의 어업지도선을 40톤급 이상으로 대체
 - 소요예산은 세부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방안 강구
- 현재의 부산 소재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가칭 ‘어업지도본부’로 개편(2003)
 - 지도·단속과 관련된 조업분쟁 등 어업조정 기능을 일부 부여
 - 가칭 ‘어업지도본부’ 산하에 서·남해안 어업지도선사무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지도선 관리업무 효율화(2004)
- 매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육·해상 합동단속을 정례화(월 1회 이상)
 -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해경, 시·도, 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술협회
 - 우범해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단속 실시(월 1회이상)
 - 불법어업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어업자의 체계적 관리
- 지도단속해역 분담
 - 영 해 : 시·도(연안어업중심)
 - 영해외측 : 해양수산부(근해어업중심)
- 외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 중국과의 제휴순시 및 공동승선을 통한 조업질서 유지
 -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로 불법어업 감시활동 강화
 - 외국어선 승선검색 및 위반어선 나포 등 강력대응 조치

- 수산업법에 불법어선의 강제매입 및 수용근거 신설
 - 시·도, 수협 및 어업인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2002)
 - 수산업법 개정 (2003)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가칭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설치·운영 근거 마련(2003 이후)
 - 업종간·지역간 주요 분쟁사례 :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제1구 기선권현망어선의 제2구 해역 조업, 근해어선의 제주도 연안 조업 등

2. 어업인 의식개혁과 합법어업 자율참여 유도

가. 사업내용

- 어업인 의식전환 및 자율질서환경 조성
 - 어업인 결의대회 개최 및 자율신고체제(포상금제도 도입) 활성화
 - 불법조업 시기 파악, 사전교육 실시, 불법어업정비 우수기관 표창 등

나. 추진계획

□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지도활동 강화

- 국내어업의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영상물을 개발하고, 수협, 지방 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등을 통해 홍보 및 지도·교육 자료로 활용
- 업종별 금어기·조업금지 구역·처벌내용 등에 대한 홍보책자 배포
- 산란기, 치어성육기에 앞서 특별담화문 발표(4월, 9월)
-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 장관 및 시·도지사 친서 발송

□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국민여론 형성 도모

-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와 협조하여 공동기획 프로그램 및 기사 작성
- 한국수산회 및 해양환경단체 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지원

□ 자율관리어업 체제의 정착 및 확산

- 정부주도의 자원관리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

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지도체제를 육성

- 자율관리어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보급 확대 및 제도적 지원

□ 불법어업자에 대한 전업지원

- 당초 허가받은 어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어구구입비 등의 지원 및 타 산업으로의 전업을 희망 시 교육기관을 알선하고 전업교육비 및 교육기간 중 최저생계비를 지원
- 사업비는 총 300억원(타 산업으로의 전업지원비 100억원 포함)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수산발전기금에서 충당
- 사업규모는 약 1,280척(어업허가가 있는 소형기저어업 조업어선의 70%)으로 추정

제4절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 강화

1. 원양어업의 구조조정

가. 사업내용

- 원양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대상 : 경쟁력이 약한 업종 및 노후어선(오징어채낚기, 콩치붕수망, 해외(기지)트롤 어업, 북양트롤 어업)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장이 축소된 업종 및 오징어 채낚기업종 등에 대한 감척사업

(2) 추진계획

- 사업계획
 - 오징어채낚기어선 3척 감척(2003년), 오징어채낚기어선 4척 감척(2004년)
 - 2005년 이후 : 오징어채낚기어선 6척 감척
- 지원조건
 - 어선·어구 및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 : 100% 보조
 - 폐선처리비 : 100% 보조
 - 폐업보상비 : 보조 50%, 용자 30%, 자담 20%
 -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환
 - 관련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등)
- 콩치붕수망 어업
 - 한·일 및 일·러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콩치붕수망 어장확보의 불투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어선에 대한 폐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손실 최소화 와 잔존 어선들의 경영채산성을 유지
- 그 외 대상어업 : 해외(기지)트롤 어업, 북양트롤 어업

2. 참치연승어선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가.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00톤급 30척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담 20%(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노후화 된 참치 연승어선의 신조 건조로 참치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계획

- 외화가득율이 높은 원양참치연승어업육성(2001년 수출액200백만\$)
 - 선령 21년이상 50척중 30척을 대상으로 신조대체자금지원(80%융자)
- 총건조비/사업기간 : 1,440억원/2003~2006(4년간)

3. 원양어업 정책자금 지원

가. 사업내용

- 원양업체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강화
- 원양출어경비 등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으로 금융부담 경감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양업체의 조업위축 및 경영악화를 완화

(2) 추진현황

- 1974년 원양어업 영어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2년부터는 해외자원생산 지원자금 지원 개시

- 영어자금
 - 지원대상 : 연근해, 내수면 및 원양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필한 자)
 - 지원범위 : 출어경비의 10~50%대출 (어업별 소요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영어자금,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 동일함)
 - 대출금리 : 4.5%(2002.7.1 금리인하 : 5.5% → 4.5%)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 2002년도 운용규모 : 1,150억원
-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
 -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 및 어선 (해외양식업 포함)
 - 지원범위 : 출어경비의 40~60%대출 (어업별 소요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지원조건 : 영어자금과 동일
 - 2002년도 운용규모 : 3,000억원

(3) 추진계획

- 원양출어경비 등 저리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금융부담 경감
 - 원양 출어자금 연간 운영규모 3,740억원 유지(해외생산지원자금 2,590억원, 영어자금 1,150억원)
 - 시중일반대출금리 및 조업경쟁국 금리를 감안, 정책자금 금리인하추진(4.5% → 3%)

4.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가. 사업내용

- 해외 신어장 조사연구사업 추진
- 어장정보 제공으로 업계의 신어장 진출 지원
- 해외어장 조사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립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국제 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어장 개발

(2) 추진계획

- 해외 신어장 개발 조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 진출가능 해외수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
 - 매년 2개이상 공해수역을 대상으로 신어장 자원조사 또는 시험조업 실시
 - 칠레 서남부 전갱이 어장조사(13억원, 2003년)
 - 북태평양 자원조사(4억원, 2003년)
 - 민간인에 의한 어장개척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해외어장개발 자금보조지원 : 12억원(2척, 칠레 서남어장, 2003년)
 - 신어장개발 사업용 어선에 대한 해외자원생산 지원자금 지원률 우대 지원 (선박별 용자비율에 25%까지 추가 지원)
- 주요 연안국 어장정보를 제공하여 업계 스스로 신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유도
 - 주요 입어대상국 입어조건 및 조업여건 등을 D/B화하여 입어 참고자료로 제공
- 남빙양 크릴어장 개발 추진
 - 벤처기업을 설립, 크릴제품 연구개발을 정책적으로 육성
- 해외어장 조사사업 전담기구 설립
 - 어장성이 있는 수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사업 추진필요
 - 전담기구가 수익성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여 정부지원을 최소화
 - 신어장 조사사업과 기존어장의 유지·관리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제5절 신 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화

1. 책임어업 이행 및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추진

가. 사업내용

-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체결 확대로 대외협력기반 조성
- 감척어선 제공 및 연수생 초청훈련 등 수산기술 협력 증진
- 국제규범 이행 및 지역수산기구 적극참여로 우리 원양어업 이익확보
- 주변국과의 해양수산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주요 연안국과의 수산협력강화로 수산 우방국 확보
- 국제수산규범 이행으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추진계획

- 안정적인 조업권 확보를 위한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 어업교섭단 파견, 주요연안국과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 약정체결(브라질, 모로코 등), 수산관련 주요 국제기구(남동대서양수산기구, 남서인도양수산위원회 등) 가입 추진
 - 인니·베트남·노르웨이 등 약정국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수산개도국에 대한 감척어선 제공 및 수산기술협력 추진
 - 수산개도국 및 주요 입어국에 대한 감척어선 무상지원사업 지속 추진
 - 2002년 현재 15개국에 84척 지원 추진중
 - 수산기술 연수생 초청 훈련 및 수산전문가 파견으로 기술협력 확대
- 국제수산규범 및 행동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원양업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공해어선 편의국적금지협정은 2003년중 비준절차를 추진, 유엔공해어족보존 관리협정은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협약(WCPFC)과 연계하여 검토·대응
- 국제옵서버 양성으로 국제자원관리 동참 및 책임어업 이행
 - 외국위탁교육 : 2002년 5명, 2003년 10명 양성
 - 국내자체교육 : 2004년 이후 매년 100명 양성 목표

□ 주변국과의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 APEC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 2004년중 인도네시아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 ※ 02. 4월 1차회의 개최(서울)
- 한·중·일 해양장관회의 정례화
 - 2003년중 한·중·일 3개국간 해양수산분야 장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개최 추진

2. 동북아 3국의 공동어업관리체제 구축

가. 사업의 필요성

- EEZ의 경계확정 이후에도 회유어종은 공동 자원 관리가 필요
- 정착성 자원 역시 인접국의 어업에 따라 연관된 생태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자원에 대한 공동관리를 위한 3국의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나. 사업수행 방향

-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 동 위원회의 운영 및 연근해 어업 연동 관리 체제 구축
- 어업협력 기구의 조직체계 연구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사례)
 - 공동위원회 :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
 - 상설평의회 : 양국 간 어업관리 및 법집행 관행에 관한 이슈 논의 및 감독

- 관과 읍저버 등의 인력 및 각종 자료의 교환을 수행
 - 양국간 어업협력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설립
- 어획량 할당제와 과학적인 파라메타 추정
- 어업관리의 투명성과 상이한 기준의 조정
 - 체장제한, 망목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 등에 대한 기준 통일
- 어구어법의 표준화
- 한·중·일 3국간의 수산과학기술 협력

IV.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제1절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1.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가. 사업내용

- 수산물 품질제고, 대상품목의 개발, 선정방식의 객관성 강화 및 제품의 우수성 홍보

나. 추진목표와 계획

(1) 추진목표

-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가공업체 및 어업인 수익 증대

(2) 추진계획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확대·발굴, 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 등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로 소비자 및 가공업체의 이익 추구
- 품질인증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 품목선정기준의 과학성 도모

다. 기대효과

- 품목선정기준의 과학성 도모로 인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 국내 수산업의 구조개혁과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가능

2.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가. 사업내용

- 수산물원산지증명제의 도입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제적 대응을 위한 국내법규 정비
 - 수입산과의 차별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 원산지 표시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해역별 표시제를 시행하고 또한 이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위생관리로 연계시켜 나갈

나. 추진목표와 계획

(1) 추진목표

- 수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생산자 실명제 및 환경표시제도, 식품표시제도와 연계방안 마련

(2) 추진계획

-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포, 표시방법·국산·수입산간 식별법 등 홍보
- 시행 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 관련법규 및 제도의 보완
- 활어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국산→수입산)

다. 기대효과

- 올바른 원산지 정보로 인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이 가능
- 급증하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 가능

3. 수산물 HACCP 도입과 안전관리체제 구축

가. 사업내용

- 수산물에 대한 HACCP 기준 및 관리·운영 방안 제정

- 주요 수출국과의 HACCP 이행에 관한 협약 체결
- 수산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수산물 사전 안전성 확보(연중/장기추진)
- 수산물 검사·검역 제도개선
-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

나. 추진목표와 계획

(1) 추진목표

- HACCP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수산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로써 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제고
- 전문검사인력 증원 및 첨단분석장비 확충으로 선진검사체제 구축

(2) 추진계획

- HACCP 제도의 도입·정착
 -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 및 주요 수출품목의 HACCP기준 고시 제정 관리·운영
 - 표준모델의 지속적 개발과 업계 보급
 - 미 FDA와 수산물의 HACCP 이행에 관한 MOU체결 추진
- 수산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
 - 기관별, 지역별 수산물의 특화 안전성에 대한 구분 조사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국내 유통단계 표시제도 시행
 -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신속대응
-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중국산 : 금속탐지기 검사 지속 실시, 수산당국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등
 - 베트남산 : 수출수산물 가공공장 국내등록 추진 등
 - 미국, EU 수출수산물 : 가공공장 위생관리 강화
- 수입수산물에 대한 선통관제도 적용 강화(연중)

- 선도보장이 가능한 수산물은 정밀검사후 통관, 신선·활 수산물은 부적합 발생시 선통관 금지품목으로 지정·운영
- 부적합 이력의 해당국가·수산물 및 수입업체 정밀검사 강화(하반기)
 - 효율적,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새로운 검사기준 설정 추진(장기추진)
 - 항생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 등) 등
- 검사·검역업무 급증에 따른 검사인력 증원 및 장비 확충(장기추진)
 - 인력 : (2001)129명 → (2002)140명 → (2003 이후) 201명
 - 장비 : (2001)885대 → (2002)981대 → (2010 이후) 1,650대

다. 기대효과

-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단절 없는 위생관리 실현가능
-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인하여 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

4. 수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가. 사업내용

-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 민간의 자율적 위생관리체제의 구축과 유인정책 필요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및 연구지원 필요
- 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확산
- 수산물 위생 가이드 라인의 책정
-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충원
- 종합위생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킨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식품안전성 확보 방안과 조화되고, 국내 및 해외

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모두를 위생관리 대상으로 하고, 생산(국내반입)에서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범위로 해야 함.

(2) 주요사업내용

- 종합적인 수산물 위생관리체계 구축
- 민간의 자율적 위생관리체제의 구축과 유인정책 필요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및 연구지원 필요
- 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확산
- 수산물 위생 가이드 라인의 책정
-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충원
- 종합위생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킨 위생관리 모니터링 실시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소비자에게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감을 획득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효과
- 국민건강 및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기여
- 국제수준의 검사·검역체계 구축 및 검사능력 확립으로 선진 검사행정 구현
-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상대적 품질향상 및 가격제고

제2절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1.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 정비 및 경영실태 분석

가. 사업의 필요성

(1) 행정관리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

-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정도에 따라 고차가공품은 식품위생법으로, 단순가공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 그 외 단순가공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수산물가공산업은 식품위생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이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수산물 안전성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어서 가공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어업의 유지·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음
- 수산물가공산업에 대한 통일된 관리방식 및 운영주체의 부재는 생존을 위한 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 속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원화된 체제하에서는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

(2)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미비

- 수산물가공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는 여러 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나 기초적·평면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조사되고 있는 내용도 통일성이 떨어져 비교·검토에 한계
- 정책방향을 현실적이고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비는 필수적.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서로간에 조사기준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기가 곤란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수산물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기본적인 현황에 더해 경영실태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구비

(2) 주요 사업내용

- 이원화된 체제의 정비
 - 식품위생법상의 수산물가공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재이관하거나 축산물가공의 사례를 참고로 생산·판매·위생관리 등이 일원화 내지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보완·수정
 - 제도권에서 배제되어있는 업종도 제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경영실태조사의 정례화
 - 업종별·지역별·경영형태별로 원료의 수급, 제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
 - 조사결과를 기초로 산업간, 업종간, 지역간 경영수익 및 지표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료 구비

다. 사업추진계획

- 수산물가공과 관련된 업계, 정부, 단체 등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현재 관리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및 정비
- 수산물가공과 관련된 기존 조사기관, 행정기관, 업계간의 협의를 통해 조사 범위, 대상, 지역, 품목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또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향상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충실한 자료에 기초하여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업체의 경영전략의 수립에도 활용함으로써 수산물가공산업의 발전 도모

2. 수산물가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가공품 수출은 1990년 대비 2000년 현재 물량, 금액이 각각 28%, 11%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224%, 335%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커지는 반면, 국내 수산물가공품의 수출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음
- 특히 수산물 생산량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공산업부문에서 중국의 국내시장 잠식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더불어 최근의 생산구조변화에 따른 원료수급 조건 변동과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전체적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수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식량자원(수산물)의 공급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은 필수적임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수산물가공산업의 업종별 비교우위 분석 등 대내외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한 집중육성 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산업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모색

(2) 주요사업내용

- 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업종별 경쟁력 비교연구
 - 수산물가공산업의 구조개선방안 연구
 - 주요국의 수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 냉동·냉장업 등 수산물가공 기반시설의 확충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
 - 시설 및 운영 자금등의 적기지원으로 경영 활성화

- 가공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
 - 자금의 적기지원으로 경영 활성화
 - 다양한 소비자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연구체제의 확립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영세가공업체의 경영활성화 방안 모색

다. 사업추진계획

- 전체 15개 유형 중 식용품을 생산하는 11개 업종 및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및 수출 경쟁력상 우위에 있는 업종 및 품목을 도출
-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집중육성 대상을 선별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통한 산업내 구조개선방안 도출
- 각각의 유형과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원료수급 조건, 국내외 시장 동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추진
-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방안 마련
 - 냉동냉장업 등 기반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소규모 가공업체간 공동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어업인과의 연계 유도 등
-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 산·학·연 연구체제 확립
- 지역 특화품목 개발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 등으로 소득증대
 -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차별화 홍보 등 우수 수산물 보급확대 추진
 - 수산가공품 전시판매장 개설 및 홍보 확대
- 신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수산물가공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추진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업종별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집중육성 대상을 선별하고 이에 근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통한 구조개선 유도 및 산업경쟁력 강화

3.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 방안 연구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가공산업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어업과 비교해 떨어지고 있는 실정
- 영세·중소업체의 경우 원료확보, 기술개선, 제품개발, 시장정보 수집, 판매 루트 개척 등 경영전반에 걸쳐 산적된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경영성과가 현저히 저하
- 수산물가공산업 내에서 영세·중소업체의 지위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체 자구적 대응에 한계가 노출된 바 정책적 지원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경영활동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화·공동화의 유도를 통한 영세·중소업체의 효율성 제고

(2) 주요사업내용

- 업종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성격별·유형별 기본방향 도출
- 업계와 정부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세부적인 방안 검토
- 영세중소업체의 지역별·유형별로 공동화 내지는 협업화 방안 도출

다. 사업추진계획

- 경영합리화의 수단으로써 동종업자간 공동사업 및 협력관계를 맺어 원료구입에서 제품판매에 이르는 사업과정의 합리화, 설비의 공동사용에 따른 투자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산가공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화를 통해 원료조달부터 판매까지 생산 및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영세·중소형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공동화·협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추진을 통해 동업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제3절 거점 산지·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1. 산지유통체계 개선

가. 사업내용

- 주요 생산지 거점시장 육성
- 산지유통시설의 보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산지의 가격교섭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
- 어업인 및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시장서비스의 제공

(2) 추진방향

- 산지시장의 규모화 및 시설의 재정비
- 위판장간의 물량, 정보통합으로 연계성 강화
- 공동출하의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체계 개선

다. 추진계획

- 주요 생산지의 유통시설을 권역별로 거점화하여 공동출하·포장화 등 종합 기능 수행을 위한 거점시장으로 육성
 - 경남·전남·서해·동해북부·동해남부의 5개 권역 대형위판장을 리모델링하여 물류기능을 확대한 공판장으로 조성
 - 위판장간의 응집력을 강하게 하여 구매자에 대한 공급편의를 제공, 산지시장으로서는 대형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산지시장이면서 소비지시장기능을 겸비
- 잔존하는 소규모 위판장은 어업인들의 출하편의를 위해 시설보완을 하거나, 일부는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
- 산지유통기능을 현재의 단순위탁거래의 방식에서 가공, 포장 등을 포함한 공동출하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

- 개별 산지시장은 공급과 물류서비스, 거점시장은 물량의 집적과 분산, 정보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분담

2. 소비지 유통체계의 개선

가. 사업내용

- 가락시장 이전 및 시설확대
- 노량진 시장의 리모델링

나. 추진목표 및 방향

(1) 추진목표

- 수산물 수급의 균형 유지와 수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구조의 유지·개선
- 수도권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재편을 통해 수산물시장구조 개선 및 수산물 유통개혁의 기반

(2) 추진방향

- 가락시장의 리모델링으로는 시설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시설이전
- 노량진시장은 수도권에 잔존시켜 리모델링하고 도소매 혼합시장으로 육성

다. 추진계획

- 가락시장 시설이전
 - 현재 시설 협소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가락동 도매시장의 이전을 추진하되, 시장전체의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산분야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
 - 이전비용은 가락동 시장부지 매각대금 및 민자유치 등으로 충당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 노량진시장 리모델링
 -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가락시장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이 있음. 여기에서는 수도권 잔존을 기본방향으로 함. 노량진시장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도소매 혼합시장으로 육성하며, 소비자와의 거리감이 없는 수도권 중심시장으로 육성

3. 수산물 물류 및 표준규격화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시장의 비효율성은 수산물 정보의 부정확, 취급의 전문성 때문임
- 품질, 하역, 수송, 저장, 포장 등의 표준화·규격화로 거래 효율성을 증진하고, 거래정보의 표준화로 사회적 물류비용 절감, 시장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수산물 규격화·표준화로 사회적 유통비용의 절감과 유통경쟁력을 강화함
- 규격화·표준화된 수산물 거래는 거래질서 정착, 유통정보 정확성 제고, 공동출하 및 브랜드화 촉진, 유통비용 절감 등 정책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주요사업내용

- 수산물 하역수송 및 물류효율 개선
- 수산물 포장(어상자, 소포장) 효율성과 안전성 및 품질 규격화 개선
- 대량수송을 위한 규격표준화(파레트, 선상냉동품 등의 규격표준화) 개선
- 수산물 규격화·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다. 사업추진계획

- 수산물 물류개선 총괄기본계획의 수립이 우선되고, 이후 세부 각론(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제품규격 등)의 동시 추진이 필요함
- 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1차년도는 물류실태조사와 효율성분석, 2차년도는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3차년도는 세부각론의 추진계획수립이 타당함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산물 규격화·표준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 비효율적 포장 및 적재수단 개선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 수산물 소포장을 통한 제품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 가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화로 전자상거래 등의 거래기반 구축
- 기준이 통일됨으로써 통계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짐

4.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가. 사업내용

- 농안법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
- 시장거래제도의 개선
- 정산자금의 지원 및 중도매인 수익보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소비지도매시장 거래 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
- 수산물 판매여건, 거래물량 등을 감안한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2) 추진방향

- 수산물 유통특성을 반영할 농안법 개정안의 마련과 수산물 「식품산업법」의 제정
- 상장경매를 우선으로 하되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도입

다. 추진계획

- 농안법의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
 - 현행 농안법의 적용을 우선하고, 적용 후 문제가 있다면 개선, 「수산물식품산업법(가칭)」을 제정하여 수산물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로 삼아야 함
- 시장거래제도의 개선
 -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존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 거래의 공정성과, 가격결정의 투명성, 정보의 공개성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상장경매제도를 주된 원칙으로 하되 정가수의매매를 부수적으로 병행하여 확대
- 정산자금의 지원
 - 신속한 현금결제 체제의 구축이 필요, 도매법인의 수집강화에 강점이나 대금의 정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
 - 기존 유통경로의 경직성은 전대금 혹은 외상대금의 미수 등이 하나의 원인, 도매법인이 실패 조사후 정산하되 중도매인이 당장 감당할 수 없어 대출형태로 지원 필요. 이를 위해 출하촉진자금의 확대와 일시적인 유통개선자금의 지원이 필요
- 중도매인의 수익보전
 - 상장경매 정착은 중도매인 수익감소와 직결, 이를 중도매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경매 적극 참여 중도매인과 법인은 세제혜택, 장려금 지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 필요

5. 수산물 e-Market Place 구축방안

가. 사업의 필요성

- 향후 수산물 B2B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 기존의 off-line거래보다 B2B 거래가 비용이나 물량조달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
 - 수산물 B2B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해야할 사업으로 기반조성이 필요
- 그러나 도매시장 기반의 수산물 B2B는 해당 시장의 취급물품, 물량 등의 제약이 따르고, 특히 시장외거래 물량을 수용할 수 없음
 - B2B 주 거래대상은 가공품, 냉동수산물(원양, 수입)이며,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없거나 취약하고 시장외거래가 일반적
- 이러한 의미에서 중개자 중심 B2B인 e-Marketplace형의 사이버도매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비용절감과 원활한 물량조달을 통해 사회적 유통비용의 절감

- 21세기 e-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대국민 One-stop 수산물 쇼핑 서비스 구현과 유통개선의 실현, 장기적 수산물 B2B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처
- 도매시장 중심 B2B를 e-Marketplace로 전환하여 시장외거래 유통효율성을 제고

(2) 주요사업내용

- 수산물 원료, 가공품 및 요소시장 거래실태 및 B2B 구축 타당성
-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유형별 실태 및 경영수지 분석
-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선호조사 및 집객효과 분석
- 수산물 e-market place 및 통합쇼핑몰 구축 시안
- 바다를 테마로 한 B2B, B2C 통합쇼핑몰 구축

다. 사업추진계획

- 수산물 e-market place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 미래지향적 기반조성으로 사이버도매시장, 수산물 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합한 21세기 e-비즈니스 환경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함
- EDI표준 제정, 거래시스템(경매, 역경매 등), 결제 및 리콜시스템 등 개발이 필요
- 비생산요소의 단일 거래보다 생산요소거래를 동반하는 것이 효율적
 - 식품거래와 생산에 필요한 어선·어선기자재·어망·선용품 등 어업기자재 분야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
- B2C 결합으로 이용률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바다를 주제로 한 테마사이트로 구축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효율적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및 유통비용 절감
- 산지수협(생산자) 수익효과 산출
- 시장외거래 및 도매시장 비거래 수산물의 거래효율화
- 종합적, 체계적 B2B구축으로 유통정보 활용가치 향상 및 업무처리 생산성 향상
- 전자상거래와 수산업관련정보를 연계한 소비에 대한 선택권 확대
- 원료구매, 대량구매, 어업용 기자재 등 생산자 지원 강화 및 편의성 확보

제4절 시장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개편

가. 사업내용

-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수매사업 점진적 축소 및 민간 이전
- 수매물량 결정 및 방출방식의 전환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수매비축사업의 운영효율화로 생산자 가격지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 수매대상제의 및 품목 축소에 대비 소득보전 및 물가안정을 위한 안전판 마련

(2) 추진방향

-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사업운영방식 개편
- 직접적인 시장개입방식을 간접적 수급조절 정책으로 전환

(3) 추진계획

- 정부수매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사업운영방식을 효율화함으로써, 정부비축사업의 적자규모 감축
 - 정부수매 대상품목 축소 계획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 8개 품목 764억원 - 김, 미역, 냉동오징어 - 냉동조기, 냉동갈치 -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 마른오징어	· 5개 품목 650억원 - 김, 냉동오징어 -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 마른오징어	· 4개 품목 300억원 - 김, 냉동오징어 -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 WTO 수산보조금 협상결과 및 시장상황에 따라 대상품목 변경가능

- 유통·가공 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 생산자단체의 출하조절 자금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에 대한 보조방안 강구
- 정부비축사업과 민간 가격안정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증진 방안 강구
- 평가결과에 따라 2007년도 이후 비축사업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2. 수산물 유통협약 및 명령제의 도입

가. 사업내용

- 기존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재설정
 - 출하조절사업, 자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
 - 생산어업인 스스로 불법양식업 근절 노력 등 자율관리형 양식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유통협약제 조기 도입(「농안법」 제7조)
 - 비축사업의 효과가 낮은 김에 대한 유통협약제 시범사업 실시
 - 유통협약제의 확대 및 유통명령제 도입 검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새로운 개념의 유통정책 도입으로 수산물의 수급균형 유지 및 가격안정 도모

(2) 추진계획

-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연구용역(2001.12~2002.12)
- 유통협약제 시행 세부계획 확정(2003.6)
- 유통협약제 시범실시(2003.8)
- 유통협약제 확대(2005년 이후)

3.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가. 사업내용

- 수산업관측제도의 대상품목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어선어업에 비해 생산량의 불확실성이 적고 계획생산이 가능한 양식수산물 (김, 미역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사업성과에 따라 타 양식품목으로 확대(굴, 넙치, 피조개, 조피볼락 등)
- 주요 관측내용
 - 생산정보 : 해·어황정보, 품목별·지역별·규격별 생산량, 양식면적 및 시설량, 종묘 및 사료수급량, 성장상태, 생산전망, 외국의 생산전망
 - 유통정보 : 산지별출하, 양육량과 가격, 지역별 도소매가격, 품목별 재고동향, 품목별 수출입량, 가격전망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정확하고 신속한 수산물 생산·시장정보 제공

(2) 추진방향

-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범위 확대

(3) 추진계획

-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03년 상반기
- 시범사업 실시 : 2003년 ~ 2004년
- 시범사업 범위 확대 : 2005년

제5절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확대 방안

1.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

가. 사업의 필요성

- 시장구조가 어업생산에 의해 규정되던 단계에서 전체식품의 수급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단계로 이행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이로 인해 수급체계 내에서 과거 생산에 의해 지배되던 소비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이 산업간·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수산업은 어업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기반의 상실로 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은 여전히 어업기반의 유지·진흥에 중점을 두어 실시. 그러나 생산이 증가하여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상 생산 중심의 수산업 진흥 정책은 실효성이 저하
- 수산물 소비는 금후 수산업의 생산·공급구조와 직결되어 산업의 기반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수산물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생산자의 수익 증대는 물론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소비형태를 설정하고 방향을 유도

(2) 주요사업내용

- 수산물 소비의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미래상을 다양한 기준별로 전망
 - 어종별·품목별·연령별·식사형태별 등 섭취와 관련된 선호는 물론, 제품 선택 또는 구매에 관련된 선호도 포괄적으로 고려
- 수산물이 식품소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변하므로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
- 조사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피드백 체계를 구축

다. 사업추진계획

- 수산물의 소비를 결정짓는 요인 분석을 통해 각 요인과 수산물 소비간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증장기적으로 전망
 - 주요 영향요인을 밝히고 어종별, 품목별 소비를 예측하기 위한 수요분석 및 전망에 대한 연구를 실시
- 수산물 소비의 패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정기적 실시
 - 어류·패류·해조류의 중분류는 물론 어종별 선호 변화에 덧붙여, 연령별·성별·소비장소별·조리법 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
- 조사된 내용을 정부는 물론 생산자(어민,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수산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소비자의 선호 및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소비층의 변화를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존속·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

2.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 소비는 양과 금액상으로 보면 198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 중반 이후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면서 전체식품의 소비 변화와 맞물려 양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선호가 다양화
-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가 확산되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관심 고조
 - 비브리오, 패독 등 건강을 위협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
 - 또한 연근해 어장의 오염으로 인해 수산물 내에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심각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등의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납꽃게, 병어 등 불량 수입수산물 사건도 빈번히 보도되는 등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여 소비와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

- 반면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도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매스미디어 등에 의해 고조되어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
- 수산물 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므로,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불식시키고 잠재적인 소비층을 육성하고 일정한 수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잠재적 수요층 육성
- 소비자선호를 반영한 요리법 및 제품 개발
- 위해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추진방향

- 수산식품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 해역별·지역별로 특화된 우수 수산물의 개발 및 보급
- 생선회 소비 정착을 위한 시설지원 및 홍보 강화

(3) 추진계획

- 연근해 및 양식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 건강식품으로서의 효능 등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 작성·배포
- 공중파·케이블 TV(농수산TV, Food채널)의 요리·시식프로그램 등의 적극 활용으로 수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지도 제고 유도
-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어촌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 수산물 전문식단, 출하시기별 수산물 특성을 고려한 요리, 식단 개발·지원, 단체급식 식단에 수산물 요리 확대 추진

- 해역별·지역별로 특화된 우수 수산물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산물 축제 등 행사 개최

3. 생선회 유통 활성화

가. 사업내용

- 경제성 있는 생선회 생산·유통체제 구축 및 생선회 문화 정착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생선회의 유통활성화를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 증대
- 싼 가격과 간편하고 안전한 생선회 문화 정착

(2) 추진계획

- 선어회 가공공장 육성
 - 선어회유통 기반은 안전 및 신뢰성 있는 선어회 공급에 있으므로, 주요 양식단지 및 소비지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권역별 생선회 가공공장을 중점 육성
 - HACCP 인증, 가공기계의 효율성과 공장시스템의 설계, 원료수급, 배송체계의 구축이 필요
- 선어회 마케팅 체계의 구축
 - 위험분산적 마케팅 채널의 구축, 소매점과의 협력체계 구축, 소비자의 needs 파악, 제품계획(제품컨셉), 리콜제도의 활용이 필요
- 선어회 홍보체제의 구축
 - 일반소비자들에게 선어회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인식전환을 위한 증빙자료의 마련, 정규방송이나 비정규방송의 활용(상업광고 아님), POP(점내광고)의 활용,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 대상의 메뉴개발 등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제6절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1.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가. 사업내용

□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

-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우수 수산물 광고 등 홍보활동 강화로 수출확대 도모
- 수출 주력품목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 부가가치 제고로 수출 증대
- 서울국제수산박람회 개최로 수출시장 활성화 도모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확충으로 수출기반 조성

□ WTO/DDA 협상대응력 강화

- WTO 도하개발 아젠다 관련 협상대책단을 운영, 연구용역수행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단계별 최적의 협상전략을 마련
- 제네바 WTO 본부에서 진행되는 현지협상에 적극 참여
- 주요 협상동향을 어업인에 수시 전달하여 협상결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WTO DDA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산업피해 최소화
- 수산물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WTO/DDA 수산분야 협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

-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 및 교섭으로 협상결과에 따른 충격 최소화
- DDA 협상을 수산업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촉진, 마케팅 활동강화로 업체 경쟁력 제고

- 시장별 선호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운용
- 원료 구매자금 확대 및 적기지원 등 금융정책의 융통성 제고

(3) 추진계획

□ DDA 협상대응력 제고

- 협상전략 수립 및 검토체계 보완을 위하여 “DDA 협상대책단(단장 : 차관)” 운영('03~'04) , 수산반 등 50여명으로 구성
- 10명의 전문가로 구성, 세부 협상전략을 자문하는 DDA 협상자문회의 운영 ('03~'04)
- WTO 규범, 환경, 시장접근 등 분야 회의에 적극 참여('03년중 15회 이상예상)
- 의견수렴 및 대어업인 홍보를 위하여 협상경과에 따라 지방설명회, 연찬회, 세미나 등을 수시실시하고 필요시 홍보책자 발간

□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시장개척 추진

-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 2001년 4회 참가 → 2007년 25회 참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2001년 2회 파견 → 2007년 6회 파견
- 주요 해외시장별 수출수산물 특판전 전개
 - 2004년부터 년 2회 실시하여 2007년에는 10회 실시

□ 우수 수산물 광고 등 홍보활동 강화

-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 해외광고 확대
 - 2001년 : 국내 국제공항 입국장 플렉스 광고 4개소 및 일본 TV CF 광고 실시
 - 2007년 : 광고장소와 방법을 국내 국제여행객센터미날과 외국 주요국제공항, 외국버스 외부광고, 멀티비전 광고 등 다양화
- 수출수산물 가치를 제고하는 포장디자인 확대 개발
 - 2001년 : 20품목 → 2007년 : 50품목

- 우리 수출수산물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제작 배부 확대
 - 2001년 : 2,000 → 2007년 : 10,000부
- 수출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 부가가치 증대
 - 관상어 해외품평회 참가 확대
 - 2001년 : 미국 4회 → 2007년 : 미국 6회, 유럽 4회
 - 현지적응화 상품개발지원
 - 2004년부터 매년 10개품목씩 지원확대하여 2007년 40개품목 지원
- 서울국제수산박람회 개최로 수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
 - 명칭 : 서울수산박람회(Seoul Seafood Exposition)
 - 추진방법 : 2004년 1회 개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행사기간 : 매년 5월말 ~ 6월초중 5일간(잠정)
 - 전시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 수산물 수출물류센타 확충
 - 1단계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04~2007
 - 사업비(추정) : 764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위 치 : 부산 감천항 동편 수산물 부두건설 공유수면
 - 규 모 : 43,950m²(약 13,920평), 건축 연면적 59,510m²(약 18,000평)
 - 2단계 : 생산거점별 수산물 수출물류센타 조성
 - 사업기간 : 2005~2007
 - 사업비(추정) : 50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위 치 : 제주, 전남, 경남, 경북, 전북(잠정)
 - 규 모 : 5,000m² × 5개소
 - 기 능 : 수출용 양식수산물 집하, 포장 및 가공처리 수출

2. 수산물 관세인해 대응체제 구축

가. 사업내용

- 조정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

- 관세율할당(TRQ)제도 도입 검토
 - ※ 수입자유화와 고율의 관세유지를 통한 역내 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TRQ 제도를 운용

나. 추진목표와 계획

(1) 추진목표

- 일률적이고 단순한 현재의 관세제도를 보완하여 WTO/DDA체제에 대응

(2) 추진계획

- WTO/DDA 협상결과에 따른 단계적 점진적 관세인하로 인한 어업인 피해 최소화
 - 수입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중심의 관세 인하 추진
-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지속 유지
 - 수입 및 국내생산추이, 국내피해 여부,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 적정세율 책정
- 관세율할당(TRQ)제도 도입 검토
 - 자원의 부존상태 및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 국내 적정 수요량까지는 저율관세로 교역원활을 도모하고, 적정 수요량 초과 물량은 고율관세를 적용하여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국내 생산 보호
 - 재경부, 외교통상부 등과 협의, 국내 실정에 맞는 관세율 할당제도 도입 추진

다. 기대효과

- 수산물 교역의 자유화로 인한 수입증가로 예상되는 취약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 근본적인 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확보

3.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개선 방안

가. 사업내용

- 수입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 수입수산물 정보 종합화 추진과 수입선의 다변화
 - 국내 반입 수산물에 대한 HACCP 도입

- 탄력적인 관세의 운용
-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와 불법거래의 단절
- 질서 있는 수입을 위한 수입항구의 지정
- 원양어획물의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 원양어획물 수급정보 일반화
 -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Cross-Check 시스템 개발
 - 반가공품 반입촉진을 위한 대책 강구

나. 추진목표와 계획

(1) 추진목표

- 수입수산물의 국내반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와 관리, 위생안전성의 확보를 통해 유통효율 및 사회적 유통비용의 절감
- 원양수산물의 유통투명성을 제고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소비시장에서의 가격합리화

(2) 추진계획

- 수입 및 원양수산물은 실태와 유통효율성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 3단계로 나누어 1차년도는 실태 및 효율성 분석, 2단계는 각론별 구체적 대안의 수립, 3단계는 구체적 대안을 사업화하고, 사후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효율적

다. 기대효과

- 사회적 유통비용 및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
-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경로 파악으로 위생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
- 가격안정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4.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 조성

가. 사업내용

- 수산물종합보세구역 설정을 통한 One-Stop 체계 구축

- 종합보세구역은 과세부과 유보상태에서 수입물품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의 종합적 물류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수산물 반출입이 자유로움
- 수산물유통가공단지 및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조성으로 부가가치 제고
- 국제수산물거래소 설치로 선물거래기반 조성
 - 냉동수산물 및 대량거래 수산물에 대한 선물거래기반 조성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국제수산물교역 시장의 국내조성으로 수산물교역의 우위선점

(2) 추진방향

-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활용하여,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 Hub 시장 조성
- 수산물종합보세구역 및 유통가공단지 조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센터로서의 기능 부여
- 국제수산물 거래소 설치로 선물거래기반 조성

(3) 추진계획

- 부산 감천항 수산물종합가공단지를 국제수산물거래의 거점화
 - 완공목표 : 12개소, 40만톤(총사업비 : 3,106억원)
 - 냉동·냉장시설 6개소(21만톤) 완공(2001)
 - 냉동·냉장시설 6개소(19만톤) 조성추진
- 부산 감천항 수산물종합유통가공단지 건설(1995~2004)
- 부산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1998~2004)
- 국제 수산물거래소 설치 추진(2005)
 - 「부산 국제수산물 거래소」 설치를 통한 국제 수산물 상거래 중심지로 육성
 - 위치/운영방법 : 부산 감천항/현물·선물거래 등

제7절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1. 사업내용

- 유통기반시설 지원 및 반입체제 개선
- 민간주도형 수산협력사업 추진·확대
- 수산자원 및 어업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및 시험조업
- 북한 수산인프라의 강화와 종합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조직체제 정비

2. 추진목표와 방향

가. 추진목표

- 남북한 공동어로사업 수행
- 북한 수산인프라 확충
- 수산물 교류(반입·반출) 사업 실시
 - 북한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국내수산업 현안과제의 부분적 해결

나. 추진방향

- 북한의 경제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의 우선 추진
-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순응하는 수산협력사업의 우선 확대
 - 중국을 통한 간접 수산물 반입 또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반입, 수산인프라 구축 등
- 중국 등 제3국을 활용, 다자적 수산협력사업을 추진
- 제도적 인프라의 점진적 구축

다. 추진계획

- 북한내 수산물 유통시설인프라 구축 지원(단기)
 - 활어 및 선어의 반입 촉진, 반입수산물의 현지 품질확인을 위한 간이집하시설 설립·운영 등

- 북한어선의 남한측 산지도매시장 직출하 체제 도입(단기)
- 북한의 어획능력 증대 및 어획활동 능률화 지원(단기)
 - 국내 감척어선의 북한 제공 등
- 남북한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민간주체의 수산자원 및 어업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및 시험조업 실시(중장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내 전문연구부서 신설(장기)
 - 북한 수산업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관리·정보제공 및 통일대비 연구의 체계적 수행 등

V.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제1절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1.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가. 사업의 필요성

- 최근의 보조금 논의동향에 의하면 수산보조금이 무역 및 시장왜곡, 자원감소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가 주장되고 있음
 - 향후 WTO의 논의대로 보조금이 감축된다면 국내 수산업은 산업의 유지와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므로 현행보조금체제의 전면적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
 - 이러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할 때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원 및 환경 보존 등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
 -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과 환경보전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는 허용보조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자원보존 등에 관련된 보조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작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직접지불제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사항 중 공통적으로 시장주의에 부합하는 허용가능한 보조금 제도로서, 수산부문에 직접지불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인지 그 논리적 필요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직접지불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향후 수산보조금의 대안으로 추진하게될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수산보조금의 대안으로써 수산분야 직접지불제의 도입타당성 검토와 도입유형의 분류 및 우선순위 도출

(2) 주요사업내용

- WTO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및 전망
-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타당성 검토
- 도입가능 직접지불제 유형 분류
- 도입가능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 검토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WTO DDA 도하아젠다 출범에 따른 국내수산업에 대한 보조금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및 시범사업 시행

(2) 추진방향

-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직접지불제,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재해보상지원 직접지불제 등에 대한 실시방안을 연구·검토
 - 기반조성에 대한 시범실시 등 WTO 수산보조금에 대한 협상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 ※ EU의 경우, 수산부문의 소득보전, 재해보상, 벽지지원, 실업지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상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있음

라. 사업추진계획

- 단계적 도입분야 설계 및 시범사업 시행(2003~2007)
 - 단계별 시범실시 계획 설계(지원대상, 규모, 조건 등) 및 제도 법제화
 - 연구소요예산 : 총 16억6천만원('03년 6천만, 원'04년 4억원, '05년 4억원, '06년 4억원, '07년 4억원)

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및 환경친화적 어업을 실현하고, 보조금 감축 등에 따른 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한 국내어업인의 경쟁력 제고

- 제도도입의 용이성, 어업인 수용성, 생산의 지속성 효과, 모니터링의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최우선순위로 실시될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중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방안 연구를 2003년에 시작하고, 이후 2004년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나머지 4개 유형에 대한 직접지불제 실시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를 통해 연차적으로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

2.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가.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수산정책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증산위주의 정책으로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료 등 폐기물이 어장바닥에 침전·누적되면서 부패되어 양식어의 사육환경을 악화
- 특히 어류양식의 대부분의 형태라 할 수 있는 해상가두리양식 및 육상수조식양식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90%이상이 생사료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수산부문에서도 환경이라는 바다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양식어업의 환경친화형 직접지불제 시범실시방안 마련을 통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의 구현

(2) 주요사업내용

- 정책검토 및 기본방향(관련정책, 외국사례, 기본개념 및 방향)
- 지원기준 및 수준(지원기준, 단가, 수준, 조건 등)
- 시범실시 대상지역 및 대상자선정
- 집행 및 관리체계(체계, 집행주체, 역할분담, 모니터링 등)

- 재원조달 및 파급효과
- 시범실시방안

다. 사업추진계획

- 어장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를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경영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은 물론 양식어업인의 어가소득을 유지하고 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이를 위하여 2003년 친환경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2004년 시범지역에 대한 친환경 양식어업 직접지불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부터 전면적 적용을 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환경오염을 감소를 유도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두리 양식어업의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결과 성공적일 경우 전 양식어업으로의 확대 실시 유도, 이를 통한 바다환경의 보전과 지속적어업의 터전을 확보
- 시범실시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용, 2004년 시범지역에 대한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

제2절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1.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

가.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수산정책자금의 상당부분은 WTO DDA 및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금지보조금인 무역왜곡(가격지지, 생산비용 절감, 소득보조 등) 및 자원고갈(어획노력 증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규제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어업인들에게 가장 지원효과가 큰 영어자금이 국제규제에 의해 중단될 경우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국내 영세어업자의 경영압박으로 대량 도산사태 우려
-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수산정책자금은 각기 기준이 달라 보조금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음
- 수산정책자금중 상당수는 농업부문과 혼재되어 있어 수산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하고, 수산업 특성상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이 곤란함
- 경영단위당 수산정책자금 소요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이 확보되어도 지원받을 수 없고, 금리가 6단계로 복잡하고 일부 지원조건의 달라 사업대상자 선정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정책사업대상자를 행정기관에서 선정함으로써 신용 및 담보상태, 경영능력 등이 부족한 대출자에게 대출시 부실이 우려되고, 정책자금 대출의 다중 채무채권 관계설정으로 채무자인 어업인이 부실시 수협도 부실하게 됨
- 수산업은 리스크가 큰 산업으로서 자금 차입처의 다양화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별사업(운전성자금지원사업, 시설성자금지원사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정책금융상호(영어자금, 시설자금)간은 물론 상호금융 등 일반금융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경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음

나. 사업내용

- 수산부문의 독자적 정책수행과 효율적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하여 수산정책자금의 공급제도를 개선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규모 및 범위 확대와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신보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손실보전제도를 보완
- 각종 수산부문의 정책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최소화하고,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의 공급체계 구축
- 자금지원방식을 개별금융 지원방식에서 종합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산업종합자금제도 도입을 검토
- 수산금융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수산금융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수산정책자금 지원체제 개편의 기본목표는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방안 및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수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WTO 수산보조금 규제에 대한 충격의 최소화 및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통폐합
 - 세분화된 수산정책사업(약 90여 개)을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여 단순화
 - 현행 국내 수산정책사업을 사업별·재원별·시행주체별·금지 가능성별·직불제 전환 가능성별로 재분류
 -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 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고, 부정적 보조금 사업은 직불제로 전환 또는 폐지 및 축소 방안 강구 등 사전에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준비
- 정책자금의 지원체제 개선
 - 영어자금제도는 국내 금리가 선진국 금리수준으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할

- 수 있는 국제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 규모 확대 및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신보의 기금규모, 역할 및 어업 담보물건 대상 확대
 -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대손보전 제도보완을 위해 농신보를 확충하여 통합하는 방안과 대손보전기금을 법정화하고, 기금은 정부와 대출기관이 적절하게 분담하여 출연하는 방안 검토
- 수산발전기금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수산발전기금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기금의 적정규모 산출 및 효율적 운영체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기금 확보를 위해 농안기금중 수산부문자금, 영어자금, 해외자원생산자금, 기타 융자성 운영자금 등 융자성 정책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FTA 이행특별법등 제정시 FTA 체결로 발생한 관세감면액을 출연하는 방안과 어업인지원특별법 제23조 2항에 따라 차관 및 채권의 발행등을 검토
 - 기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지원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사업의 자체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환류 시스템 등을 구축
- 종합자금제도 도입
 - 종합자금제도는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전국실시 등 3단계로 나누어 도입 추진함
 - 추진체계 구축단계에서는 적격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대출심사 모델 개발, 어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보급 및 수산금융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시범실시단계에서는 특정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문제점을 점검·보완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민간 수산금융제도 활성화
 - 수산기업 및 어가에 대한 수산금융 기능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수협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여 상업금융(Commercial Banking)을 활성화
 - 민간수산금융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수협 이외 일반은행 및 금융기관 등의 수산어촌 지역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어가·어촌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노인복지 연기금, 금융보험상품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회사의 진입을 권장

- 수산금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어업인들의 금융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관련 각종 금융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편의지원기구를 운영

라. 기대효과

- 수산정책자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고,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심의·확보 및 집행이 가능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수산자금의 수급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있는 수산업 발전 기대

2. 영어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가. 사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어가는 어업소득의 70%에 가까운 자금을 영어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소득규모가 2001년 2천225만원이고 어업소득은 1천 108만원임. 그중 어업경영과 관련하여 운전성으로 지원되는 영어자금의 평균 규모는 7백만원(연안어업 건당평균 지원규모) 수준임
 - WTO/DDA 협상 방향에 따라 정책자금의 운용 방식의 변화가 어업인 경영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수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자금인 영어자금의 연체율은 2002년 12월말 현재 8.28%에 이르고 있음
 - 2002년말 현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2.33%에 불과
- 그동안 영어자금 소요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미대출률은 50%를 넘어서서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더구나 영어자금 지원정책의 핵심은 정부자금으로 이차를 보전하여 직접적으로 어업경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WTO/DDA 협상 결과에 따라 금리보조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경우에 영어자금 지원체계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임

나. 사업의 내용

-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확보
- 직접지불제등을 통한 소득보전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업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WTO/DDA 개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구축

(2) 추진방향

-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체계의 구축
 - 저리의 (이차)보조금형 영어자금에서 용자형 영어자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
 - 최소한 미배정률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어업인의 신용도에 따라 용자 집행
 - 기존의 농신보 자체의 신용조사 및 심사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고, 별도의 신용보증 기구의 설립도 검토
- 만성적 수요초과에 대응하기 위한 영어자금 지원체제의 확보
 - 부족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
 - 시중은행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등 민간수산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 경영자금의 원활한 지원 체계를 구축
- 직접지불제등을 통한 소득보전
 - 생계형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자금의 성격상, 향후 보조금 철회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 기업형 어가와 구분하여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

3.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및 부채경감 대책

가. 사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어가의 부채는 저리의 정책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가 없어 일반대출 및 사채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비용이 증가

- 부채의 누적 및 증가는 경영뿐만 아니라 어가의 파산과 더불어 어촌사회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부채를 감당할만한 어업경영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없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부채의 누적은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전망
- 어촌의 노령화 추세에서 어업을 하고자 귀어하였거나 아니면 어촌에서 대를 이어 어업을 하고 있는 젊은층들의 부채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
- 어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은 취급금융기관인 수협이 부실로 연결되고, 수협의 부실은 다시 어업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악순환 반복
- 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어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약을 받음

나. 사업내용

- 어가의 부채부담을 줄이거나 최소화시켜 금융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어업경영을 개선
- 어가에 대출하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손보전을 위한 장치를 확고히 하여 금융기관이 어업인들에게 실효성있게 자금을 공급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만성적으로 누적된 어가의 부채를 특단의 조치에 의해 경감시켜줌으로써 어업경영의 개선 및 어촌사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대손보전제도의 개선을 통한 수산금융 취급기관인 수협의 체질을 강화하여 원활한 수산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함

(2) 추진방향

- 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 어가의 부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서 어업인 지원자금의 금리를 연차별로 1%씩 인하하여 1.5%까지 인하하되 최종연도는 잔여금리만 인하
- 비어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 원양어업자,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지원 정책자금 금리도 연차별로 1%씩

3%까지 인하하되, 최종연도는 잔여금리만 인하

- 부채대책 지원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부채를 대체한 자금이므로 1.5%까지 연차별로 금리 인하
 - 수산경영개선 자금은 현행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에서 4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
- 대손보전기금의 법정화 및 기금 확대
 - 미법정 대손보전기금을 법정화하여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출연 등을 통하여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신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신보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 농업보다 불확실성이 큰 수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의 확대와 더불어 수산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손보전 기금의 비율을 확대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가. 사업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추진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현행 어업용 석유류 면세체계 유지
- 어업인 경영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세제개편 추진

(2) 추진방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향후 WTO/DDA의 협상결과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 및 사후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접환급방식으로 전환

(3) 추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 추진

- 세제감면 기한 완료대상 수산세제의 감면 연장추진
 - 2003년도 세제지원 완료 대상인 어업용기자재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세제감면 연장
 - 석유류에 대하여 100% 면세조치를 유지하고 조세감면 일몰제에 따른 감면시한도 2007년으로 연장
- 가공되지 않은 1차 상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세 면세는 최종소비자의 혜택이므로 어업인에 대한 보조가 아님
- 교통세,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면제 추진
-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면세유류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경우 선과제 후환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환급되는 관세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간접 환급방식을 검토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

- 어업용 기자재의 보조금 감축 협상시 3단계 대응
 - 1단계 : 영세어민에 대한 지원을 수산보조금 협정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협상
 - 2단계 : 영세율 적용 불가피시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안 강구
 - 3단계 : 친환경적 기자재로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허용보조금 대상으로 전환
- 국내적으로는 우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품목을 현재 8개 품목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 선박용도료, 축전지, 구명벌, 구명동의, 기상팩시밀리 등 5개 품목

□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연근해어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원양어선원, 광산근로자, 항공기승무원 등과 같이 월급여 15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조중 근로소득세 비과세 관련내용 개정 추진
- 수협조합원의 사업이용고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 5의 배당금소득 비과세 관련내용 개정

□ 사업추진체계

- 민간(어업인·수산업체·수협 등) : 세제개선 필요성 여론조성 및 관계기관 건의
- 해양수산부 : 세제개선과제 종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건의·협의를 추진
- 재정경제부/국회 :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기대효과

- 어업인 등에 연간 약 7,000여억원의 조세감면 혜택 기대
 - ※ 어업용 석유류 면세혜택 : 6,807억원('03기준)
- WTO/DDA협상에 대비한 조세부문 협상력 확보 및 협상결과 면세유 공급 등 정부보조 감축에 따른 어업인 부담 일부 상쇄
 - 연근해어업의 경영여건 개선, 어업인 소득기반 확충, 국내 수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수출 확대 등에 기여

제3절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1.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정책보험화 추진

가. 사업내용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으로 재해보상시스템 구축
 - 수협이 선원 및 어선공제를 법률에 의한 정책보험으로 전환
- 효율적인 보험운영으로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연근해 어선원과 어선선체를 단일법에 의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보험운영으로 어업인 복지증진 및 어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2) 추진방향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어선원 및 어선공제의 정책보험 전환
 - 현행 수협의 선원 및 어선공제를 법률에 의한 정책보험으로 전환
- 사업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어 수산재해보험 장·단기계획수립, 소요예산 확보 등을 행하고, 보험업무는 수협에 위탁하여 시행
- 보험가입의무자인 어선소유자는 보험가입과 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하고, 어선의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받음

(3) 추진계획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어업인 복지실현을 위한 어업재해보상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어선원·어선을 단일법에 의한 보상보험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어선원보험 일원화로 보험운영의 효율화 도모
 - 산재보험 가입자(25톤미만)와 수협 선원공제 가입자(25톤이상)의 일원화로 보험운영의 혼선방지 및 합리화 도모

□ 일정률 초과손해, 대형재난 등에 대한 정부 지급책임 및 국고보조 제도화

- 국고보조와 함께 보험 가입자인 선주의 적극 참여 유도로 정책보험 선진화 도모

(4) 기대효과

- 어업재해보상제도의 확립 및 안정적인 어업기반 구축으로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가. 사업내용

- 양식보험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품종, 대상재해, 대상어가 및 국고보조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 재해보험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 대상어업인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어업재해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양식수산물 보험도입 연구용역」을 실시 관련법을 제정하여 보험도입이 용이한 품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양식보험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품종, 대상재해, 대상어가 및 국고보조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보험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 대상어업인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어업재해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양식업 재해 피해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현행 재해관련법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위험관리체제 확립

(2) 추진계획

- 사업주체 : 해양수산부 장관
 - 수산재해보험 장·단기계획수립, 소요예산 확보 등을 행하고, 동 사업은 수협이나 민간보험사 등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약정 체결을 통하여 선정된 자가 수행

-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연구 추진 : ~2003년
 - 양식 방법별 보험대상 품목의 검토
 - 가입방법 및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
 - 보험실시 지역과 보험운영기관
 - 보험금 지급기준과 기준 생산량
 - 손해 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
 - 국고보조 및 재보험 등의 사항을 검토
- 관련법 제정 : 2003년 ~ 2004년
 - 도상연습 및 법안마련으로 기초문제점 해결 및 여건을 마련
-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

(3) 기대효과

- 양식업을 법률에 근거한 국가주도의 보험도입으로 어업재해보상제도의 확립

제4절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1.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

가. 사업내용

- 자금지원과 수협법 개정 등 구조개선 제도화를 병행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중앙회 경제사업부문과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어업인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수행
- 수협 경영의 건실화로 어업인의 복지 및 어촌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수협법」 개정, 경영진단,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조기경영 정상화
-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

(3) 추진계획

- 「수협법」 개정(2003년 상반기)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 원칙적으로 상임이사제를 일원화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
 - 조합감사위원회, 기금관리 위원회의 지원·감독기능 강화
- 일선수협 경영진단 실시(2002. 11 ~ 2003. 4)
 - 조합별 구조조정 방안 마련
 - 부실(우려)조합 지정 및 적기시정조치 제도화
-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MOU 체결(2003년 하반기)
 -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추진
 - 추가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경영개선자금 확대 지원

(4) 기대효과

- 모든 회원조합이 2008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완료, 정상적인 상호금융·경제·지도사업 수행

2. 수협중앙회의 경영효율화

가. 사업내용

- 경제사업부문에 대해 정부 지원
- 유가 등락 및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비하여 대형저장시설의 설치 지원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법제화를 통해 공신력의 증대 및 기금기능을 확보
- 수협법의 개정 추진
- 해역별 회원조합지원본부의 설치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신용부문이 분리된 상태에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경제부문에 대한 지원 및 수협 기능의 조기 정상화

(2) 추진계획

- 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잠식된 경제사업부문의 자본적립금(943억원)을 정부가 5년간 분할지원하고, 수협중앙회 자체 자구노력을 실시하여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추진
- 불안정한 국제원유가 및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고 어업인들에게 저가의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 유류저장시설의 설치를 지원
 - 3년간 2개지역 40만 드럼 규모
 - 소요자금 : 317억원 (추정)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법제화를 통해 공신력의 증대 및 기금기능을 확보
- 『수협법』의 개정을 통한 경영체제 개선
 - 현행 수협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 현상을 치유하여 협동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어업인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해역별 회원조합 지원본부의 설치
 - 공적자금 투입 및 강화된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훼손된 협동이념 실천을 위한 중앙회와 조합의 연계역할의 강화 및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역역량을 강화

(3) 기대효과

- 조기 경영개선을 통한 수협 본연의 기능 효율화
- 안정적인 유류공급 및 가격인하 효과 발생

VI.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제1절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1. 수산통계의 기반 확충

가. 사업내용

- 수산기초통계 확립을 위한 어업생산통계 개선 및 새로운 통계 개발

나. 추진방향

- 수산기초통계 확립을 위한 “어업인” 등의 개념 재정립
-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을 통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확립
- 통계조사기획, 집계·처리, 결과공표 및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
- 유통명령제, 양식관측제 등의 실시를 위해서는 정확한 양식통계 확립이 전제

다. 추진계획

- 정확하고 신속한 어업생산통계 확보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신뢰성 구축
 - 수산기술관리소별로 전문통계직 배치 및 어촌지도직 협력으로 정확한 통계 확보
- 변화에 맞는 표본통계 및 전수 통계방법 개선
- 통계전문인력 확충과 기능 및 조직 확대
 - 본부 1계 신설 및 수산기술 관리소 통계직 확충
- 수산통계 개선에 관한 용역결과에 따라 통계제도의 개선방안 도입
- 통계청 「농어가경제통계」 조사지침서 개편
 - 조사대상 표본어가 1,360호중 3/1을 개편

2. 수산·어촌 정보화 확충

가. 사업내용

- 수산업을 정보화와 연계하여 현재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등 수산어촌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시책을 수립·시행
- 타 분야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수산어촌정보화 수준의 향상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수산부문의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어촌과 도시의 정보 격차 해소
-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 어업인 정보화 교육
- 전담조직에 의한 수산어촌정보사업 추진

(3) 추진계획

- 단기적으로 ‘수산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 수산정보의 대부분이 공익정보로서 수익을 추구할 수 없거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정부출연 형태의 공공기관”으로 설립.
 - 수산정보의 전문 전담조직은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되고 있는 수산정보에 대한 조정 역할
- 중장기적으로 수산종합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추진
 - 수요자 맞춤형의 신규 수산어촌정보화사업 단계별 추진

3.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시스템의 구축

가.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수산업의 개념은 생산, 가공, 유통, 저장, 금융 및 서비스 기능을 망라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산업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입각하여 구조변화와 관련산업 및 기타산업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서 수산업의 위치를 산업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성과 타산업과의 투입-산출이라는 생산과정에서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상기의 분석을 수산부문의 경쟁국인 동시에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 수산부문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책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국민경제에서 수산업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 수산업의 발전가능성 검토 및 발전방향 모색

(2) 주요사업내용

- 수산분야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 최종수요 및 수입유발 효과
- 전방 및 후방연관 효과
-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 투입구조, 수요구조, 고용구조 등

다. 사업추진계획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산업연관표의 작성현황이 유사하여 수산업의 투입구조와 산업연관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용이
 - 한·일수산분야 산업연관 및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산부문에서 선진국인 일본의 수산업에 대한 구조변화 및 산업연관 구조의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수산업의 산업연과분석을 통해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역할을 규명함과 동시에 수산업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 한일간에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투입구조 및 관련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수산정책의 방향설정에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

4.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가. 사업의 필요성

- 수산물시장의 개방과 세계화로 이를 공급하는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 생산자 중심의 수산업 경영과 수산정책의 추진에서 소비자와 수요측면을 중시하는 수산정책을 수립할 필요
- 수산물 무역역조등 수급불균형 심화 예상으로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요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시급

나. 사업수행 방향

(1) 기본목표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 요인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2) 주요사업내용

- 산업경쟁력 결정요인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
 - 시장원리와 산업경쟁력의 의의
 - 수산부문의 산업경쟁력 결정요인
 - 수산업에 있어서 산업정책 수단
- 국내시장의 조건, 즉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산업정책의 개발
 - 소비자 보호제도 및 안전성 관리체계의 개선
- 산지 및 소비지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마련
 - 시장정보의 공개 확대
 - 공정거래제도의 적극적 도입 검토
- 어업생산의 진입·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 자율관리어업과 연계하여 면허·허가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 일관성있는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질서의 선진화
- 보조금 중심의 재정정책보다는 정책자금의 수요·공급자 모두가 그 기회비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 정책수단의 전환
 - 산업경쟁력을 견인하는 금융정책 수단 필요

다.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생산자의 기업마인드 제고로 산업경쟁력 향상
- 보조금등 재정부담의 완화와 효율적 정책 운영
- 수산통계와 지표를 시장경제에 부합하게 현실화하는 유인으로 작용

제2절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

1. 첨단수산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가. 사업내용

-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보급
-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
-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첨단 수산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WTO 출범 및 EEZ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고갈 등 급변하는 대내외 어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수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형 신산업으로 재편

(2) 추진방향

- 첨단양식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어장생산성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우량양식품종 개발 및 신물질 개발
- 생력화된 어구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비용 절감
- 어종별 최적 소형어류 탈출장치 개발 및 보급으로 치어의 생존률 제고
- 어장환경 보전을 통한 수산식량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

(3) 추진계획

-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 외해양식 기술개발

- 전복침하식 양식기술개발 : 2003년까지
 - 어류양식 가두리 개발(이동성, 내파성) : 2004~2007년
 - 우량 양식품종 중요생산기술 개발
 - 수산중요생산기술개발 : 2002년부터 계속
 - 양식대상종 연구 및 종보존 : 2002년부터 계속
 - 환경친화적 양식 기술 연구·개발
 - 해산양식생물의 육상사육 실용화시스템개발 외 5개 과제 추진
 - 양식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자동먹이공급장치 개발 : 2003~2006년(기초조사, 개발, 현장적용)
 - 양수 및 수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 2003~2007년(기초조사, 시스템개발, 현장적용시험 및 경제성 분석)
 - 양식생물 질병 예방백신 개발(어류질병방역센터) : 2002~2007년
 - 이리도바이러스 불활화 및 재조합백신 개발 및 산업화
 - 양식생물질병 DB구축 및 운영(Fish doctor 119) : 2002~2007년
-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 1단계(2003~2006년) : 기반기술 개발
 - 2단계(2006~2009년) : 응용 기술 개발
 - 3단계 (2010~2012년) : 활용 기술 개발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보급
- 어구 및 조업특성 등을 감안, 수산과학원에서 현장시험을 거쳐 조업경비 절감 가능한 표준어구를 2007년까지 개발
 - 어업별 사용 어구의 내구 년수 및 조업 특성 등을 감안, 현장시험을 거쳐 조업 경비 절감 가능한 생분해성 어구자재를 2007년까지 개발
- 치어탈출장치 어구개발 및 보급
- 탈출장치 연구사업 완료 : 2002년
 - 현장 시험조업 실시 : 2003년

- 수산자원보호령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개정 : 2004년
- 친환경적 어구 개발 및 보급 : 2004년 이후

□ 과학적 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 1단계(2003~2004년)
 - 종합 어장탐색시스템 기반구축
 - 해황변동 순간모니터링 및 예보시스템 기반 구축
 - 연안어장 통합관리시스템 모델개발 및 환경용량 산정
- 2단계(2005~2006년)
 - 종합 어장탐색 시스템 구축
 - 해황변동 순간모니터링 및 예보시스템 구축
 - 오염실태, 환경용량, 적조·냉수대·저염분 등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청정연안 개발 및 특성분석
- 3단계(2007년 이후)
 - 종합어장탐색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
 - 종합해황변동 모니터링과 예보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
 - 연안양식어장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 청정연안 특성에 따른 특화 고품질 수산생물조사
 - 청정연안 생산물 고품질 인증제 도입

2. 최신 수산기술 보급체제 개편

가. 사업내용

- 기존의 수산기술관리소의 기능을 환경변화에 적합한 체제로 정비
- 수산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체제 재정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실용적이고 경쟁력있는 수산기술개발·보급체제 확립
- 기술개발성과 이전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기술개발 투자효율성 제고와 수산 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수산업의 고도화를 실현

(2) 추진방향

- 기존의 수산기술관리소의 기능을 환경변화에 적합한 체제로 정비
 - 수산기술관리소를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물 발굴을 위한 시범어장의 운영 등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로 육성
 - 현재 13개 관리소가 보유중인 기술지도선을 「1관리소 1지도선」 확보를 통하여 현장출동 기능을 강화
 - 최신첨단 시험분석장비의 확보로 새로운 기술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과학적인 수산기술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확립
- 수산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체제 재정비
 - 연구관리체제를 성과관리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엄정한 목표관리체제를 구축
 - 기술이전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및 평가시 기술이전 성과를 반영
 -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과학기술정보 보급의 네트워크를 구축

(3) 추진계획

- 수산기술관리소의 기능 및 체제 개편
 - 2003~2005년 : 수산기술보급사업 장기발전방향 설정 및 수산기술관리 경영분석 (29개 기술보급기관)
 - 2004~2006년 : 수산업 경영혁신 목표관리제 도입
 - 2005~2007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영어조합법인 발굴·육성 및 유망 수산분야 벤처기업 지원
 - 2005~2010년 : 생산, 유통, 가공, 경영, 수출,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연계된 종합적 기술지도 체제로 전환

□ 기술이전체제 재정비

세부과제명	2003	2004	2005	2006
수산기술이전제도 신설	법률안 작성	법률제정		
수산과학기술정보 보급 네트워크 구축		수산분야 네트워크 구축	전문기술이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산종합기술정보체계 구축
기술이전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전담조직 신설		기술거래사,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성과 보상체계 구축	기술이전 컨설팅 체제 구축		기술이전업체 세제지원 실시	

3. 수산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가. 사업내용

- 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
-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 수산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국내외 어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어업인력의 육성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
- 젊고 유능한 어업인력의 어촌유입으로 수산업을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2) 추진방향

- 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
 - 수산계 대학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학부), 대학원(석·박사), 박사후 과정을 연계하는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정비
 -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등 관련 기관 및 행위주체간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
 - 수산계 대학의 특성화 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체제를 강화

- 어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 수산계 고교의 운영체제를 자영수산고와 일반수산고로 이원화하고 자영수산고는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로 전환을 추진
 - 수산계 고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의 확대와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 수산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외적 환경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
- 수산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수산계 학교 졸업자의 어민후계자 선정의 우선권 부여와 동시에 어업경영 기반 지원을 확대
 - 국가 및 지방직 수산공무원, 수협, 수산관련 단체의 직원 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을 특별 채용 확대
 - 합리적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산·학·관 연계를 진작
 - 노령경영이양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수산인력의 신규진입 촉진

(3) 추진계획

- 「수산계학교 및 수산전문인력 육성방안」 연구용역 : 2003년
- 관계법령 개정 및 예산 등 관계부처 협의 : 2003년

제3절 수산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1. 지방수산정책의 강화와 중앙·지방의 역할

가. 사업내용

- 국가고유 업무의 환원과 지방이양 필요업무의 이관
- 지방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국고배분 방안 추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중앙정부 소관 수산정책 중 지역개발 등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수산정책을 합리적으로 지방 이양

(2) 추진방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수산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고유업무는 중앙정부로 환원,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으로 이관

(3) 추진계획

- 국가고유 업무의 환원과 지방이양 필요업무의 이관
 - 수산분야 중앙정부기능 중 어항시설관리사무, 어업생산 관리사무 등 지방정부에 의한 사업집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 여부 검토(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4조, 지자체법 9조 등)
- 지방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국고배분 방안 추진
 - 중앙정부는 시도별 수산여건과 수산세력의 분포, 시도별 지방비중 수산분야 투입에 상응하는 국고 배분방안을 연구검토(2003년) 후 추진(2004년 이후 적용)
 - ※ 전남과 경남이 투입하는 국비와 지방비, 수산조직 및 인력 등은 절대액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 지역의 수산세력을 감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지자체의 수산세력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실적, 수산조직의 충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우수시·도 포상 및 국비지원 규모를 연계

다. 기대효과

-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국고배분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지방화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정책집행체계의 구축

2. 수산관련 조직의 개편

가. 사업내용

- 해양수산부 본부 부서 조직개편
-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 및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증설
- 수출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검사원 조직확충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수산정책수요의 대응과 수산관련 조직의 전문화·세분화 추진

(2) 추진방향

- 정책 추진 및 지원체제 정비, 강화로 수산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산행정 및 연구지원 조직의 전문화 유도

(3)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본부 부서조직 개편

- 통상협력 조직의 강화
 - 국제협력관(3급)을 국제협력국(2급)으로 격상
 - DDA협상 및 FTA 등 수산통상관련업무를 총괄할 통상교섭심의관(3급) 및 통상교섭과 신설
 - 증원 : 9명(2급 1, 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
- 어업교섭지도과의 세분화 및 전문화
 - 어업교섭지도과를 어업교섭과와 어업지도과로 분리, 각 기능을 전담토록 함

※ 일본의 경우, 교섭관(과장급)이 한국 및 중국 어업교섭 업무를 담당

- 어업기술인력과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취급 전문성을 위해 어업인기술인력과와 수산보험과로 분리
- 어촌어항과
 - 어항개발과와 어촌정주과 2과로 분리
- 유통가공과
 - 수산물 유통과와 식품가공안전과의 2과로 분리
- 어업소득통계과 신설
 - 수산분야 통계자료가 취약하여 각종 정책입안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산통계관련 조직 신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수산통계 생산 및 관리
- 수산과학원의 조직개편
 - 총정원 범위내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 수산과학원내 정보관련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연구지원기능을 극대화
 - 본원 연구지원부서 보강을 통한 연구행정업무 총괄조정·운영기능 강화
 - ※ 농진청 연구관리국의 기능 및 사무분장과 유사
 - 수산연구소장의 직급을 수산직 또는 연구직으로 복수화
-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의 증설
 -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지도를 위한 사무소 증설 필요
 -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부산)
 - 현지도선사무소를 ‘어업지도본부(가칭)’로 재편하고, 산하에 서·남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서해어업지도선 사무소 신규 설치
- 수출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조직 확충
 - 새로운 항만건설, 남북교류 활성화 및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지원신설
 - 지원(5급) 신설 : 4개지원(평택, 동해, 부산감천, 파주도라산)

- 수도권 수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지원 일부기능 통합관리
 - 인천지원 기능 강화(지원장 5급→4급, 과장(5급)신설)
- 전문화와 새로운 기준·규격설정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 본원에 조사분석과(4급) 신설

다. 기대효과

-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정책 및 행정 서비스의 적시 지원
 - 정책 실효성 극대화과 민원 해소율 제고
- 전문성과 일관성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3. 수산어촌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가. 사업내용

- 21세기 새로운 수산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나. 추진목표

- 수산시책에 관한 기본이념과 그 실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산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다. 추진방향

- 수산분야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이념 및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산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수산을 구성하고 있는 어업, 자원관리, 양식, 유통·가공 및 국제협력 등 각 부문별 시책 추진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적 성격을 유지

VII.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제1절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1. 어촌종합개발 사업

가. 사업내용

-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방식에 의한 어촌종합개발 방식을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자원의 이용 및 개발을 증대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 생산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변지역의 인구를 어촌으로 유입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
- 예산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어촌지역에서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시설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을 확충
- 어촌을 해양·레저 관광기능을 갖춘 해양마을(maritime village)로 조성
- 어촌주변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촌 정주환경 조성

(2) 추진방향

- 경제위기로 인해 그 동안 실행되지 못했던 계획을 반영하여 완공율을 제고
- 초기의 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거점별 수산SOC를 확보

(3) 추진계획

- 160개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2008년 완료
 - 2003~2008년까지 계획 : 45개 권역에 1,817억 투자
 - ※ 농특세 시한연장 추진
- 2단계 어촌종합개발의 지속 확대 추진
 - 대 상 :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1994~2008)에 미포함된 65개 권역
 - 사업기간 : 2009~2013년
 - 사 업 비 : 권역당 40억원(국비 50%, 지방비 45%, 자담 5%)
 - 대상사업 :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 유통·가공, 관광·복지시설, 생활환경시설 등

다. 기대효과

- 주변인구를 어촌으로 유입하여 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2. 어항시설의 정비·확충 방안

가. 사업내용

-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어항을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어항의 완공율을 높여서 기본생산 인프라를 확립
- 그동안 완공율이 저조했던 지방어항의 완공율 제고하여 어항 완공율의 균형을 제고
- 친수공간 조성, 노후 어항의 리모델링 등 기존 어항의 과감한 보수·정비를 통해서 마라나 기능부여, 어항배후지 숙박·관광, 휴게시설 조성 등 어항, 어장과 어촌을 연계한 바다마을 조성
- 도서벽지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소규모 어촌 정주항을 개발
- 어업활용도가 높은 어항은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정비·확장
- 어업활용도가 낮은 어항은 관광기능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어항으로 정비

나. 추진목표와 방향

- 국가어항 완공율 향상

- 이용자 편의 위주로 정비
- 다기능을 갖춘 어항으로 정비

(2) 추진방향

- 계획된 국가어항의 건설 촉진으로 거점별 수산업 SOC를 구축
- 지방어항의 기본시설 확보에 주력
- 어촌정주어항의 지속적 정비·개발을 추진

(3) 추진계획

- 국가어항 추진계획
 - 기공사중인 어항 21개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모두 준공
 - 신규항만은 종합기능어항으로 개발
- 지방어항 추진계획
 - 조기완공추진
 - 지역별 거점어항으로 발전

다. 기대효과

- 어항의 완공율과 어항의 다기능성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어항수요에 대처

3. 어항의 다목적 활용방안

가. 사업내용

- 현재의 저조한 어항의 완공율을 제고하고 기능시설에 대한 시설설치율을 제고
- 다기능 어항의 조성을 위해 어항부지 및 배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기능별·영역별로 분리하여 상충되는 부분 최소화
- 종합기능어항을 개발하여 21세기 복합적인 수요에 대처
- 어항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비확장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항의 기본시설과 어항부지 내에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생산활동기지, 생활거점, 관광, 교통·물류기지로써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어항개발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항개발
- 국민에게 쾌적한 친수성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친화적 어항으로 개발
- 다목적 기능어항으로 선정된 어항을 중심으로 항별 특성을 갖춘 소규모 어촌어항 도시로서 개발을 유도
- 휴양, 레저,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된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춘 어항을 개발

(2) 추진방향

- 실효성,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어항의 다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존 어항의 정비
- 수산업 중심기능, 생활거점 중심기능, 교통물류 중심기능, 관광중심기능으로 세분하여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개발방향을 사전에 설정하여 개발

(3) 추진계획

- 다목적 어항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고려
 - 신규지정어항 및 이용율이 낮은 어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 기능강화가 시급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대상을 선정
- 어업인들의 어항이용과 상충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한 민자유치 대상범위를 설정

다. 기대효과

- 어항의 다기능을 확보하여 어항수요의 변화에 대처능력 함양

4. 어항·어촌 내 민간자본의 유치

가. 사업내용

-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항배후시설 매각 등 민간자본에 의한 어항시설설치 적극 유도
- 공공자본 투자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시자본의 어촌투자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민자유치를 통한 어촌·어항 개발

(2) 추진방향

- 자본유입 촉진방안 개발
- 유치자본 구분하여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유도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어촌·어항개발에 대한 이익의 주민분배 방안강구
- 어촌의 자연경관, 고유의 전통문화가 보존되도록 민자유치 유도

(3) 추진계획

□ 어항구역 내 민간자본 유치

- 대상분야
 - 지역특산물 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시설
 -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 숙박, 목욕, 오락시설 등 위락시설
- 세부추진 사항
 - 어항배후시설부지 매각
 - 연차별 매각 계획 수립시행
 - 민간자본시설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법령정비
 - 향만시설관리등록령 등 국내 유사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관리청 어항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신설

- 민간자본 시설자금지원 방안검토
 - 대상시설물 및 지원조건 등

□ 기타지역 민간자본 유치

- 대상분야 및 세부 추진사항
 - 어촌지역에 평생교육시설 및 수련·연수시설
 - 도시의 어촌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감면(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 상시 거주하지 않는 어촌주택에 대해 별장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종토세를 중과세하는 제도 폐지
 - 어촌의 관광시설 개발을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로 보아 각종 인센티브 부여(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법에 의거)
 - ※ 어항구역 외의 기타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는 농촌지역과 유사하므로 농림부와 합동으로 추진

다. 기대효과

- 어촌·어항을 정비하여 어항시설의 현대화에 기여

5. 어촌·어항제도 개선

가. 사업내용

- 어촌·어항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촌어항정비제도 마련
- 수산보조금 삭감 등 WTO-DDA 대책과 관련하여 어촌에 대한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항·어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2) 추진방향

- 가칭 『어촌·어항정비법』 제정하여 어촌·어항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
- 어업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어항을 정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3) 추진계획

- 어촌·어항실태 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 : 2003년 상반기
 -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 : 2002.6~12
- 시안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2003년 상반기
 - 「농어촌 정비법」 등 관계법령 개정 병행추진
- 법률안 국회제출 : 2003년 하반기

다. 기대효과

- 어촌·어항을 정비하여 주변의 인구가 유입되어 어촌경제 활성화

6. 정주어항 개발

가. 사업내용

- 어항의 규모 및 어촌의 특성을 조사하고 투자효과가 큰 소규모어항을 선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어항을 개발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소규모 어항의 지정·개발·이용체계의 구축으로 소규모 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 투자효과가 큰 소규모 어항을 선정하여 소규모 어항과 어촌을 통합정비하고 개발

(2) 추진방향

- 소규모 어항의 특성,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소규모 어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항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어촌의 생산기능과 관광기능과 통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을 정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3) 추진계획

- 어항 및 어촌 실태조사

- 공동개발 추진
 - 관리주체인 시군과 협의하여 중요성이 높은 어항을 지정
- 이원화전략
 -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어항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하여 개발

다. 기대효과

- 육지 소규모어항을 정비하여 부족한 어항시설 해소에 기여

7. 어항의 최적 규모 결정 및 현대화방안 연구

가. 사업의 필요성

- 어항의 최적 규모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 상업항의 최적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에 비해서 발전이 늦은 편임
- 어항의 경우는 일반 상업항에 비해서 처리물동량이 적을 뿐만아니라 소수의 어업종사자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임
-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항에도 일반관광객이 출입이 늘어나면서, 일반관광객을 상대로 어획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획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어항 시설물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 어항의 필요 시설물과 어항의 최적 규모 산정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음

나. 사업수행 방향

- 수용하여야 할 어선의 척수 및 규모가 정해진 경우 어항의 최적규모 산정
- 어선규모별 주요 어항의 시설량에 대한 과부족 여부 파악

다. 추진목표와 방향

(1) 기본목표

- 어항에서 필요시설물의 표준규격을 산정하여 자원배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어항의 최적규모 산정하여 자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

- 표준화된 어항의 모습을 스캐치하여 미래의 어항의 미래 발전모습을 외래관
광객에게 소개

(2) 주요 사업내용

- 수용할 어선의 척수 및 규모가 정해진 경우의 어항의 최적 규모를 산정
- 어선규모별 주요 어항의 시설량에 대한 과부족여부 파악하여 어항의 서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라. 추진계획

- 컨테이너 터미널의 최적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조사
 - 항만의 최적 규모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 등
- 외국에서 어항의 최적 규모 산정방법을 조사
 - 외국에서 최적 어항규모 산정에 대한 연구사례 조사

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어항의 규모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어항의 개념 및 어항의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유도

제2절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1. 어촌관광 상품화 방안

가. 사업내용

- 어촌지역의 특유한 축제 및 기타 행사를 중심으로 어촌관광 자원의 발굴
-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 작성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의 소득증대 방안의 수단으로서 상품화가 가능한 어촌관광상품 개발
- 어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촌관광상품 개발

(2) 추진방향

- 어촌관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촌의 미이용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 어촌관광상품의 개발시 어민의 참여방안 마련

(3) 추진계획

- 일반 관광상품과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여 어촌에 특유한 관광상품 개발
- 어촌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위 운영조직 육성
- e-business 등을 활용하여 어촌관광상품 홍보

다. 기대효과

-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어가구의 소득 증대

2.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민속전시관 건립 중심의 어촌관광개발

가. 사업내용

- 도시인의 어업체험과 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어촌관광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건설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장 등
- 도시인들에게 휴식·여가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어촌 관광소득 증대
-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 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관광 자원화
- 어업인들의 생활양식, 어업 및 어선발달사 등을 후학들에게 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친수공간 마련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새로운 관광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구 소득 증대
- 어업외소득증대와 문화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

(2) 추진방향

- 관광객이 유치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어촌관광상품을 개발
-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체험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병행하여 수요를 창출
- 생태계보호와 수산업 생산 등과 같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이 유지되도록 노력

(3) 추진계획

- 어촌체험마을
 - 어촌체험마을은 우선 전국 연안 시·군에 1개마을씩 시범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여건이 양호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하는 등 향후 조성지역이 확산되도록 유도
 - 하드웨어적인 시설개발은 중앙정부가, 체험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로 역할을 분담
 - 2003~2008년 계획 : 52개소, 46,500백만원 투자
- 어촌민속전시관

- 어촌의 문화공간 확보,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어업의 소득증대 도모
- 2003~2006년 계획 : 6개소(계속4, 신규2) 28,000백만원 투자

다. 기대효과

- 어가구 소득증대 및 어촌주민의 자존심 고취

3. 어촌관광산업 어민참여 유도방안

가. 사업내용

- 어업인들의 어촌관광산업 참여율 제고
- 선도어업인을 육성하여 어촌의 경제성장력 제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관광산업에 어업인 참여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2) 추진방향

- 각종 전문 교육시스템 활용하고, 지역 전문 유관기관, 대학 등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촌관광마인드를 제고
- 수협, 지자체 등의 역할 분담에 의한 어촌관광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어촌의 생태·문화 체험도우미를 육성하여 어촌관광을 전문화 유도

(3) 추진계획

- 관광가이드에 대한 관광교육을 실시하여 어촌관광서비스 제공수준을 제고하는 방안마련
- 추진위원회와 같은 어촌관광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마인드를 어업인에게 제고하여 어촌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광마인드를 가지도록 전문화를 추진

다. 기대효과

- 어촌관광산업에 어민참여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4. 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가. 사업내용

-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민박 등급제 실시
- 어촌민박의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촌민박에 필요한 표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함
- 어촌민박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민박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홍보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마을 가꾸기를 통한 어촌민박마을 조성
- 어업인의 관광마인드 확산 및 민박 등급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

(2) 추진방향

- 마을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하여 어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실시
- 어촌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과 관련된 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어업인의 관광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박 운영프로그램 작성

(3) 추진계획

- 민박가구간 경쟁유도를 위한 민박시설의 차등화를 실시
- 민박운영 매뉴얼 작성하여 표준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전국단위 통합시스템 마련하여 민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 어촌민박 등록, 시설 등급 등에 대한 법제도를 확립하여 차등화된 지원을 합법화

다. 기대효과

- 민박활성화로 어가구 소득 증대에 기여

5.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구축

가. 사업내용

- 전국 어촌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종합적 관광 포털 사이트 구축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전국 어촌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종합적 관광 포털 사이트 구축하여 어촌관광객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

(2) 추진방향

- 어촌관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어촌온라인 community 구성하여 정보제공에 효율성을 제고

(3) 추진계획

- 1단계 사업으로서 기존의 정보망을 활용하여 어촌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서 자체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포털 사이트 구축
- 어촌에서 변동하는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up-date하도록 어촌의 전문 pc요원을 양성

다. 기대효과

- 어촌관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촌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어촌관광객을 어촌으로 유입하는데 기여

제3절 어촌정주체계 구상

1. 어촌의 정주체계 확립

가. 사업내용

-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어촌조성
- 특색있고 매력있는 어촌지역조성
- 풍요로운 어촌의 미래상 정립 및 어촌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어촌 조성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어촌의 특성을 살린 정주체계를 확립하여 살기 좋은 어촌 건설

(2) 추진방향

- 최소한의 집적이익을 갖춘 중심도소읍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자원의 효율적 투자 도모
- 대도시 인구집중, 과밀화방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과 도시가 연계된 접근방식을 추구
- 상위 소도읍과 기초소도읍 개발전략을 적용

(3) 추진계획

- 정주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보완
- 1개의 광역정주권역에서 생산·유통·관광 등 적절한 기능을 분담토록 종합적으로 개발
- 각 어촌에서 생활의 기본기능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되, 상위기능은 소도읍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

다. 기대효과

- 어촌의 정주권을 확립하여 주변 지역과 교류증대

2. 어촌 주거환경의 종합적 정비

가. 사업내용

- 기존의 어촌과 연관된 개발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추진
- 도서개발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 중앙부처별 사업도 지속적 추진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추구

(2) 추진방향

- 어촌권역 내의 입지유형에 따라 각 어촌을 차별하여 어촌을 정비
- 어촌지역 주민의 혼주화에 부합되는 어촌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비

(3) 추진계획

-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검토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어촌 및 어항과 관련된 배후지 개발계획을 발굴

다. 기대효과

- 어촌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어촌의 환경개선에 기여

3. 어촌 교통체계의 정비(연안여객선 중심)

가. 사업내용

- 선착장이 부족하여 선박의 접안 및 승·하선이 어려운 지역에 선착장건설 지원
- 노후화된 선박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여객선 신규투입
-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낙도에 거주하는 도서민에게 도움
- 여객선 건조에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여객선과 계획조선에 자금지원방안을 검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연안선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
- 도서지방과 육지와 연결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기능을 향상

(2) 추진방향

- 도서지방과 육지간 여행시간을 단축하여 여행객에게 편의 제공
- 연안여객선 관광객에게 안전성을 제고하여 선박관광객이 도서를 계속 찾는 유인을 제공
- 연안여객선 운영업체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계획

- 연안여객선용 연료유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하여 연안도서 거주자에게 편의 제공 및 여행시간 단축
- 운항효율성 증대에 따른 낙도보조항로 일반항로 전환으로 국고 손실보상금 절감방안을 모색
- 연안여객선 건조자금을 지원하여 선박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농특회계상의 지원항목 편입방안을 모색
- 연안여객선 전용 선착장 시설확충 지원

다. 기대효과

-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및 어촌방문객에게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어촌 여행의 쾌적성 제고에 기여

4. 친환경적 어촌 정비

가. 사업내용

- 어촌의 역할변화에 따라 어촌의 자원을 재평가
- 어업의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온 정비사업들을 재검토
-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어촌환경, 자연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어촌환경의 질적인 면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보완

(2) 추진방향

- 어촌 정비의 원동력은 어업외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어촌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 환경 친화적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연안지역의 미래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3) 추진계획

- 어촌지역 환경 및 경관정비사업은 기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어촌지역 경관형성계획을 통합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정비방식을 채택
- 어촌의 어메니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소득원 창출

다. 기대효과

-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촌을 정비하여 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

5. 국토계획체계와 어촌의 계획적 개발

가. 사업내용

-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 및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연장으로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어항·어장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연계개발이 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

(2) 추진방향

- 과거의 어촌개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바다에서 어촌을 바라보는 개발방식 적용
- 어촌지역을 도시와 연계한 개발방식으로 접근
- 연안관리 및 경관형성 측면에서 어촌개발방식을 도입

(3) 추진계획

- 계획적인 어항·어촌·어장의 연계를 위한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연구
-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을 통한 어촌지역 용도규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정에 합당한 경관조례 제정

다. 기대효과

- 국토계획체계와 어촌개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함

6. 어촌개발 정책체계 검토

가. 사업내용

- 농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재원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
- 어촌개발의 정책체계에 대한 현황 및 정책과제, 향후정책 방향을 연구
- 2004년경에 완료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재원인 “농특세” 연장방안 모색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재원을 확보
-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환경조성
-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

(2) 추진방향

- 농어촌 개발 정책체계 검토의 재원문제는 농어업특위 제3분과위원회 연구자료로 합동추진

(3) 추진계획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되 농어촌 개발정책체계 내에서 검토·논의

다.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다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제4절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1. 어촌지역의 복지지표 개발

가. 사업의 필요성

- 현재까지 어촌지역의 생활수준에 초점을 맞춘 후생지표는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어촌의 생활수준을 측정하여 도시의 생활수준과 비교가능한 통일된 지표도 없고, 환경지표를 복지수준에 반영한 지표도 없음
- 도시의 인구를 어촌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나. 사업수행방향

(1) 기본목표

- 어촌지역의 생활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개발하고, 도시와 어촌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개발

(2) 주요사업내용

-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간 비교가능 복지지표 개발 및 작성
- 도시지역의 은퇴 노인층을 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생활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작성

다. 사업추진계획

- 이론상으로 개발된 생활지표 연구 및 새로운 지표개발
- 선진외국에서 개발된 지표 및 사례 검토
-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개발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어촌주민의 복지지표를 개발하여 그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복지후생의 개선 정도를 면밀히 조사한다면 어촌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계량화된 지표를 이용

하여 어촌의 복지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가. 사업내용

- 어촌지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금 확보방안 마련
- 어촌지역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어촌지역 서비스 체계구축
- 어촌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자질향상 및 활용방안 수립
- 어촌의 응급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시설 및 운송체계 개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어촌의 생산성 향상

(2) 추진방향

-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 사회복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병력을 기록관리(D/B)
- 첨단병원선 건조 후 정기적인 어촌순회로 질병 사전예방 및 치료
- 보건·의료기관에 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치료 추진
-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3) 추진계획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협조
- 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현지실태 조사실시

다. 기대효과

- 의료체계 개선으로 어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어 어촌 주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3. 어촌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가. 사업내용

- 어촌 여성의 업무를 완화하고 어촌여성의 소득증대 지원 방안을 모색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여성 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여성 어업인들의 취미, 교육, 여가 활용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 및 일감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

(2) 추진방향

- 다양한 어가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도우미영역을 확대
- 여성어업인센터 육성하고, 어촌여성 일감맞기의 확산 및 내실화를 기함

(3) 추진계획

- 농가도우미 제도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어가도우미 제도 도입하고, 어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 2003년 ~2010년
 - 지원일수 : 30일
 - 총사업비 : 144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추진체계
 - 해양수산부 : 예산확보, 시행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
 - 시·도 : 세부시행계획 및 예산 재배정
 - 시·군·구 : 사업비 집행(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 여성어업인센터 육성하여 지역특성 및 여성 어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어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의 확산 및 내실화
- 지역특성 및 여성 어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원조건은 1개 센터에 127백만원 기준으로 하고 전국 9개 도에 각 도별로 3개소씩 지원한다면 3,429백만원 소요

다. 기대효과

- 어촌여성 지원책을 실시함으로 어촌 기피현상 완화

4. 어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가. 사업내용

- 도시와 어촌의 소득격차를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하고, 도시와 어촌의 의료 서비스 질의 차이를 반영한 의료보험료 부담을 개선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개선하여 어촌의 유지·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 어촌지역의 연금보험료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 지속하고 개선하는 방안모색
- 어촌 주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소득을 반영한 의료보험료 부담을 개선

(3) 추진계획

- 도시와 어촌 주민간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
-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

다. 기대효과

- 의료의 서비스 차이를 반영한 의료보험료 부담을 개선하여 형평성 강화

5. 어촌 국민연금제도 개선

가. 사업내용

- 어가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연장방안 모색

- 지속적인 어업 종사자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사업장 적용 확대방안 모색
- 국민연금제도 홍보를 통한 어촌지역 국민연금 정착화 방안 모색
-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산식 개선, 즉, 어업인의 절대소득에 의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보다 소득계층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과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어촌 후생복지 향상

(2) 추진방향

- 어촌지역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모색
-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

(3)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을 계속 보완
- 어업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조사, 어촌지역의 소득의 특성을 조사하여 국민연금개선방안을 모색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자료 분석하여 어촌의 국민연금 개선 방안 도출

다. 기대효과

-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소득재분배 측면에 기여

6.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교육환경 개선

가. 사업내용

- 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의 차등화를 위한 특성조사
- 도시 관광객의 어촌관광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층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층에게 소득지원 계기 마련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

(2)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대
- 어촌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개인단위 급여 지급
- 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의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3)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보완책을 강구
- 어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효율화를 위한 현지조사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제시

다. 기대효과

- 어촌거주자 복지후생 증대에 기여

7. 어촌 문화복지 개선

가. 사업내용

- 근린 생활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
- 폐교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공공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 기본적인 문화시설의 확충방안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고 문화정책을 지역정책의 중심에 두고 타 지역정책과

조화롭게 추진

-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자원을 개발하도록 육성하여 지역의 특성 부각
- 어촌주민들이 고품위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고

(2) 추진방향

- 어촌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어촌 지역 문화정책을 국가정책과 조화롭게 추진

(3) 추진계획

- 근린 생활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제고, 폐교공간을 주민융합형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공공시설의 문화공간화 확대로 문화의 생활화 및 기본적인 문화 시설 확충

다. 기대효과

- 문화복지시설을 개선하여 어촌의 자부심 고취

8. 어촌의 영유아 보육대책

가. 사업내용

- 어촌지역의 영아 보육의 활성화 정책
- 어촌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방안
- 원거리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대책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보육과 어업노동 공급의 조화로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모색
- 영유아들의 정상적인 보육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어촌 여성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강구

(2) 추진방향

- 어촌지역에 위치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 어촌 영유아들의 정상적인 보육프로그램 개발

(3) 추진계획

- 어촌 영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
 - 어촌 국공립 영아 보육시설의 확대
 -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 지정
 - 영아 수용 보육기관의 적극적 지원
 - 어촌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 사립보육시설에 재정지원 확대
 -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이용을 못하는 아동을 위해 보육료의 현실화
- 원거리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대책
 - 마을 단위의 놀이방
 - 리 단위의 탁아방
- 어촌소재 대학의 보육참여 유도
 - 어촌지역 소재 대학과 협력방안
 - 보육참여를 위한 대학 평가조항 마련
- 대기업의 어촌 보육기관 운영촉진
 - 지역사회기업과 대기업들의 아동복지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촌일 돕기의 방안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원과건 유도
- 사립형 대안 보육기관 설립
- 저소득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원
- 어촌의 생태환경을 살린 시범시설 운영
 - 생태환경 보육시설의 운영방안 마련
- 어촌 보육정보센터 설립

다. 기대효과

- 어촌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여 어촌여성 인력의 노고를 경감

9. 어촌 노인복지 증진

가. 사업내용

- 어촌노인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 고령어업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
- 노인에게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여가선용방안을 모색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어촌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인간성 회복을 통하여 어촌의 유지·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 어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요구되는 노인복지사업의 종류,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노인복지에 우선하는 정책 실시
-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의 제도적 수단 또는 경제적 수단과 어촌의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의 연계방안 모색

(3) 추진계획

- 노인복지 전문가와 어촌 전문가에게 공동연구를 위탁
- 보건복지부와 노인복지 증진 정책의 내용을 공동으로 조사

다. 기대효과

- 어촌 노인의 복지증진책을 마련하여 어촌의 안정화에 기여

10. 『어촌복지특별조치법』(가칭) 제정 및 운용방안

가. 사업내용

- 어촌복지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어촌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사회복지 관련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관련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법들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 즉 총괄법의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책의 근거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어업재해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촌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등 어촌 사회보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

나. 추진목표와 방향

(1) 추진목표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어촌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법규 정비
- 어촌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어촌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로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

(2) 추진방향

- 어촌 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여 농어촌 특례조항이나 특별법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어업과 농업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즉, 어업은 공유재산자원의 특성을 가짐) 어업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어업인의 복지개선책을 마련

(3) 추진계획

- 사회복지학 전공자와 어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과 『어촌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위탁
- 『어촌복지법』이 수용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 및 설문조사하여 어촌

복지법의 내용을 보완

- 「어촌복지법」이 수용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

다. 기대효과

- 어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어촌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VIII. 중장기 투융자 계획

제1절 투융자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반조성

1. 투융자사업 현황

- 자금규모의 영세성, 자금이용상의 혼합성, 계절성 등 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산부문 정부재정 지원은 일반투융자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그 동안 농림어업 대상으로 '90년대 초부터 42조 규모의 구조개선 사업 및 15조 규모의 농특세사업 등 투융자 사업이 본격 전개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산부문에 대한 투융자도 크게 확충되어 어업구조 개선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92~'98년간 농어촌구조개선 42조사업 중 수산부문에 3조 186억원(국고기준) 투입
 - '94~'04년 기간의 15조 농특세사업 중 수산부문에 1조 4,478억원 지원계획(42조 사업이 완료되었던 '98까지 5,705억원 집행)

〈표 8-1-1〉 수산정책자금 투융자 사업별 및 재원 비중('92-'99년 기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구성비
사업총계	43.5%	42.1%	7.7%	6.7%	100.0%	100%
어장환경개선 및 기르는어업	62.2%	15.3%	16.8%	5.8%	100.0%	13.5%
연근해어업구조조정및어업자원관리	43.5%	39.9%	3.0%	13.6%	100.0%	16.4%
어촌소득원개발및어업생산기반시설	79.5%	0.4%	18.5%	1.6%	100.0%	26.3%
수산물유통및가공	10.1%	63.6%	1.0%	25.3%	100.0%	12.2%
국제어업협력및원양어업	81.8%	16.5%	0.0%	1.7%	100.0%	1.1%
수산기술개발	99.8%	0.2%	0.0%	0.1%	100.0%	3.9%
어업인육성,교육및홍보	15.3%	84.7%	0.0%	0.0%	100.0%	6.6%
어업경영지원	0.0%	99.2%	0.0%	0.8%	100.0%	19.9%
회계별 총계	43.5%	42.1%	7.7%	6.7%	100.0%	100%
일반회계	86.5%	0.0%	11.4%	2.1%	100.0%	27.1%
재특회계	0.0%	100.0%	0.0%	0.0%	100.0%	19.9%
농특회계	37.9%	41.8%	8.8%	11.6%	100.0%	52.9%

자료 :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방안, 2001.6, 해양수산부

- '92-'99년 기간중 수산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규모는 총 5조3,948억원임. 그중 43.5%인 2조 3,46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4,177억원(총 투자규모 대비 7.7%)은 지방비에서, 3,614억원(6.7%)은 자기부담으로, 2조 2,690억원(42.1%)은 융자 방식으로 조달되었음
- 같은 기간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4,642억원(27.1%), 농특회계 2조 8,548억원(52.9%)이 각각 조달되었음

□ 외환위기가 도래한 이후 '99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업진흥 종합대책'(‘99-'04 기간)을 수립 및 진행 중임. 2002년에는 165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그중 20개 과제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를 추진중

〈표 8-1-2〉 수산업진흥종합대책(‘99-'04)

구 분	계 (99-04)	국고			지방비	자담
		투자	보조	융자		
계 (비중,%)	67,597 (100.0)	20,779 (30.7)	19,142 (28.3)	17,795 (26.3)	5,377 (8.0)	4,504 (6.7)
신해양질서에 맞는 어업구조 재편	10,064	973	6,115	2,094	249	633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육성	12,380	1,612	4,900	3,631	1,075	1,162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	13,608	330	4,022	5,707	1,077	2,472
풍요로운 어촌 건설	26,483	12,802	4,105	6,363	2,976	237
해경합정 및 방제정 등 보강	5,062	5,062	-	-	-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진흥종합대책, 1999.10

2. 여건변화와 추진방향

가. 여건변화

- 수산분야 국제적 여건 변화로 정부의 투융자 사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 여건이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산업 등의 생산 유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 WTO/DDA의 보조금 협상, FTA 체결 등으로 어업인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어가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서고, 어가인구 및 어업종사자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투융자 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경제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위주의 수산정책으로 전환할 여건이 도래하고 있음.
 - WTO-DDA에 대비한 통상대책, 수산물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 등 대책마련
- 일반국민,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유발하는 투용자 정책의 추진 필요성
 - 국민식량 자원의 안정적 공급
 - 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 국민정신의 뿌리로서의 어촌 전통문화 보존과 역할 확대

나. 추진방향

- 그 동안 수산사업 중간평가 등 선행연구를 통해 투용자 방향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산부문 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 전환이 요구됨
 - 정부사업은 SOC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용자로 전환
 - 생산중심의 투용자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 투자는 기본시설의 보완·개선에 중점
- 수산자원의 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업구조개선, 수산물 수급조정과 안정공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혁신 등에 투용자 사업 추진
-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어항의 개발과 정비, 정주체계 확립을 위한 어촌개발, 및 어촌 복지후생 개선 등을 위한 투용자 사업의 적극 추진
- 보조금철폐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영세어업인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적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과급효과를 극소화

3. 재원조달 방안

- 수산부문 투용자는 지속적인 어업·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재원의 안정성과 예측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달 수단을 마련

- 농어촌 특별세의 연장
 - 재원조달의 절반 이상을 농특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바, 향후 지속적인 농특회계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4년까지 목적세로 부과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를 2011년까지 연장시켜 수산부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하도록 함
 - OECD의 조세체계 개편 정책에 맞추어 목적세를 폐지하되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마찰을 극소화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발전세’(가칭)로 개정
 - 15조 농특세 재원(‘94-’04)중 수산부문에 1조 4,478억원 지원. 동비율 유지하고 2004년 이후 2011년까지 농특세 연장시 수산부문에 약 1조원 가량 추가 재원 확보 예상
- 향후 확대되는 수산분야 투융자 사업과 그 재원 조달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융자 비중을 현행 42.1%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융자 자금 확대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추진
 - 융자 방식은 재원 마련 자체보다 융자금리 운용이 중요함. 융자금리 현실화 폭 확대로 부족한 재원 마련의 활로를 열고,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 현재 국고 43.5%, 지방비 7.7%, 자담 6.7%의 비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겨냥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10%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담분도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함
 - 어장환경개선, 어촌소득원 개발 등의 투융자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 비율을 20%-25% 수준으로 점차 높여나가도록 함
 -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사후관리 책임을 위해서도 지방비 및 자담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함
 -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담 적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수산발전기금 확대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수산발전기금은 '99.9월 어업인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 1999년 현재 2조원에서 2004년 3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
 - 2004년 이후의 기금 확대 조성 방안 마련
- 농안기금중 수산부문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통합 추진
 -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장 54조)에 의거하여 비축사업, 채소가격안정사업, 종자보급 사업, 민간가격안정사업, 유통시설확

- 충 및 개선사업, 산지 소비지 유통개선사업 등에 운용됨
- 농안기금 수산부문의 이관으로 수산관련 기금을 단일화하고, 가격안정등 사업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 다만, WTO규정상 부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가격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민자유치 추진
 - 투융자 사업중 한계투자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
 - 어항개발 사업(농특세 사업)의 경우 한계투자수익률이 높음

4. 투융자 사업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 투융자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킴
 - 어업인, 어촌에 대한 균등지원 투융자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중시
 - 투융자 사업의 지원조건을 단순화하고, 투융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자구 노력과 자기손실부담원칙을 확산시켜 나감
- 투자지원체제를 기존의 정부재정 의존형 단순보조체제에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 자율경영체계 확립과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과 생산자조직 및 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융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반면에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기반조성이나 유통조성 등 SOC적 성격의 공공사업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과, 소득보상적 직접지불제 사업에 한정하는 등 투융자 제도를 개선
 -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선별적 지원경쟁체제로 전환
- 투자사업별 투자효과분석 실시와 투자우선순위의 재조정
 - 개별사업별로 또는 패키지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사전투자심사, 사후관리 및 평가를 일관성 있게 유지토록 함
 - 투융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 자금집행 관리체계의 강화
 - 수익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확립

- 자금집행 확인 및 검정·정산절차를 강화
- 사후관리 강화 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과 자원배분원칙의 설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되, 지방정부의 수산여건과 지방비 부담 노력에 상응하는 국고지원 체제로 전환
 -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연계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며 분쟁의 소지를 사전 조정하고 아울러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방정부간의 협력조정기능을 강화
 -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순수공공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외부효과가 큰 사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 위험성이 큰 사업, 소득분배나 형평성 효과가 큰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정부는 외부효과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복되는 지출의 통합정비와 불필요한 지출 통제
 - 사업별로 적정지출수준을 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 삭감, 폐지함. 전년도부터 답습적으로 매년 반복계상되어 온 예산사업 중 한계효과가 당초보다 급속히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제2절 부문별 투융자 계획

□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 효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3까지	2004~2007	2008~2010
과학적인 조사평가	32,000	-	32,000	-
내수면 잠재력 조사·평가	2,000	-	2,000	-

○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총 계	139,112	775	46,505	91,832
TAC 어종확대 실시	62,300	400	24,300	37,600
읍저버 제도 실시	38,312	375	13,705	24,232
전자어획시스템 도입	38,500	-	8,500	30,00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인공어초제작·투하	603,000	51,100	352,900	199,000
인공어초어장관리	603,000	1,250	45,300	35,100
해중립조성사업	603,000	1,250	27,700	18,900
수산종묘방류사업	603,000	2,700	159,800	121,600
ITQ제도 도입방안 검토	1,000	-	1,000	-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총 계	99,803	14,821	31,834	53,148	
토산어종종묘생산방류	금액(백만원)	21,275	2,215	6,480	12,580
	물량(천마리)	220,479	100,902	45,577	74,000
토산어종매입방류	금액(백만원)	61,900	10,064	19,036	32,800
	물량(천마리)	453,566	190,356	99,210	164,000
연어치어방류	금액(백만원)	9,428	1,642	2,818	4,968
	물량(마리)	592,173	240,173	136,000	216,000
연어친어매입	금액(백만원)	306,329	305,179	550	600
	물량(천마리)	65,000	6,500	32,500	26,000
연어생산시설보강	금액(백만원)	7,200	900	3,500	2,800

○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자율관리어업 모형개발 및 정립		2,500	100	1,500	900
자율관리어업의 확대·보급		130,000	10,000	75,000	45,000

□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있는 수산업 실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734,000	146,800	293,600	146,800	146,800	146,800
경제성 표준어선 개발		1,423	1,081			342	

○ 양식어장의 재정비와 경쟁력 강화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환경수용력 및 수급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절		8,000	-	5,000	3,000
사료개발지원		39,300	1,600	23,100	14,600
질병대책		18,000	-	18,000	-
양식어장정화 (어장관리해역)		160,700(190)	13,700(18)	34,500(39)	112,500(133)
특별관리어장정화 (어장관리특별해역)		346,000(153)	13,400(10)	90,400(36)	242,200(107)
해외양식어장개발지원		15,000	-	10,000	5,000

○ 어업질서의 확립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어업지도선 신조·대체 (신조13척·대체10척)		241,000 (23척)	27,000 (3척)	141,000 (14척)	73,000 (6척)

○ 신해양질서에 대응한 국제 수산협력 및 원양어업 지원·육성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책임어업이행 및 주요연안국, 국제기구와의 협력	3,917	580	1,837	1,500
노후참치연승어선 대체건조	144,000	-	144,000	-

□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확대방안	1,200	-	1,000	1,200
•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1,800	-	1,000	800
• 수산물 지역별 품목별 브랜드화 지원 사업 및 홍보강화 방안 마련	1,800	-	1,000	800
• 수산물 생산자 실명제 도입 및 시범사업	900	-	500	400
• 수산물 품질인증품 생산 업체에 관한 지원	4,500	-	2,500	2,000
•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	1,800	-	1,000	800
• 생산자 실명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1,400	-	1,000	400
• 원산지 표시제도와 환경표시제도 (Eco-labelling)의 연계방안	500	-	500	
• 원산지 표시제도와 식품표시제도의 연계방안	900	-	500	400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 국가간위생협정이행관리및지원			-	15,000	12,000
• 수출수산물위생협정이행관리			-	300	300
• 한·중위생협정이행관리			-	150	150
• 수입국가공공장및해역관리			-	300	300
• HACCP 조기정착 지원사업			-	10,000	8,000
• HACCP 조기정착사업			-		
• HACCP 평가연구 및 이행관리			-		
• 수산물 종합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연구	400		-	400	
•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및 운영, 시범사업	96,500		-	95,500	1,000
• 수산물 위생관련법제도 개편 연구	450			250	200
• WTO/SPS 대응 국내수산물 위생관리기준연구	400		-	200	200
• 생산·유통단계별 가이드라인 책정과 보급	1,500		-	1,000	500
• 수산물 검사체계의 현대화사업	20,000		-	10,000	10,000
• 수산물 위험평가기술체계구축 연구	9,000		-	5,000	4,000
• GMO표시제도 확립방안 연구 사업	300			300	

○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지원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총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산물가공산업 관리체제의 효율화방안 모색	300		300			
수산물가공산업 경영실태조사	1,200		300	300	300	300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 연구	1,200		400	400	400	
업종별 경쟁력 비교연구	400		400			
구조개선방안 연구	400			400		
주요국의 수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400				400	
수산물가공산업의 공동화·협업화방안 연구	600		300	300		

○ 거점 산지·소비지 시장 육성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산지 유통체계 개선	142,500	21,800	120,700	-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440,200	54,400	385,800	-

사업명	총계	2003	2004	2005	2006	2007~11
수산물물류개선기본계획 · 용역사업비	15	5	5	5		
물류개선지원자금	1,710	190	190	190	190	950
소계	1,725	195	195	195	190	95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농안법의 개선과 수산물 식품산업법 추진	900	-	900	
시장거래제도의 개선 지원	270,000		150,000	120,000

사업명	총계	2003	2004	2005	2006	2007~10
수산물통합쇼핑몰 구축	4,500	1,500	1,500	1,500	-	-
수산물 e-marketplace 구축	6,000	2,000	2,000	2,000	-	-
수산물전자상거래 지원	24,000	3,000	3,000	3,000	3,000	12,000
소계	34,500	6,500	6,500	6,500	3,000	12,000

○ 시장선호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단위 : 백만 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225,700	-	225,700	-
민간 구매자금	3,542,100		1,597,500	1,944,600
출하조질 자금	34,900		18,400	16,500
유통협약제	34,900	-	18,400	16,500
수산업관측제 도입	13,000	-	7,000	6,000

○ 수산물 소비자 및 수요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수산물의 수요분석 및 전망모형 구축 연구	400	-	400	
수산물의 소비패턴 분석 (2년 정기) 연구	2,000	-	1,200	800
소비정보의 공유체제 구축 연구	300	-	30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시행	7,100	100	4,000	3,000
•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차별)	400	-	400	-
• 생선회 가공공장 신설	40,000	-	40,000	-

○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화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수산물 수출촉진	2,200	107,390	600,00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 수산물 관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400	-	200	200
• 수산물 관세할당제도 합리적 운영에 관한 연구	500	-	300	200
• 수산물 품목별 적정 관세율 책정에 관한 연구	1,000	-	600	400
• 수입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투명화 사업	1,800	-	1,000	800
• 원양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투명화 사업	1,800	-	1,000	800
• 수입 및 원양수산물의 반입 지정항구 구축	1,800	-	1,000	800
국제수산물 거래체제 구축	10,000	-	10,000	-

□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총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 친환경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방안 연구	60	60				
•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400		400			
• 노령어가 조기은퇴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400			400		
•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400				400	
• 재해보상지원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400					400
• 친환경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실시	15,168		15,168			
• 친환경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실시	50,559			50,559		

○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 수산발전기금 조성		5,000,000	101,600	3,500,000	1,398,400
• 민간수산금융활성화대책연구		2,700	-	2,700	-
• 수산금융지원센터 구축		2,500	-	2,500	-

추진과제명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총 계		5,050,500	102,700	2,725,800	2,222,000
수산정책사업 재분류		500	-	500	
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		49,000	-	27,000	22,000
수산발전기금 조성		5,000,000	102,700	2,697,300	2,200,000
종합자금제도 도입		500	-	500	
민간수산금융 활성화		500	-	50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총 계	802,100	-	802,100	-
장기저리부채 전환	474,500	-	474,500	-
수산정책자금의 금리인하	327,600	-	327,600	

○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고보조	17,283	20,716	23,982	27,000	29,883	32,475	34,800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03~'14
국고보조	37,016	39,266	41,553	43,881	46,254	48,677	394,109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구 분	가입률(%)	총보험료	국고보조
2005	30	19,081	11,449
2006	40	25,442	15,265
2007	50	31,802	19,081
2008	55	34,983	20,990
2009	60	38,163	22,898
2010	65	41,343	24,806
2011	70	44,523	26,714
2012	75	47,704	28,622
2013	80	50,884	30,530
2014	80	50,884	30,530
2015년이후 매년 예상치	80	50,884	30,530
합 계 (2004~2014)	-	384,809	230,885

○ 수협 의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회원조합 경영지원	249,700	130,700 (융자)	119,000 (보조)	-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1
수협중앙회 지원 계	1,849	-	1,849	-
자본적립금잠식액보조	1,131	-	1,131(보조)	-
유류저장시설구축지원	318	-	318	-
대손보전기금 확충	400	-	400(보조)	-
			(보조159,융자63,자담96)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수산정책 기반의 구축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수산업 정보화	13,038	7,039	5,999	-

추진과제명	총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산분야에 대한 산업연관 분석	300		300			
한·일수산분야 산업연관 및 구조변화 분석	300			300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산업경쟁력 향상방안 연구	200	-	200	-

○ 수산업의 발전동력 체제 구축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 실용적 첨단양식기술 개발	72,233	2,831	30,152	39,250
· 유전육종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36,860	100	16,760	20,000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형 어구개발·보급	10,060	200	3,860	6,000
· 치어탈출장치 개발 ¹⁾	91,100	-	46,100	45,000
· 과학적어장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132,840	-	56,140	76,700

※ 1) 2004년까지 감척 후 조업이 가능한 잔존어선에 보급, 통발은 가격(200원/개)이 미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 시범어장 운영	15,980	1,200	11,700	3,080
• 관리소 청사 신·개축	13,500	1,600	7,500	4,400
• 기술지도선 대체·신조	22,600	1,800	8,000	12,800
• 시험조사 분석 장비 보강	16,600	1,800	9,000	5,800
• 장·단기 해외 연수	1,320	20	800	500

□ 어촌지역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어촌종합개발 촉진	803,170	361,510	170,624	271,036

○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

- 2003~2010년까지 매년 33개씩 개소당 3억원 총 795억원 국비지원

○ 어업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 어촌체험마을	50,500	4,000	37,500	9,000

※ 개소당 : (2003년까지) 5억원 → (2004년이후) 10억원

추진과제명 \ 연 도	총 계	2002까지	2003~2007	2008~2010
어촌민속전시관	54,000	26,000	28,000	

○ 어촌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관광 정보화 구축

- 1단계(2003-2005) : 자료 조사 및 기존 사이트 활용 정보를 제공하며 자료조사 용역비는 9억원 정도

- 2단계(2006-2007) : 어촌관광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며 포털사이트 구축비는 10억원

○ 어업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단위 : 억원)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1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어업경영 안정	67,391	4,616	5,361	8,210	8,471	8,361	32,37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기획단, WTO-DDA 대응 수산업·어촌발전 중장기 실천계획안, (2003~2011)

○ 어촌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 어촌의 여성복지증진 및 어가도우미제도 도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이후
합계	14,400	-	1,800	1,800	1,800	1,800	7,200
국비	5,760	-	720	720	720	720	2,800
지방비	5,760	-	720	720	720	720	2,800
자담	2,880	-	360	360	360	360	1,440

2002. 12

농어업 ·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의
신어업 · 어촌특별대책연구단 작업내용임.
(각 요약 및 본문편 중 수산부문 관련사항만 발췌한 것임)

목 차

< 요약 >

I.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3
1. '90년대 정책의 성과와 농어업·농어촌의 과제	4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	6
가.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농어업에의 영향	6
나.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전망	6
다. 남북관계의 변화	7
3.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	8
가. 패러다임의 전환	8
나.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8
4.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10
5.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	10
II.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기능 제고(생략)	
III.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12
1.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13
2.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4
3.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15
4.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17
5.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8
IV.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20
1.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21
2.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22
3.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22
4.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23
5.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24
6.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25
7.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26

< 본 문 >

제1장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31
제1절 '90년대 정책의 평가	31
1. 농수산정책의 성과와 한계	31
2. 농어업·농어촌의 실상	34
제2절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전망	37
1. 경제사회 변화와 흐름	37
2. 세계 농수산업과 정책 동향	38
3. DDA 협상 및 FTA의 동향과 전망	40
4. 남북관계의 변화	42
제3절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44
1. 패러다임의 전환	44
2.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45
3. 농어업·농어촌의 비전	47
제2장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 기능 제고(생략)	
제3장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49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49
1. 검토 배경	49
2. 효율적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49
3.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실시	50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51
5. 어업인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53
6.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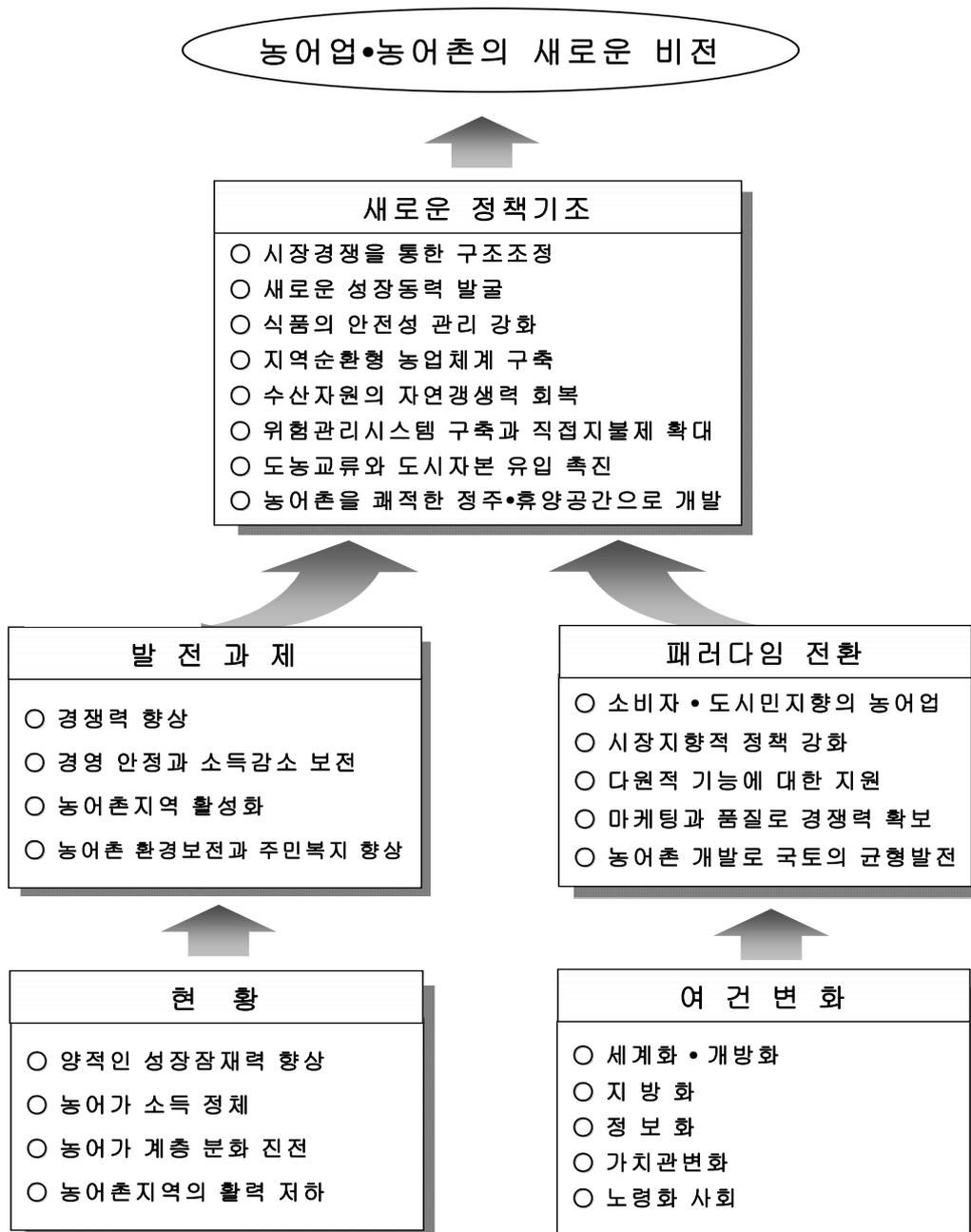
제2절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55
1. 검토 배경	55
2.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55
3.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57
4.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업질서 확립	59
5.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 신어장 개척	60
제3절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61
1. 검토 배경	61
2.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 공급 및 안전성 확보	61
3. 수산물 유통기반의 재구축	63
4.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 구축	64
5. 수산물 Hub시장을 통한 국제거래기반의 확보	65
6. 수산물 수출촉진과 수입관리 대책	66
7.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67
제4절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68
1. 검토 배경	68
2.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68
3. 영어자금 공급제도의 개선	69
4.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	70
5. 수산부문 공제·보험제도 도입	71
6. 수협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71
제5절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73
1. 검토 배경	73
2. 수산통계 및 정보화의 강화	73
3. 지속적인 수산전문인력 양성	74
4. 첨단수산기술 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75
5. 수산관련 조직체제 개편	76

제4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의 확충	78
제1절 쾌적한 정주 공간의 조성	78
1. 검토 배경	78
2.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79
3.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81
4.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	82
5.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84
제2절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경제 활성화	85
1. 검토 배경	85
2. 농어촌 지역의 산업입지 촉진	85
3. 농어촌관광의 활성화	87
4. 도시자본 유치와 농어촌지역 활성화	90
제3절 농어촌 개발체계의 개선	93
1. 검토 배경	93
2. 농어촌계획 체계 구축	94
3. 농어촌 개발의 추진체계 조정	94
4. 농어촌개발 재원의 확충 및 배분	95
제4절 농어업·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96
1. 검토 배경	96
2. 농어촌 학교와 시설의 활용	96
3.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97
4.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99
5. 농수산계 후계인력 양성의 강화	100
제5절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102
1. 검토 배경	102

2.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103
3.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104
4.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체계 확립	104
5.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04
제6절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106
1. 검토 배경	106
2. 농어촌교육·복지특별법 제정	107
3.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107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제도 개선	108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개선	108
6.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109
제5장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생략)	

요약

I.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1. '90년대 정책의 성과와 농어업·농어촌의 과제

- '90년대 들어 UR 타결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92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98) 착수, '94년 「농어촌특별세사업」('94~'04), '99년 「농업·농촌발전계획」('99-'04)」 등으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99년에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음.
- 구조정책의 결과 토지개량, 기계·시설, 대동식물자본이 축적되고 전업적 경영체가 증가하여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증가함.
 - 농업 성장률이 '80년대 후반의 부(負)의 성장에서 '90년대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94~'01년간 연평균 2.7%의 성장을 달성함.
 - ⇒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성장을 주도해온 품목의 수급불균형 등 한계가 드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함.
- 농업생산이 효율화되고 원활한 공급체계가 확립되어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 이익이 증대함.
 - 국내산 농산물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시설농업의 발달로 주년 공급이 확산됨.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질가격 하락으로 농업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정체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어, '94~'00년간 총농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0.4%에 그침.
 -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수입개방 확대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가속되었음.
 - ⇒ DDA 등 추가적 시장개방에 의한 급격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이 높은 전업농이 크게 늘어난 반면 노령·영세농도 광범하게 잔존하는 계층분화가 이루어짐.
 - 대농층으로 농지가 집중되고, 시설원예, 과수, 한육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문경영 체제가 발전함.
 - 벼농사 2ha 이상 면적 비율 : ('90)16.8% → ('00)33.6%
 - 탈농·은퇴 후 대책이 미흡한 노령·영세농층이 농업에 잔류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90)21% → ('00)33%
- ⇒ 노령·영세농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탈농기회를 부여하고 전업적 경영체에 농정수단을 집중시킬 필요가 부각됨.
- 수산업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 노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강화됨.
 - 어선감척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이 완화되고,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및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함.
 - 첨단수산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어업경영의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등 수산업이 고도화됨.
 - 그러나, 수산자원의 관리 미흡, 영세·노령어가의 잔존 등 지속적 성장의 제약요소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 '94~'01년간 어업생산은 연평균 1.7% 감소
- 60세 이상 어업종사자 : ('90) 13% → ('00) 26%
- 1톤 미만 어선 비중 : ('90) 35% → ('00) 39%
-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학적인 자원을 관리·조성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증대함.
-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투입·집약적 생산으로 인한 환경부하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 화학비료와 농약은 표준량의 1.4배 정도 과다사용되고 있으며, 가축의 분뇨 발생량은 연간 5천만 톤에 달함.
 -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 ⇒ 국내산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원순환형 농업체제의 확립과 식품 안전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농어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복지기반이 열악하여 젊은층이 농어촌정주를 기피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됨.
 - 도농간 소득격차: ('90) 97.4% → ('01) 75.9%
 - 도시어촌간 소득격차: ('90) 88.5% → ('01) 70.6%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 ('90) 14.6% → ('00) 6.6%
 - '85~'00년간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읍면 : 352개(24.9%)
- ⇒ 산업 측면에서의 농어업대책 외에 지역활성화, 농어촌 주민 복지 문제에 대한 집중적 대책이 필요함.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

가.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농어업에의 영향

- 개방화 · 자유화 · 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 해소 및 열린 세계의 실현을 통한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됨.
⇒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무한경쟁은 우리 농어업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세계화 속에서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globalization)되고, 농어업 ·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됨.
⇒ 사회공존의 논리가 중시되고 인간 · 생명 ·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생명 · 환경산업으로서 농어업의 가치가 재평가됨.
- 가치창조의 핵심은 정보화에 기초하여 지식기반산업화되는 것임.
⇒ 토지 · 자본의 제약을 극복하는 농업생산 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유통혁신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증대함.
- 주 5일 근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관광과 여가활동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도시생활의 피로,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남.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가 도래함.
⇒ 연금 ·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실버산업의 장으로서 농어촌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됨.

나.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전망

- DDA 협상, 2004년 쌀재협상,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농수 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전망이다.
 - 개방 확대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은 '03년 3월까지 이행과 관련된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 고율관세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관세감축 폭은 증가하고, 국내보조에 대한 제약도 강화될 전망이다.
 -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개방 폭이 늘어나 우리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수산분야의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도 필연적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수산보조금의 감축 또는 금지가 예상된다.
-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에서 주요 통상국과 FTA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의 FTA, 한·중·일 3국 경제협력체 구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FTA 체결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유예, 산업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법제화 및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함.
-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분야의 한·중·일 3국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 경험,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 및 시장 잠재력, 그리고 3국 주변 국가들의 자연자원과 시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농어업의 생산기술 향상은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에게 위협요인이거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 개방 확대로 곡물 등 전통적인 농수산물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생산이 축소되고 농어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술·자본집약적인 농어업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음.

다. 남북관계의 변화

-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는 여러 곡절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임.
 - 경의선, 동해안의 철도와 육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이 가시화됨.
-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수산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함.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 지원, 생산기반 복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영농어자재 지원, 공동어로 합작사업 등이 주요 정책변수로 될 전망이다.
 - 북한산 농수산물의 국내 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

가. 패러다임의 전환

- 소비자·도시민을 지향하는 농어업으로 전환함.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함.
 -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함.
-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함.
 -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 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함.
 - 개별 농어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부 구매 등 생산과 가격지원 정책 위주에서 탈피함.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을 확대함.
-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와 소비자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 추진으로 전환함.
 -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함.
 - 대형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자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함.
- 농어촌을 열린 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간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함.

나.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 농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함.
 - 경영체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화·전문화·겸업화 또는 은퇴·탈농

- 등의 방향을 농어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다양화함.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하여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함.
 - 경쟁력 있는 경영체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농지·인력육성 제도를 정비함.
 -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상품·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함.
 - ‘농장에서 식탁까지’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함.
 - 친환경농업이 저농약·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순환(Recycling)농업시스템을 구축함.
 - 수산자원의 자연재생력 회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재편함.
 - 어업관리의 계획수립, 집행, 감시의 전과정에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어획노력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지불제를 확충함.
 - 농어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안정프로그램과 농어업보험제도를 확충함.
 -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불제를 강화함.
 - 도시자본 유치, 농어촌관광 활성화, 공업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개발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함.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한 관광개발과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을 제고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킴.
 - 농어촌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주거공간이 되도록 생활환경 정비와 교육·복지대책 확충에 집중함.
 - 농어촌 중심도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함.
 - 농어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함.

4.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농어업 분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
- DDA협상 이후에 대비한 투융자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함.
 - 현재의 농특세를 목적세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여 일정기간 연장하고, 징수된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투융자 지원방식을 개편함.
 - 투융자 지원에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종합자금 용자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포괄지원 방향으로 추진함.
 - 농업관련기금과 특별회계의 용자사업 부분을 「농업·농촌발전기금」(가칭)으로 통합 운영하여 투융자사업의 신축성을 제고함.
- 농수산정책 정부 조직을 식품안전성, 통상정책, 정보화, 지역개발, R&D 관리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개발, 부존자원 활용, 시장개척 등 지역농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 여건 변화에 상응한 농수산관련 주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
 - 지방농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자 양성을 도모함.

5.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수산물의 공급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됨.

다양한 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전문경영체가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됨.

□ 농어가 유형·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 확충

-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경영불안정이 완화되고, 중소 농어의 농외취업 확대, 노령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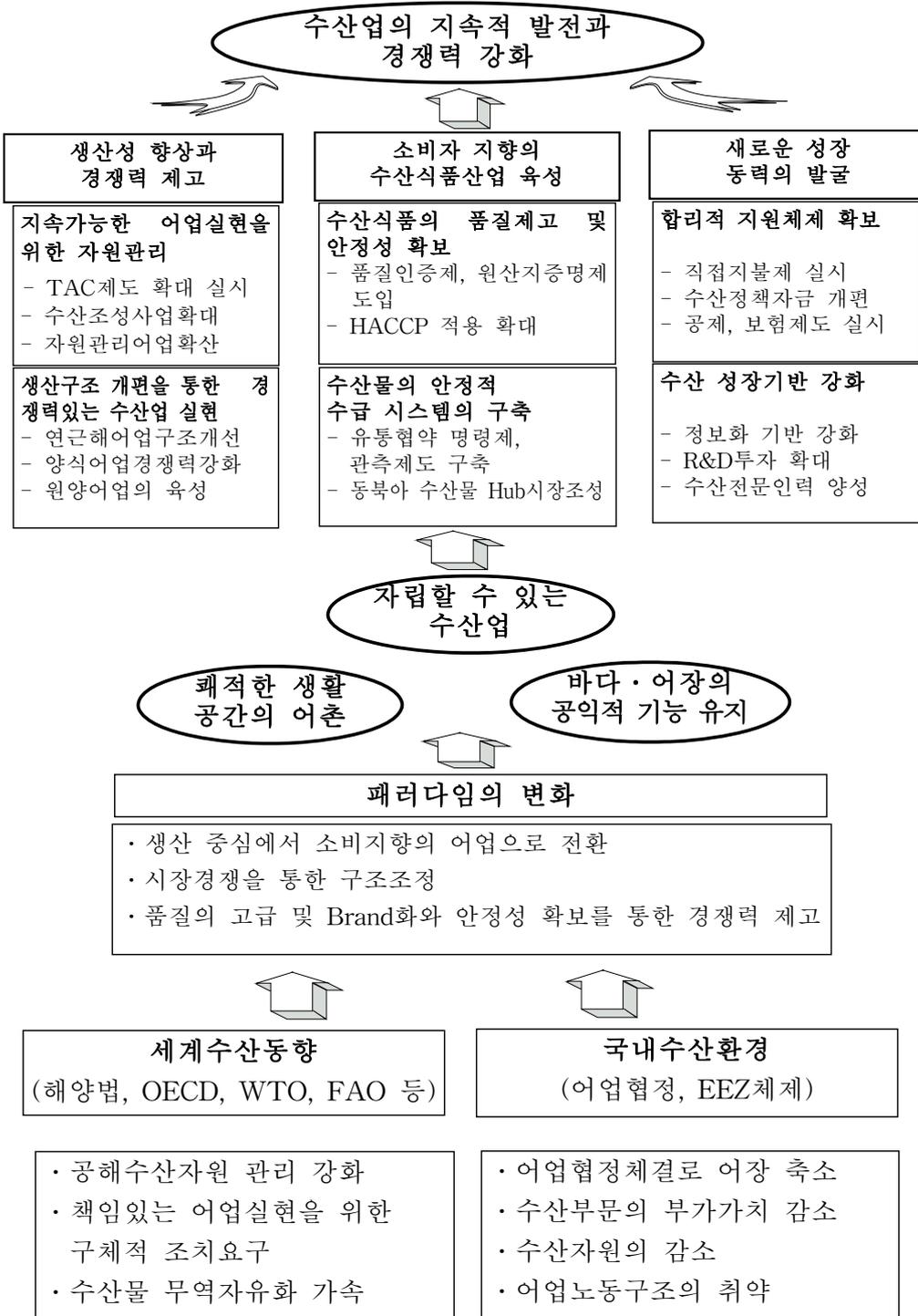
□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됨.

□ 더불어 사는 열린 농어촌 공간

- 농어촌의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하며, 농어업인과 타산업 종사자, 은퇴자 등이 서로 보완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Ⅲ.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기반을 조성함.
 - 과학적인 자원조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10년까지 20여개 어종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한 자원조사·평가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함.
 - 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자원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평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연근해 자원조사용 전용선 및 과학장비의 확보를 추진함.
- 수산선진국형 자원관리 수단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 실시함.
 -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TAC제도로 전환하고, TAC 대상을 2010까지 20여개 어종, 2,400여척으로 확대함.
 - TAC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제도인 읍서버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함.
- 풍요로운 바다육성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함.
 - 인공어초사업 시설적지 307천ha중 미시설 해역 150천ha에 대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고, 해역 특성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를 개발하며 사후관리 체제를 개편함.
 - 어업, 유어낚시 등 날로 증가하는 수산자원의 이용에 부응하고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추진체제를 개편함.
 - 획일적인 종묘방류는 자연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보전형 종묘방류사업으로 전환함.
 -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다목장을 다양하게 개발·확산하고, 바다목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다도해형(남해안, 통영·여수), 갯벌형(서해안), 관광형(동해안), 수중체험형(제주도) 등 해역 특성에 맞게 5개의 해역별 바다목장 모형을 개발
- 정부규제 중심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어업인들이 어업자원관리의 주체가 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함.
 -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함.
 - 자율관리어업체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추

진하며, 우수 어업공동체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가칭)수산자원 관리·조성 센터를 설립을 추진함.
- ※ 법적 근거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들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센터의 조직은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수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조직 (본부 1, 동해 2, 서해 2, 남해 4)을 연차적으로 설립함.

2.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 연근해어업의 자원수준에 적정한 어획강도의 유지로 자원회복 및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함.
 - 업종별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감척사업 이전에 업종별 허가정수를 조정하고, 어선세력의 실질적인 감척을 위해 유휴 어업허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함.
 - 연안어선의 경우에도 2003년까지 연근해어업 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어선 감척계획을 수립함.
 - 근해어선은 기존 감척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감척을 완료하고, 연안어선은 2004년부터 전체 어선의 10% 수준인 6,300 여척을 연차적으로 감척을 실시함.
- 어선 감척사업과 연계하여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에 대하여 업종별로 매년 어기의 20%범위(약 2개월)의 휴어제를 실시함.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휴어제를 실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정부가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함.
-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에 따른 어업경영의 비효율성 제고를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 기관마력, 어선 선복량 및 어구 사용규모를 제한하고, 어구실명제를 도입함.
 -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성, 안전성 및 편의시설을 갖춘 표준어선형을 개발·보급함.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력과 양식수산물의 수급을 고려한 다양한 생산조정정책을 추진함.
 - 지속적인 양식어업의 유지를 위하여 양식어장을 재정비하고, 어촌계 및 수협 소유 해조류 양식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며, 해조류 양식장 관리주체를

수협으로 일원화함.

-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 해소와 DDA협상 이후 국내 양식어업의 존립기반 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도입문제를 연구 검토함.
- ※ 양식어업의 생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타당성 연구·검토 : 2003~2004
- 양식어업의 장기지속적 생산성 유지와 양식경영체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으로 재편을 추진함.
 - 양식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의 개선 및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최소생계비 등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검토함.
 -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보급과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함.
 - ※ 노르웨이에서는 단위면적당 사료사용량을 규제하여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
 -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제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도입을 추진함.
- 국내외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및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체제를 보강함.
 - 현실에 맞지 않은 어구·어법은 통폐합하고,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 안에 '어업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함.
 - 어업자원관리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국민여론의 형성을 도모함.
- 원양어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신어장을 개척함.
 - 국제협정에 따른 어장상실로 인하여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영향이 있는 원양어업에 대하여 업종별 감척사업의 추진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 참치연승어업은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나 선박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체선 건조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주력 원양어업으로 육성함.
 - 어업협정으로 축소된 조업어장을 대체하고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외 신어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3.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

- 수산식품의 차별화된 품질유지를 위해 수산물품질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유통 질서의 건전화를 위해 국내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함.
-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가공업자간 공동 네트워크의 구축 등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수산식품위생안전위해관리 기능을 강화함.
- 수산물 유통기반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함.
 - 수산물 산지시장은 공동출하·포장화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산지 시장을 육성하고, 수도권 소비지도매시장은 이전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능을 보완함.
 - 물류비용 절감 및 수산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전자도매시장(eMarketplace) 구축을 통해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함.
 - 수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생선회 유통활성화를 위한 생선회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수산물의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함.
 - 정부비축사업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함.
 - 수산물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의 분리·이관을 검토함.
 -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업 관측센터를 설립함.
-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산물 물류중심(Hub)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부산과 수도권에 산지 및 소비지를 대표하는 수산물 종합유통기지를 구축함.
 -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활용하여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을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괄(One-Stop) 체계의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함.
 -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 및 정보가 집결되는 수산물 유통중심기지로 조성을 추진함.
-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수산물 관세체계를 합리화함.

- 수출업체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 할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체제를 개선함.
 - 반입 수산물의 실질적 교역 확대를 위하여 현지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함.

4.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DDA 출범에 따른 국내수산물 보조금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DDA의 협상추이에 따라 도입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
 - ※ EU의 경우, 수산부문의 소득보전, 재해보상, 벽지지원, 실업지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 상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있음.
- 수산부문의 독자적 정책수행과 효율적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하여 수산정책자금의 공급체도를 개선함.
 - 수산정책사업을 사업별, 재원별, 시행주체별, 금지 가능성별, 직불제 전환 가능성별로 재분류하고 통폐합하여 단순화를 추진함.
 - WTO의 보조금 기준에 적합하고 수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영어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지원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
 - 수산관련 각종 기금은 수산발전기금에 편입하며,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규모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함.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규모 및 범위 확대와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손실보전제도를 보완함.
- DDA 논의에 따라 규제가능성이 높은 세제 지원체제를 개선함.
 - 농·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 등 농·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DDA협상결과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후환급 또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어업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선원보험체계를 개선하고, 양식공제제도를 도입함.
 - 어선톤급에 따라 적용법률이 이원화되어 선원보험을 일원화하고,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수협이 선원 및 어선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함.

- 양식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어류양식에 대하여 태풍(폭풍)·해일·적조의 위험을 부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
- 수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중앙회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회원조합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합 경영개선계획을 조기 완료하며, 투명경영 체제를 구축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분리 등으로 부실화된 경제사업부문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자구 노력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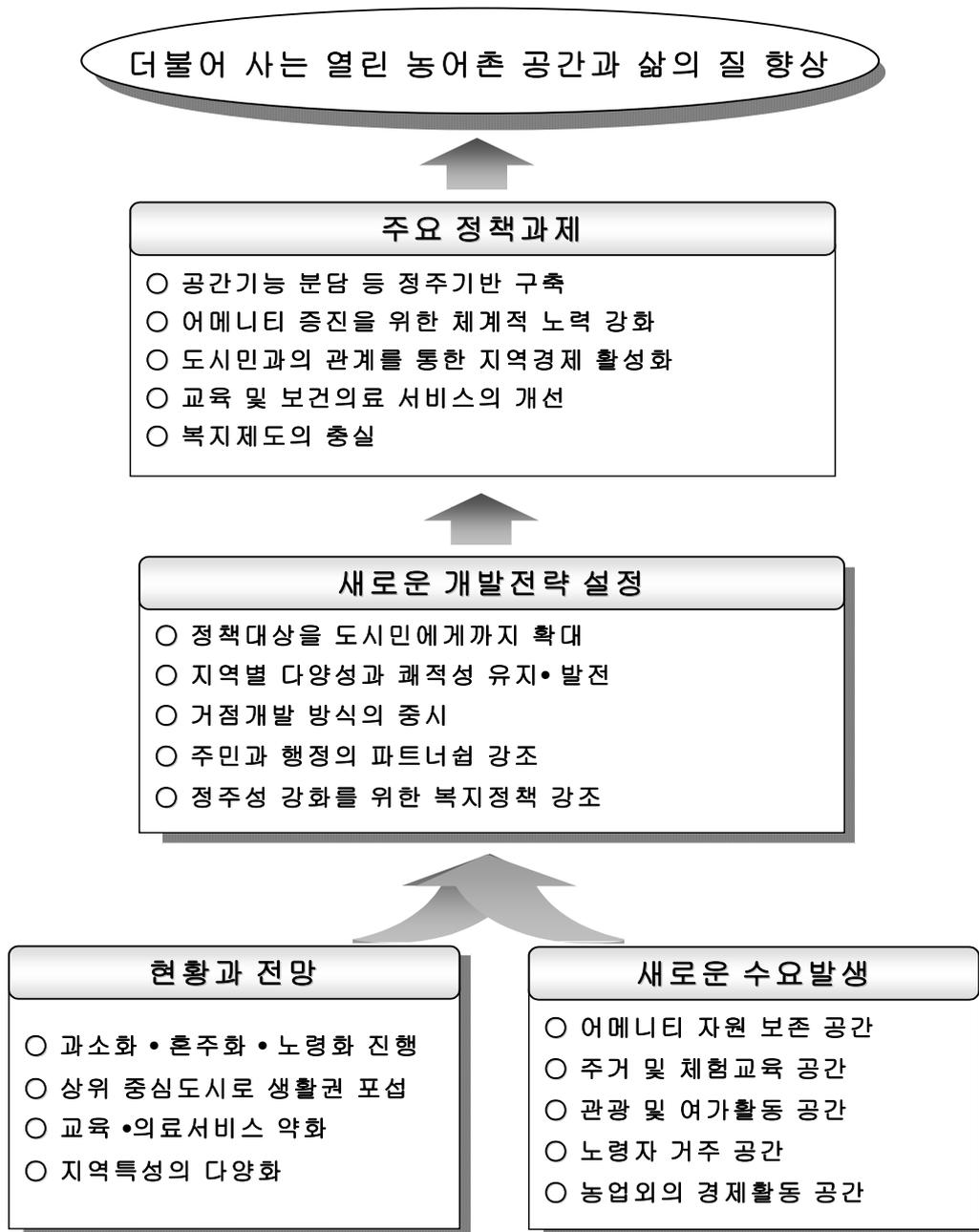
5.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수산통계의 이관과 어촌 정보인프라를 확충함.
 -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으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표본설계의 개선 및 통계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수산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함.
 - 어촌과 도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정보화 환경을 조성함.
- 수산전문인력의 지속적 육성과 확보를 추진함.
 - 현재의 수산계 고교를 영어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특성화 자영수산고와 진학과 취업 위주의 일반수산고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특성화 대학 지정을 전 수산계 대학으로 확대를 추진함.
 -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의 수산분야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함.
- 수산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촉진함.
 - 연구개발 투자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개편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양식어업 등 기존의 비교우위요소를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산업으로 육성함.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구축과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분야의 조사·인력 및 장비를 확충함.

-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DDA 이후의 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 혹은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의 보강 및 정비를 추진함.
 - DDA협상, FTA협상 등 각종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수산분야 업무처리 능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통상협력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함.
 - 수산통계의 이관과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 또는 확충을 추진함.
 - 한·중,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협상전략의 수립과 회담참석, 불법어업 단속, 어업분쟁의 조정 등 행정업무의 확대에 따라 어업협상 및 어업지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어업인들의 사회참여와 장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NGO 협력 및 지원, 사회 정책보험의 개발, 어촌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어촌사회복지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함.
 - 수입수산물의 급증, GMO 수산물의 확대 가능성 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지도를 위해 서해안 지역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증설을 추진함.

IV.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1.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 중심성이 강한 읍, 급 이상의 소도시를 농어촌지역의 ‘개발거점’으로 육성함.
 - 산업시설, 유통·문화·복지·생활관련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배후 농어촌지역과의 교통·정보망을 구축함.
-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정주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함.
 - 전국의 4만개가 넘는 모든 마을에 대한 분산 투자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개발의욕이 높은 마을을 선택하여 지원함.
 - 마을단위에서의 산업활동, 생활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함.
 -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을 조장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개발대상마을을 선정함.
-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용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이자율은 하향 조정하며 주택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농지 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함.
 - 노인용 주거단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주택개발사업 등을 추진함.
- 운송업자 중심의 농어촌 대중 교통 운행주체를 공영화나 주민자치조직으로의 변화를 유도함.
 - 운송회사가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어 계속 운행시키는 것보다는 반납신청을 받아 주민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주민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함.
-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개발업무의 종합적 조정을 검토함.
 - 농어촌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어촌 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합을 논의하며, 「농어촌개발사업 통합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추진시 공동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부처별로 오지 면, 정주권 면 등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농어촌개발업무를 「기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2.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 농어촌의 쾌적성(amenity) 보존을 농어촌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 농어촌 쾌적성의 유지·보존은 국토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장소적 매력을 높여 줌으로써 농어촌관광 등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정비 계획 및 기술을 개발하고, 훼손된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농어촌자연환경종합정비사업(가칭)』등을 신규로 추진함.
 - 특히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도로와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함.
- 농어촌 경관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보전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주민과 경관협약을 체결토록 함.
 - 주민의 경관보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경관정비사업(가칭)』 등을 추진함.
- 농어촌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현행 농어촌지역의 공간 계획체계를 보완함.
 - 장기적으로 새로운 국토법의 틀 속에서 마을계획이 법정계획화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함.
 - 과도기적 단계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방안을 모색함. 즉 계획이 수립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마을계획수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행정적 유인조치를 강구함.

3.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생활여건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미 완료된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
- 어항의 정비 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특히 어촌 정주어항은 개발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어항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함.
 - 신규지정 개발항은 지역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함.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가칭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검토함.

- 어촌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계속 추진함.
- 도서민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용 연료유에 대한 조세감면을 유지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연안여객선 전용 선착장의 시설확충을 지원함.
- 어항구역내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항배후 시설 부지 매각 및 민간자본시설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어항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함.

4.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
 - 도시 수요자의 농어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의 농어촌체험 활동을 장려하며, 농어촌관광 관련정보를 홍보하는 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함.
 - 농어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관광 관련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농어촌관광 경영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 규제를 완화함.
 - 농어촌관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농어촌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함.
-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 완화, 알선, 정보 등을 제공함.
 - 이농 등으로 유향화된 농어촌의 주택을 도시민이 은퇴주택 및 주말용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도시민의 농가주택 보유 또는 구입이 용이하도록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감면 조치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체육·위락시설을 유치하며, 민간기업과 개인이 노인주택단지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함.
 - 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농수산물가공업의 농어촌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원료,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단지의 내실화를 추구함.
 - 민간이 조성하는 소규모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농공단지와 동등한 지원조건을 부여하며, 제조업 위주의 입주업체 제한 규정을 완화함.

- 농공단지 입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계속 유지함.
- 농공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농촌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함.
-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간 · 도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공동화 억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위주에서 직접지불방식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실시함.

5.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 시설로 활용함.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여유시설(공간)을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함.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함.
 -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시설을 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함.
-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함.
 -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복식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수업방식을 개발·보급함.
 - 전공분야가 아닌 교과목을 담당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사 인력풀(pool)제를 최대한 활용함.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함.
 -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촌 학교에 우수하고 사명감이 넘치는 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
 - 농어촌 교직원의 사택 신·개축을 통해 교사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 등을 확대함.
-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젊고 유능한 교사인력의 농어촌학교 근무를 유도함.
- 농어촌 출신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함.
 -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권장함.
 -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도시유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기숙사 건립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함.
- 농수산계 후계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함.
 - 9개 도별로 자영농고, 각 해역별로 자영수산고를 1개교씩 지정하여 교육인적 자원부와 농림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협력학교로 집중 지원함.
 - 자영농수산고 중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에는 전문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농수산계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의 전문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6.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보장함.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를 확대하고, 이동진료차량 등을 확보하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보건지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의료차량 등을 보완하며 공중보건학의사의 숙소 개·보수 등을 지원함.
 - 노인 및 거동불편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하고, 방문보건의료기기세트와 같은 기본 장비를 완비함.
 -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지역은 순회진료를 강화하여 기초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함.

-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설,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농어촌지역 119 구급대 차량에 응급구조사의 동승을 제도화하고, 인근 보건지소나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응급 협조체계를 구축함.
 - 도서지역은 군경, 행정관청, 어업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선박 등을 연계하여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함.
- 농부증과 같은 농어촌지역에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함.
 - 과도한 영농 또는 영어 활동을 장기간 지속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부증(어업인 포함)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대학병원, 연구기관 등과 제휴하여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함.
 - 농부증과 같은 농어업인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건강관리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7.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은퇴 여건을 조성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 재산, 부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을 조정함.
 - 농업소득을 조사함에 있어서 농축산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을 실사하거나 합리적인 소득추정 방식을 도입하며,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차등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단일화하고, 보험료 경감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
 - 향후, 지역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업인과 직장인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함.
 -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자료 구축 추세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함.

-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폐경 농지, 빈 축사, 사용되지 않는 수산양식장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경우 소득 관련 보험료를 조정(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현재 일반 농어촌과 도서·벽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 폭(22~50%)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의 특수보육서비스를 강화함.
 -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탁아방으로 활용하되 농어촌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농협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농가도우미제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등을 개선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농가도우미제도의 대상범위 확대 및 활용기간 연장은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어가도우미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확산시키고 내실화를 추진함.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이 농어촌에 적합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경로당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함.
 -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사업”은 시설 확충 및 관리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대책을 강구함.
 - 경로당·노인정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비 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 문화진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함.
 - 문화복지시설들을 상호 연계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복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
 -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면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어촌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함.
 - 법안에 농어촌 사회보장,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농어촌 교육서비스 등의 증진 및 농어촌 생활·문화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본 문

제1장 농어업 · 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제1절 '90년대 정책의 평가

1. 농수산정책의 성과와 한계

가. UR 타결을 앞두고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을 본격 추진

- 우리나라 농수산정책은 1980년대 말까지 국내 문제에 치중하여 개방화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90년대에 들어 UR 타결을 앞두고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으로 개방화 · 국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농정의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됨.
-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1992~'98) 착수, '94년 「농어촌특별세사업」(1994~2004) 등으로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표 1-1〉 '90년대 농수산정책의 전개과정

연 도	정 책 전 개
1990.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
1991. 7	농어촌구조개선대책(총 42조원 투자계획) 발표
1993.12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6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농어촌발전특별세사업(총 15조원) 신설
1995. 1	WTO 체제 출범
1997.12	외환 · 금융위기 돌발, IMF 관리체제 진입
1998. 3	국민의정부 농정개혁위원회 설치, 부채대책 수립
1999. 2	농업 · 농촌기본법 제정 수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2000. 7	통합농업협동조합(농협,축협,인삼협) 출범
12	WTO 농업협상 제안서 제출
2002. 1	DDA 협상 개시

- WTO의 출범과 새로운 어업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분야의 종합적 증장기 정책으로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 1999년에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함.
-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로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됨.
 - 정부기구와 관련조직, 협동조합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농정의 기본틀인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함.

나. 투융자확대로 농업성장기반이 구축되었으나 구조조정 미흡

- 국가예산 대비 농림부문 예산 비중은 1990년대 초 7~8%에서 '90년대 후반에는 10~11%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고정자본 형성액에 대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농림어업 GDP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함.
 - 2000년도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4.7%인데, 총고정자본 형성 중 농업비중은 6.8%에 달함.
 - 투융자 확대로 토지개량 자본, 건물·시설 자본, 농기계 자본 등을 중심으로 자본축적 속도가 가속화됨.
- 경영의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생산효율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체가 증가함.
 - 농업성장율이 '80년대 후반 부(負)의 성장에서 '90년대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94~'01년간 평균 2.7%의 성장률을 달성함.
 - 논농업은 대농층으로 농지가 집중되어 2ha 이상 농가의 논면적 비율이 '90년 16.8%에서 2000년 33.6%로 늘어났고, 시설원예, 과수, 한육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에서도 전문경영체제가 성숙됨.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적 공급체계가 확립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이익이 증대됨.
 - '95년 이후 농산물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며, 유통인프라 확충과 물류개선으로 유통효율이 향상됨.
- 구조개선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노출됨.
 - 구조정책과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경영체가 온존하는 결과를 초래함.

- '90년대 초의 '구조개선 농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소농 농정' 또는 '소득 농정'으로 중점이 이동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상실함.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설계주의 정책과 하드웨어 및 생산분야 중심의 투융자 지원의 부작용과 한계도 드러남.
 - 농림수산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량권과 재원이 미흡하여 투자효과가 적음.
 - 정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의 폐해가 노출되었으며, 설계주의적 접근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함.
 - 생산기반, 기계·시설 등 고정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90년대 후반의 경제불황을 맞아 경영수지 악화 및 부채고정화를 초래함.

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구조정책의 성과와 한계

- '90년대의 수산정책은 '80년대까지 지속되어 온 고도성장정책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지속어업의 실현과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의 재편이 핵심이었음.
 - 지속어업의 실현을 위하여 어선감척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과잉어획노력량에 의한 자원고갈의 위험을 억제함.
 - 친환경적 바다목장사업의 추진과 인공어초 및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수산자원조성의 기틀을 마련함.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기능성 신물질 개발, 가공산업 육성 등 첨단수산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어업경영이 효율화되고 부가가치가 향상됨.
-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가공기반 및 유통정보 인프라의 취약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제약을 받음.
 - 수산자원의 감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어업노동력의 노령화로 수산업의 역동적·지속적 발전을 제약받음.
 - 수산업의 직업적 매력이 저하하여 수산업 승계의 단절이 우려되고 있음.
 - 어업제도의 모순과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수산업 발전을 제약받고 있음.

라. 지역개발 격차의 온존과 복지제도의 미흡

- 기초생활환경 정비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농어민에 대한 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 농어촌생활용수, 도로 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마을 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
-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제도를 마련함.
- 생활개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도시와의 교육·문화적 격차가 확대되어 젊은 인력의 유출이 늘어남.
 - '92~'98년간 농어촌 복지·생활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함.

2. 농어업·농어촌의 실상

- '90년대의 투융자 확충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생활 개선 및 복지증진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가. 식품공급력의 양적·질적인 하락 추세

-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자급하고 있으나 양곡 자급률 및 전체 식품의 칼로리 자급률은 계속 하락 추세임.
 - 양곡 자급률: ('70) 80.4% → ('90) 43.1% → ('00) 29.7%
 - 칼로리 자급률: ('70) 79.5% → ('90) 62.6% → ('00) 49.3%
- 수산물의 자급률도 '9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서, 어패류는 '99년 이후 국내 소비를 국내생산으로 충족하지 못함.
 - 어패류 자급률: ('75) 136.0% → ('90) 127.3% → ('00) 87.4%
- GMO 식품, 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에 비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미흡함.
 -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나. 미래 농어업의 성장동력 및 경영주체가 취약

- 쌀, 축산, 과수, 채소 등 종래의 농업성장을 주도한 품목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취약함.
 - IT, BT 등의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벤처농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전업농 계층의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령·영세 농어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며, 미래농업을 담당할 인력구조가 취약함.
 -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 ('95) 25% → ('00) 33%
 - 0.5ha 미만 농가 : ('90) 483천호(27%) → ('00) 441천호(32%)
 - 60세 이상 어업종사자 : ('90) 13% → ('00) 26%
 - 1톤 미만 어선 비중 : ('90) 35% → ('00) 39%
- 수산자원의 남획과 관리의 미흡으로 '94년을 정점으로 어업소득의 원천인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음.
 - '94~2001년간 어업생산은 연평균 1.7% 감소함.

다. 농어가소득의 불안정과 정체

- 수입개방 확대, 농업의 전문화 등으로 인한 경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경향임.
-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외소득 기회가 적어, '90년대 중반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도농간 소득격차: ('90) 97.4% → ('00) 80.6% → ('01) 75.9%
 - 도시어촌간 소득격차: ('90) 88.5% → ('00) 65.9% → ('01) 70.6%
-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수입개방 확대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가속화됨.
 - '95년까지는 공산품에 비하여 농산물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으나, 그 후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라. 생산성 중시로 인한 환경부하 가중

-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대되고, 과밀한 연안양식으로 해양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NPK 성분량으로 연간 84만톤의 화학비료가 투입되고 있으며, 연간 1,200만톤의 사료가 수입되어 4,600만톤의 분뇨가 발생함.
 - 양식어장의 과밀과 약제의 과다 사용 등 어장환경이 악화됨.
- 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마.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어촌사회의 활력 저하

- 농촌사회의 급격한 과소화 진행과 노령화로 지역경제 및 사회집단으로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됨.

- 1985~2000년간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읍면 352개(24.9%)임.
-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촌의 수용태세가 부족함.

바. 농어촌의 정주여건과 복지기반의 미흡

-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기반 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과 문화여건의 불리로 청년과 여성의 정주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 노령층,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하여 영세·고령 농어가가 농어업에 잔존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함.

제2절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사회 변화와 흐름

가. 정보화·지식기반 경제화

- 과거 추세의 연장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21세기에 가치창조의 핵심수단은 정보화와 이에 기초한 지식기반경제화임.
 - 정보화는 국가사회의 틀을 변화시키는 촉매로서 정보가 사회의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교환수단으로 정착될 것임.
 - 세계는 이미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도 장기·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식의 창조 및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 인터넷 혁명으로 소비자 행태가 변화되고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되어 시장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급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웹 라이프스타일의 도래로 사회 및 조직의 네트워크화 가 광범위하게 확산됨.
 - 특히, 유통산업은 온라인화와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구조와 내용에 혁신적 변화가 가속화할 것임.

나. 세계화

-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이 해소되고 열린 세계가 실현되어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됨.
 - DDA, FTA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될 것임.
- 강한 국가·기업·조직만이 생존하는 무한경쟁(mega-competition)이 본격화될 것임.
 - 미래사업에 대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면 글로벌시장에서 무한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구시대적 발상과 태도에 안주하는 기업·조직은 도태될 것임.

다. 분권화

- 정보화·세계화로 권력분산이 가속화하여 분권화된 국가·기업조직만이 기민

한 대응과 효율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세계화 속에서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glocalization)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등 위계구조로부터 네트워크구조로 사회시스템이 변화할 것임.
- 분권화의 진전으로 이해관계의 대립보다는 상생에 입각한 사회공존의 논리가 중시될 것이며, 인간, 생명,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환경산업, 생명산업이 유망분야로 부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 강조될 것임.

라. 고령화 사회의 도래

- 65세 이상 노령층이 7.2%('00)에서 15.1%('20)로 급증하여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할 전망이다.
- 실버산업의 부상,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 ·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전개됨.

마.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도시생활의 피로,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할 것임.

2. 세계 농수산업과 정책 동향

가. 생산 중심에서 다기능성 · 환경 중시

- 농정의 이념이 생산량, 생산성, 생산자 소득에 치중하는 생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농산물 · 식품의 질, 농업의 다기능성,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EU는 「Agenda 2000」과 그 이후의 개혁을 통해 농정의 목표를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에 두고 농업, 환경,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임.
- 일본은 1992년 ‘신정책’을 수립한 후 농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 입각한 식료 · 농업 · 농업정책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환경보호, 농촌개발, 안전한 식품의 공급 등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음.

- 수산부문에서도 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구축이 중시되고 있음.
 - 미국은 수산부문의 전략적 목표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보호종의 복원, 건강한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처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EU의 공동어업정책(CFP) 개혁에서는 기본 방향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개발에 두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시장 개입의 축소와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 농수산 지원정책 체계에서 시장개입적 수단이 축소되고 직접지불제도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농수산물에 대한 국경보호와 국내에서의 가격개입형 보조금 정책에 기본적인 제약이 강화되는 추세임.
 - 수산업에서는 농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어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조도 수산자원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직접지불제는 농수산업이 가지는 다양한 다기능성에 대해 사회가 공공의 재정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의 달성을 꾀하는 것임.
- 선진국에서도 농수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부하를 적절히 통제하고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적 규제 이외의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운영되고 있음.

다. 지역성을 고려한 파트너쉽

- 정책의 고안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성의 고려가 중시되고 있고, 지역 내 주민과 정책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EU의 LEADER, 일본의 중산간직불제, 미국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특성의 파악과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에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임.

라. 소비자 및 식품 안전성의 강조

- 광우병(BSE) 파동, 비브리오 패혈증 등을 통해 충격적으로 나타난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각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에 힘을 경주하고 있음.
- EU 전체 차원에서 식품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농정담당 부처들의 명칭 · 임무 · 조직에서 식품안전성의 비중이 증대됨.
- 일본도 ‘BSE 위원회보고’를 통해 식품관련 위험의 분석, 평가 · 관리 ·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하고 있음.

3. DDA 협상 및 FTA의 동향과 전망

가. WTO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

- WTO 농업협상은 협상의 3대 지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에 대해 2003년 3월까지 협정문안(modality)을 확정지을 예정임.
- 협상 타결 방향은 UR 협상결과보다 시장개방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관세감축 폭은 증가하고 고율관세에 대한 한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국내보조 감축률은 높아지고 허용보조의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 개발도상국에 대해 의무기간과 이행 폭에서 우대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위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임.
- WTO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개발도상국 지위유지 문제와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 문제임.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는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으나, UR 때보다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분적 인정, 개발도상국의 세분화(최빈 개도국, 선발개도국 등)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개방의 폭이 늘어나 우리나라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 물량을 협상 상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확대하여야 함. 따라서 관세화 유예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음.

나. WTO 수산물 협상의 동향과 전망

- WTO는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철폐와 관세인하를 촉구하고, 수산보조금 문제가 협상의제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보조금이 금지 또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부정적인 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 수산분야 보조금 철폐에 대한 합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은 필연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 FTA 동향과 전망

- WTO 다자간 협상 이외에 시장개방을 선도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지역경제통합임. 지역경제통합 초기 단계인 FTA를 통한 소수 국가간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멕시코, 아세안,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도 구상하고 있음. 이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대부분 FTA를 맺어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에 합류하게 됨을 의미함.
- FTA 체결은 상대국에 따라서 또, 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특정 부문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협정체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외교적 신뢰 저하, 사회적 마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 등은 국내 이익집단간의 협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과의 FTA는 그동안 양국간의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포럼 단계를 거쳐 ‘산·관·학 공동연구 포럼’ 단계를 진행중임.
 - 2004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포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나, 시장개방, 직접투자, 비관세장벽, 무역수지 개선 등에 대한 일본의 적극성 부재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지역경제통합 작업은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을 장기적 목표로 하되, 그 이전에 칠레, 멕시코, 미국,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멕시코와의 FTA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며, 동북아시아 역학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 추진 이전에 아세안이나 아세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 등을 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라.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최근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무역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수출국으로서 그 지위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어업 생산기술이 급속히 향상되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겸비함으로써 일본 등 아시아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과 경쟁할 소지가 큼.
- 일본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3국간 생산요소의 보완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그리고 3국 주변의 동북아 국가들의 자연자원과 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근 한·중·일 3국간의 경제공동체 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특히 2001년 11월 부르나이에서 열린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를 연구의제로 채택함으로써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 수준 면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4. 남북관계의 변화

-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는 여러 곡절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보임.

-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인도적 문제의 해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교류 활성화, 당국간 대화 개최 등 합의를 담고 있음.
-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처해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인 생산 기반 복구 및 생산성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에 의한 영농자재 지원이 식량증산 및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에 대한 농산물 지원은 최근 가격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함.
- 그 동안 인도적 차원의 비료, 식량 지원 및 민간교역 활성화로 남북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이며, 전체 교역량 가운데 농산물 교역이 약 4할을 점유함.
 - 현재 반출되는 주요 농림산물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합판, 제재목 등이고, 반입되는 품목은 채유용 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송이버섯, 표고버섯, 기타 견과류 등임.
- 최근 북한 수산물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로와 해면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등에 대한 합작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음.
 - 2001년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은 전체반입량의 약 1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로 확대되고 있음.
 - 북한 동해안 수역의 은덕어장 공동어로합작사업 등을 요청함.
- 남북한 경제협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수산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함.

제3절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기조

1. 패러다임의 전환

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도시민 지향의 농어업으로 전환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함.
-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함.

나. 정부 주도에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

-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서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생산기반 정비, 기술개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을 담당함.

다.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개별 농어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부 구매 등 증산과 가격지원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정책을 전환함.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소득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쟁력 제고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의 혁신 추진으로 달성

-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처리 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함.
- 대형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유통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표준화된 품질의 농수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생산자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우선하는 농수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함.

마. 지역개발과 복지정책의 강화로 쾌적하고 열린 농어촌공간으로의 전환을 지향

- 편리하면서도 농촌다운 어메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간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함.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함.

2.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가. 농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

- 농어업 발전은 개별 경영체의 창의적인 노력과 경쟁에 의해 가능하나, 140여 만 농어가 문제를 모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 경영규모 확대와 전문화를 통한 농업적 발전 외에, 농외취업이나 사업경영을 통한 겸업화나 탈농의 방향도 가능하며, 노령농가의 경우 은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산업구조 재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농가의 발전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경영체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농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력 있는 경영체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농지·인력육성 제도를 정비하며, 경쟁에서 탈락하는 노령·영세 농어가에 대한 사회보장책으로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함.
-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상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함.
- 생명과학(BT), 정보기술(IT), 환경공학(ET)을 접목하여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을 활성화함.

다. 소비자를 지향하는 식품산업 시스템을 구축

-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안전성 기준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물의 원산지, 품질, 규격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함.
-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으로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획득함.

라. 수산자원의 자연재생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재편

-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 방식에서 계획수립, 집행, 감시의 전과정에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함.
-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
-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요인이 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추진함.

마.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관측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관련 정보는 물론, 소비자와 주요 수출입국의 정보도 제공하여 농어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금 조성 등에 의해 적정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함.
- 농어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불제와 농어업 보험제도를 확충함.

바.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

- 건실한 도시자본이 농어촌지역에 흔쾌히 투자하고 도시민이 불편 없이 농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함.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늘리고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는 농어촌관광을 정착시킴.
-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으로 입지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중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취업기회를 확충함.

사. 농어촌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주거공간이 되도록 생활환경 정비와 복지대책 확충에 집중

- 중심지의 소도읍을 집중 정비하고, 마을단위 정비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여 농어촌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함.
- 초등교육 및 기초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함.
- 오지 주민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정주유인을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조건을 조정하여 영세·고령 농어가의 은퇴 여건을 마련함.
- 농어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함.

3. 농어업·농어촌의 비전

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지와 수산자원이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생산·경영기술개발 투자가 중점 추진되어 식품의 공급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소비자의 선호가 생산에 반영되는 생산과 유통체계가 구축됨.

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전업적 경영체가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게 됨.
- 수확후 관리(post-harvest)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식품산업, 가공과 외식 산업, 농어촌관광 등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발전함.

다. 농가유형·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 확충

- 경영체별 및 품목별로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가격등락, 자연재해 등 경영불안정 요인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중소 농어가의 농외취업 기반 확충, 노령 농어가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을 보완함.

라.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됨.
-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개방확대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조치가 이루어짐.

마. 더불어 사는 열린 농어촌 공간

- 농수산업자와 타산업 종사자, 은퇴인구 등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 농어촌의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함.

제3장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1절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1. 검토 배경

-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국제기구의 어업자원관리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UN, FAO 등 국제기구에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고, 공해뿐만 아니라 EEZ 수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업자원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우리의 중요한 자연자원인 어업자원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감소가 심화되고 어업협정으로 어장도 축소되었음.
 - 연근해어업은 자원량에 비하여 20%~30% 과도어획되고 있고, 어선 톤당 어획량도 1974년 5톤에서 2001년 3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어종인 고등어의 평균체장도 1975년 32cm에서 2001년 27cm로 소형화되는 등 자원남획현상이 뚜렷함.
 - 일본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조업어장이 943천km²에서 375천km²로 약 60%가 축소됨.
- 따라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유어낚시·스쿠버다이빙 등 바다레저·관광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TAC 어종의 확대를 포함한 효율적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실시하고 어업인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효율적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원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평가자료의 확보가 곤란함.
 - 연근해 어업자원을 조사·평가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업자원 연구인

력은 27명에 불과하고 연근해 자원조사용 전용선이 없음.

※ 일본 국립수산연구소의 자원조사 연구인력은 300여명이고, 미국 알래스카 수산연구소 자원평가 연구인력은 100여명임.

○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10년까지 20여개 어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조사·평가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 과학적인 자원조사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을 TAC(총허용어획량) 규제제도 실시 어종당 3.5명으로 증가시켜 약 70명으로 확대함.

※ 일본, 미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의 TAC 어종당 연구인력은 약 4명 수준임.

○ 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자원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평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연근해 자원조사용 전용선 및 과학장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700톤급 자원조사 전용선을 2005년까지 2척 확보한 후 TAC어종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연계하여 확충함.

- 자원조사 분석용 과학어탐 장비, 생물생산 자동측정 장비,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함.

3.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실시

가. 효율적인 어업관리 구축을 위한 TAC 어종의 확대

○ 입구규제방식인 종전의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출구규제방식인 TAC 제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 및 어업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함.

- TAC 제도는 대부분의 수산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관리제도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음.

○ 현재 4개 업종, 8개 어종, 40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어종이 소수에 그쳐 자원관리 효과가 미진하므로 연차적으로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어업관리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2010년까지 TAC 대상을 20여개 어종, 2,400여척으로 확대함.

※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TAC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10년후에는 자원이 1.6배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나. 읍서버 제도의 확대 실시

○ TAC 제도의 성패는 TAC 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감시

하는데 달려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제도인 옵서버 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10명의 옵서버가 400여척의 TAC 대상어선의 어획실적을 양륙항에서 확인하고 있으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선상에서의 감시 및 과학적 자료 수집을 위한 승선 옵서버는 부재한 실정임.
-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옵서버를 통하여 어획실적 및 TAC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 TAC 어종을 확대하고 양륙항에서 TAC 실시 어종의 어획량 및 어민들의 TAC 규정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양륙항 옵서버를 확충함.
 - 현행 TAC 어종당 1.25명의 옵서버를 5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어종확대에 따라 2010년까지 총 100명을 확보함.
- 과학적 자원평가를 위한 현장자료 확보와 해상에서의 TAC 준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승선 옵서버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TAC 대상어선 2,400여척중 10%를 표본승선 조사하기 위하여 승선 옵서버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60여명의 승선 옵서버를 확보함.
- ※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 수산국에서는 양륙항 옵서버뿐만 아니라 승선 옵서버도 활용하여 효율적인 TAC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확대

가. 인공어초사업 조기완료 및 사후관리체제 정비

- 자원조성 효과가 크고 어업인 및 낚시객들의 호응이 좋은 인공어초사업은 1971년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 시설적지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초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설적지에 대한 인공어초사업을 조기완료하고 기존 시설어장의 보강이 필요함.
- 우리나라 연안의 인공어초 시설적지 307천ha중 미시설 해역 150천ha에 대하여 2010년까지 인공어초 설치를 완료함.
- '70~'80년대에 시설한 어초어장을 포함하여 전 연안수역에 대한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2004년까지 실시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기시설어장에 대한 보강을 실시함.
- ※ 인공어초의 수명은 약 30년으로 '70년대에 시설한 인공어초는 노후화되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

- 인공어초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역 특성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를 개발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인공어초를 개발하고, 어로형, 낚시형, 수중체험형 등 목적형 인공어초어장을 조성함.
 - 연안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인공어초 사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전자해도 작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어업인 및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함.
 - 기능보존을 위해 폐어망 수거 등 인공어초어장에 대한 수역관리를 실시하고, 어업인 및 레저·관광객들의 인공어초어장 이용·관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함.
 - 갯녹음(백화현상) 발생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산자원의 증강과 인공어초어장의 효과제고를 위하여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바다의 숲이라 일컫는 해중림 조성사업을 실시함.

나. 생태보전형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확대 추진

- 어업, 유어낚시 등 날로 증가하는 수산자원의 이용에 부응하고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대폭 확대 및 추진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 현행 연간 30여 억원의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를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 방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지방류를 통한 방류효과 확인 후에 사업을 실시하고, 중간육성후에 방류토록 함.
 -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종묘생산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및 어업인단체는 민간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구입하여 방류토록 사업체제를 개편함.
- 인위적인 종묘방류는 자연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보전형 종묘방류사업으로 전환함.
 - 조피볼락·넙치 등 획일적 어종으로 한정된 방류를 지양하고, 해역별 고유어종 중심으로 종묘방류를 실시함.
 - 생태보전형 종묘방류를 위하여 자연생태에 적응력이 강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류용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함.

다. 해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바다목장 개발

-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다목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바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바다목장은 해양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방류에서 어획에 이르

는 전과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시스템으로서 가장 첨단
의 자원조성 수단임.

- ※ 일본에서는 20여년 전부터 바다목장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있고, 미국을 비
롯한 선진 수산국에서도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바다목장 조성에는 많은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개발단계이므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해역별 바다목장모형을 개발하여 전 연안
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년까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다도해형(남해안, 통영·여수), 갯벌형(서해
안), 관광형(동해안), 수중체험형(제주도) 등 해역 특성에 맞게 5개의 해역별
바다목장 모형을 개발함.
 - 1998년부터 20km² 규모로 개발을 시작한 통영바다목장은 2006년까지 남해안
다도해형으로 개발을 완료함.
 - 전남다도해형은 여수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본격 개발하고, 동·서·제주형
은 2003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함.
 - 해역별 모형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바다목장을 확대 개발하되, 재
원은 지방비 뿐만 아니라 국비 및 바다목장 이용자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
달함.

5. 어업인 참여를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중심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원관리의 효과를 제고하고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해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
한 다양한 형태의 자율관리어업 모형을 개발·보급함.
 - 한국수산회 등 민간기구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성공사례 등
에 관한 홍보, 분쟁조정 및 어촌계장과 어업인 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해역별, 어업별, 유형별로 자율관리어업의 대상 및 목표, 관리방법, 사업주체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모형을 정립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도·교
육·홍보의 교재 및 자료로 활용함
- 자율관리어업 체제의 육성 및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 자율
관리어업 단체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관리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육성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조성 및 보호, 어장환경개선, 생산관리 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토록 함.
- ※ 일본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의 형태인 자원관리형 어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991년부터 연간 약 600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6. 수산자원 관리·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 일본 등 수산 선진국은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수산자원의 적극적 관리·조성 및 사후관리와 TAC 제도의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설립함.
 - 센터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특수법인으로서 수산자원 관리·조성 관련 국가(공공)업무를 수행함.
 - ※ 법적 근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센터의 주요기능은 자원조성수면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관리, 자원조성사업의 집행,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읍서버 등 TAC 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함.
 - 센터의 조직은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수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9개소(본부 1, 동해 2, 서해 2, 남해 4)를 연차적으로 설립하고, 인원은 조사·관리 분야 중심으로 100여명으로 함.
 - 2003년 상반기까지 설립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 하반기에 센터를 설립함.

제2절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 검토 배경

- 수산업은 생산수단의 현대화, 대규모화에 의한 증산정책을 장기간 추진해옴으로써 '90년대 이후 어업자원이 크게 감소하였고, 한·중·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연근해 조업어장의 축소와 각종 국제수산물기구의 수산물 포획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연근해어업의 자원회복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수산자원의 자연갱생력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수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원양어업은 주조업어장을 상실한 일부업종에 대한 조업구역의 변경, 어선감척 등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적정선복량 수준으로의 조정에는 미흡하며, 노후어선 대체사업의 부진으로 어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양식어업은 장기지속적 어장이용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저하와 값싼 중국산 활어를 비롯한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 양식산업의 생산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 수산물 생산과 안정된 어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연근해 및 원양어업 생산구조의 개선과 양식물의 가격 및 품질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어업의 종합적 조정이 필요함. 아울러 이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가.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연근해 어선을 감축

-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획강도를 유지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을 추진함.
- 근해어선은 기존 감척계획에 의하여 2004년까지 감척을 완료함.
- 연안어선의 경우에도 2003년까지 연근해어업 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어선 감척계획을 수립함.
- 연안어선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 또는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하되, 과도한 감척은 불법어업 조장 등 사회적인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체 어선의 10% 수준인 6,300 여척을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감척함.

- 업종별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감척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업종별
허가정수를 조정하고, 어선세력의 실질적인 감척을 위해 유휴 어업허가에 대
한 일제 정비를 실시함.

나.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검토

- 감척사업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업이 어려운 생계형 어선어업자가
감척후 어업에 재진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근해어업 감척사
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기간의 휴어기간을 둬으로써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형업종 또는 어업인간 합의가 되는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확
대 추진토록 함.
 - 휴어기간은 업종별로 매년 어기의 20% 내외로 설정하되, 시기는 수협 등 생
산자단체·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휴어제를 실시하는 업종이나 지
역에 대해 정부가 휴어에 따른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추
진토록 함.
 - ※ 일본의 경우 ‘어획노력량 삭감 실시계획’에 의한 휴어기간의 소득보전을 실
시하고(2003년 22억엔) 있고, EU에서는 대구류 어족보호를 위한 금어기 설
정 및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음

다. 어업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어획노력 제한

- 어업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어업경쟁력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
의 기관마력과 연안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망류어업부터 기관마력을 제한하고, 다른 어
업에 대하여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
 - 연안어선의 최대 톤수를 3톤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
여건과 어업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함.
- 과도한 어구 사용에 따른 자원남획, 어업경비 증가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어구 사용량을 제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어구사용 규모는 대상어종, 지역 및 어업경영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어선규모별로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추진함.
-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우선적으로 제한하되 자원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함.
- 통발·자망·안강망어업 및 일부 정치성구획어업의 어구에 대하여 허가사항, 어업자명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실명이 없는 어구는 강제 철거하도록 함
-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 및 수입개방 등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성, 안전성 및 편의시설을 갖춘 표준어선형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근해 업종별로 표준어선형 및 요소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함.
- 인망류 어선 2종 (연·근해 어선 각 1종) : 2005년까지
- 통발류 어선 2종 (연·근해 어선 각 1종) : 2008년까지
- WTO 보조금 협상에 따라 일반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가 규제될 경우, 노후 어선을 표준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에 한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3.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가. 환경수용력 및 수급을 고려한 양식생산 조절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력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양식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양식어장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함.
 - 양식어장 실태 및 기초환경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주요 해역별 환경수용력을 산정하여 양식어장을 재배치하고 무면허 및 초과 양식시설물을 철거함.
 - 양식어장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식시설의 철거 및 재배치 비용과 정비기간 중의 생산감소에 따른 최소생계비를 지원함.
-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양식어민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식수산물 유통 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하여 양식수산물 생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시장상황에 따라 양식어민들이 스스로 양식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에 관한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식 수산물 관측제도를 도입함.
- 어업인의 자율적인 생산조절만으로 양식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DDA협상 이후 국내 양식어업의 존립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지불제의

도입문제를 연구·검토하여야 함.

- 양식어업의 생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타당성 연구·검토 : 2003~2004
- 생산량 조절 및 양식어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촌계 및 수협소유 해조류 양식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해조류 양식어장 관리주체를 수협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어촌계 및 수협 소유의 해조류 양식어업(면허어업)을 구획어업(허가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어촌계와 수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조류 양식어장 관리주체를 지구별 수협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별 어장개발·이용, 양식 품종 선택 및 관리를 수협이 담당토록 함

나. 환경친화적 양식어업으로 재편

- 해양오염 및 장기 연작으로 인하여 저하된 양식어장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의 개선 및 휴식년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소생계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개발 및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확대실시하며 양식시설 밀집지역에 폐기물 집하시설을 확충함.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휴식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최소생계비의 지원을 검토함.
-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보급과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함.
 -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급이 시범어장의 운영을 통하여 배합사료 사용을 촉진함.
 - 경제적인 고품질 배합사료의 국내개발 보급과 연계하여 생사료 사용을 규제함.
 - 어류질병 예방을 위한 고효능 백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어류질병관리 DB구축 및 2004년부터 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시행에 따라 어류질병관리 체계를 확립함.
- ※ 노르웨이에서는 단위면적당 사료사용량을 규제하여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 기반시설 확충, 방제기술 개발과 장비도입 등이 필요함.

다.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양식어장 개발

- 해외 양식수산물의 생산증대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저비용의 고급수산물을 생산·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어업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양식어장을 개발함.
 - 해외 양식어장 개발적지 및 투자 타당성을 조사하고, 2005년 이후에 투자의 안정성 검증 및 현지 고급어종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함.
 -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외국의 어장과 노동력을 결합한 국제분업화 형태로 추진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

4.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업질서 확립

- 국내 및 외국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및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체제를 보강함.
 - 현행 94척의 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하고, 단속장비를 대폭 확충함.
 - 현재의 부산소재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어업지도본부로 개편하고 서·남해안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지도선 관리업무를 효율화함.
- 어선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불법어업의 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인위적인 단속만으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어업허가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어구·어법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내에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을 보완한 ‘어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업종간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출항 단계에서 불법어업을 봉쇄하며, 어선의 조업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불법어업자의 전업유도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불법어선의 강제매입 및 수용을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함.
- 국가의 단속위주에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원양어업 구조조정 및 해외 신어장 개척

- 국제협정에 따른 어장상실로 인하여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과잉상태에 있는 원양어업의 업종별 감척사업 추진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 참치연승어업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어업으로서 대체선 건조 지원정책을 추진함.
- 어업협정으로 축소된 조업어장을 대체하고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하여 해외 신어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1. 검토 배경

- 신어업협정, WTO/DDA, 책임 있는 어획후 처리 등 수산물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수산업은 수산식품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수산정책은 생산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선호의 반영과 수산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음.
 - 기존의 유통·소비정책을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는 수산식품산업정책으로 전환·확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유통환경의 변화로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수산물시장에 요구되는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지만, 시설낙후와 부족, 무질서한 거래관행 등으로 인해 수산물 시장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음.
- 수산물가공산업은 국내수산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수급 불안정, 위생기반 취약 등 가공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음.
-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으로의 변화, 유통효율성 확보, 가공산업 육성을 망라한 수산식품산업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다변화하는 소비자선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 및 안전성의 확보, 수산물 유통기반의 재구축 및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의 구축, 북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허브(Hub)시장의 구축 등이 필요함.

2.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 공급 및 안전성 확보

가. 수산물 품질제고 및 가공산업 지원강화

- 수산식품의 차별화된 품질유지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품질 인증제도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함.
 -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시 품질인증업체에 대해 우선 배정하고, 수산물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확대·발굴과 더불어 인증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조기 정착토록 함.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수산물원산지증명제의 도입을 추진함.
- 전체 수산물 GDP의 35.5%를 차지하며 국내수산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이용하는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요함.
 - 수산물 가공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수급조정을 위해 주요 가공제품의 생산·공급·재고·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가공제품을 개발함.
 - 소규모 가공업자간 공동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역어업인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유도함.

나.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강화

-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하되, 수산물 가공업체의 급격한 비용증가 및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도입을 추진함.
 -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약 400개)에 대한 HACCP 표준모형을 개발함.
 - HACCP 적용업체에 대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우선 지원함.
- ※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HACCP를 수산물가공업체의 경영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음.
-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고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산물 수입 급증 및 불량수산물 반입 증가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가 요구됨.
 -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 및 위생관리 취약국가의 가공공장 국내등록제를 확대함.
 - 수입수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을 국내제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검역업무 급증으로 검사인력 증원 및 장비를 확충함.
- 수산물의 위해 발생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위생안전 위해관리 기능을 강화함.
 - 수산물의 위생안전 모니터링 및 위해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함.

3. 수산물 유통기반의 재구축

가.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유통체계 개선

- 수산물 산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급기능 유지, 가격지지를 위해 공동 출하·포장화 등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산지시장을 육성함.
 - 전국 중요거점 5개소의 거점 위판장을 리모델링하고 대형화하여 산지의 수산물 공급거점간 또는 위판장 간의 연계거점으로 활용함.
 - 나머지 위판장은 현 수준으로 존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설의 자율적 통폐합 및 현대화를 유도함.
- 수도권 도매시장은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 소비지도매시장의 이전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기능을 보완함.
 - 가락시장의 수산물부류는 반입물량에 비해 경매장면적과 물류기반이 부족하여 비용과다 상태이므로 시장의 확대이전이 바람직함.
 - 노량진시장은 시장내 청과시장 부지 매입 및 기존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매 및 가공·포장·저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여 산지와의 연결거점으로 활용함.
- ※ 가락시장은 패류경매를 주차장에서 실시, 경매후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

나. 수산물 물류 및 유통지원체계 개선

-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수산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함.
 - 수산물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을 통한 수산물가공품과 냉동어류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품질규격화·품질표준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혁신 등을 추진하며, 저온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하역기계화 장비 및 어상자 대여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수산물 쇼핑몰의 난립과 비용과다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산물 통합 쇼핑몰과 e-Marketplace 구축을 통해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함.
 -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이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B2C)와 어촌체험관광, 민박, 해수욕장, 바다에 관한 정보를 연계한 바다테마의 종합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통합쇼핑몰은 휴가→바다→해수욕장→먹거리→숙박→교통편→관광지, 저녁식단→수산물→조리법→상품 및 생산자정보→가격→구매 등의 연결을 꾀함.

- 아울러 수산물의 소매거래에만 치중되어 있는 전자상거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의 도매거래, 인력, 기자재, 가공용 원료거래 등 생산요소시장의 전자상거래(B2B)를 위한 e-Marketplace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e-Marketplace는 생산자가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구매부터 판매까지를 한 사이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체제.
- 한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고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업을 수산식품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요함.

다. 수산물 소비촉진 유도과 홍보지원

- 수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산물의 효용성에 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원함.
 - 공중파·케이블 TV의 요리·지역특산물 소개 프로그램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함.
 - 군납, 각급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확대·지원하여 잠재적 수산물 수요층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활어회에 치중한 회 소비형태는 비용과다, 물류효율 저하, 가격상승 등 소비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회 소비문화의 전환을 위하여 생선회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생선회 가공공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뿐만 아니라 비브리오, 콜레라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위축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4.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 구축

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개편

- WTO에 의하여 부정적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비축사업 기능을 민간 이전하고, 수매비축사업의 운영효율화 통하여 WTO협상에 대응하고 생산자 가격지지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꾀함.
 - 정부수매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함.
 - 지금까지의 사전적 수매 물량 결정방식을 생산 및 시장여건에 따른 탄력적 물량결정과 방출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수매비축대상 품목 중 수매비축을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가 떨어

지는 수산물에 대하여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함.

- 수매비축은 생산의 계절적 집중 혹은 일시적 집중을 비축을 통해 해소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과잉생산 상태에서는 시장물량이 과잉되므로 효과가 떨어짐.
- 따라서 김, 미역 등은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정부비축사업만으로는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김을 대상으로 유통협약제 시범사업 실시 후 미역, 어류 등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유통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출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과잉생산물 폐기비용 및 자조금 조성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함.

※ 미국, 프랑스, EU 등 선진국 및 국내 농업부문에서 시행중.

- 수산물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을 분리·이관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수산물유통정책이 이관되었으나 수산물유통정책의 한 축인 농안기금사업은 농림부가 관리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정부비축사업 등과 함께 유통협약제 등의 추진 등은 농안기금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제개선을 위해서는 농안기금을 이관하여 사업주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 정확하고 신속한 수산물 생산·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업 관측센터를 설립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기회를 확대함.
 - 수산업 관측제도의 경우 어선 어업에 비해 생산량의 불확실성이 적은 양식어업을 시범 관측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
 - 아울러 생산 및 유통정보에서 시작하여 추후 재고물량정보, 수출입정보, 경합수산물 정보, 사료수급정보 등으로 관측대상 분야를 확대해 나감.
- ※ 농업관측제도는 농업부문에서 '99년 이후부터 시행하여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음.

5. 수산물 Hub시장을 통한 국제거래기반의 확보

- 수산물시장의 국제화와 WTO의 영향으로 국제수산물교역은 질과 양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국제수산물 교역의 중심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음.

- 동북아 수산교역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이용한 물류중심기지로서 부산감천항을 동북아 Hub시장으로 조성함.
-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과 가공단지를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One Stop 체계의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함.
 - 관세부과 유보상태에서 수입물품의 보관, 집배송, 가공제조, 판매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수산물 반출입이 자유로운 국제수산물 물류 중심지로 개발함.
- 수입수산물과 국내 어획물 등을 단순중계가 아닌 가공·포장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물류센터의 기능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 및 정보의 집결 기지를 조성하고, 중소 수산물가공 수출업체를 중점 육성하여 수산물 수출 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감천항의 경우, 수입수산물의 양륙 및 반출기능과 식품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보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한 국제수산물 거래 시장의 형성을 추진함.
- 냉동수산물 및 대량거래 수산물에 대해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국제수산물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기반의 조성을 도모함.
 - ※ 일본에서는 이미 냉동새우의 선물거래, 후쿠오카도매시장의 직접 양륙 등으로 시장선점을 추진하고 있음.

6. 수산물 수출촉진과 수입관리 대책

-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일본시장 등에 대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융통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일본 수입시장에 대한 수출쿼터 교섭을 강화하고, 생식용 생굴 대일수출 조기 재개를 추진함.
 - ※ 일본시장이 우리 수산물 수출의 73%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일 굴수출이 125백만달러에 달함.
 - ※ 일본은 김, 전갱이, 패주, 가리비 등 16종에 대해 수입쿼터를 운용하고 있음.

- 수출원료 구매자금 지원확대 및 적기공급체제를 가동하고, 수산물 단기 물권 담보 금리 인하를 추진함.
-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 급증에 대응하여 관세운용을 통한 수출입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관세율 할당제도 도입과 관세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함
 - 관세율 할당제도는 무역자유화에 위배되지 않으며, 아울러 관세율의 다단계화, 실적관세를 중심으로 수산식품의 품목분류 및 기본관세율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함.
- ※ EU는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자유화와 고율의 관세유지를 통한 역내 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율할당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7. 남북한 수산협력체제 구축

- 최근 북한산 수산물 반입에 따른 업체들의 과당경쟁, 저품질 수산물의 반입, 반입품목 집중에 따른 자원이용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기반시설 지원 및 반입체제를 개선함.
 - 활어 및 선어의 반입 촉진, 반입 수산물의 현지 품질확인 등 실질적 교역 확대를 위해 북한내 수산물 간이집하시설을 설립·운영함.
 - 반입 수산물의 품질 및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북한측 어장 과 가까운 남한측 산지도매시장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직출하 체제를 도입함.
-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단기사업에서부터 민간주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북한측 어획능력의 증대, 능률적인 어획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의 감척어선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남북한의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주체의 수산자원 및 어업실태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 수산인프라의 강화와 단계적 종합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함.
 - 북한 수산업 현황 파악과 통일 대비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북한 수산업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전문연구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4절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1. 검토 배경

- 우리 나라는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정책자금 지원, 면세유 공급,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수협 경영개선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 2001년 현재 수산정책자금의 규모는 영어자금 1조 2,050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004억원, 해외자원생산자금 3,310억원, 농특회계융자금사업비 1,619억원 등 총 2조 983억원임.
- 그러나 최근 WTO, OECD, FAO, UNEP, APEC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등 Fish Friends Group 국가들의 수산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무역왜곡, 자원남획,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WTO 등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규제에 대한 충격의 최소화 및 협상대비를 위하여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분야의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강구하며, 아울러 기존의 세분화된 수산정책사업을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고 재분류하여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산부문에서의 공제 또는 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부문 직접지불제 도입 검토

-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공익적 기능의 유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업의 구현과 생산조정을 통한 양질의 수산물 공급 및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통한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음.
 -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된 방안이며, 보조금 규제 추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조의 형태인 만큼 수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농업부문의 경우, “경영이양직불제(1997)”, “친환경농업직불제(1999)”, “논농업직불제(2001)”를 도입·시행 중임.
- 특히 WTO/DDA 출범에 따른 국내수산물 보조금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직

불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그러나 수산부문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보조금협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DDA의 협상추이에 따라 환경어업 직접지불제, 어업자원보전직접지불제, 어업생산조정 직접지불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
- ※ EU의 경우, 수산부문의 소득보전, 재해보상, 벽지지원, 실업지원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상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있음.

3. 영어자금 공급제도의 개선

가. 수산정책사업의 재분류 및 단순화 도모

- 기존의 세분화된 수산정책사업을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방지 등 효율성 제고 및 시행의 간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수산정책자금중 상당수는 농업부문과 혼재되어 있어 수산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정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수산업의 특성상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이 곤란한 실정임.
- 현행 국내 수산정책사업을 필요시 사업별·재원별·시행주체별·금지 가능성별·직불제 전환 가능성별로 재분류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 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도록 함.

나. 영어자금 중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편

- WTO협상에서 보조금 기준에 적합하고 수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어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아울러 지원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어업용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영어자금제도는 현제도를 유지하되, 국제기구 규제를 피하고 국내어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관련 각종 기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적정규모로 기금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수협을 통한 재정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방식을 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WTO 논의의 향방에 따라서는 수산발전기금을 민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다. 어업인 신용보증 및 담보제도의 현실화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규모 및 범위 확대와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 담보물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 경영규모의 확대, 기술 및 자본집약화에 따라 경영단위당 소요자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이 확보되어도 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용조사·보증서 발급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금액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재해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양식중인 수산동식물’, ‘양도가능 개별어획할당량(ITQ)’ 등을 담보물건에 추가하도록 유도함.

라. 수산정책자금 부실채권 대손보전제도 보완

-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손실보전 제도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정책수행,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대출기관의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하고, 정부와 대출기관이 기금출연을 분담하도록 하며, 현재 사전 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완장치로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역할을 강화함.

4.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

- 최근 DDA 논의에 따라 농·어업용 면세유, 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수산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 현행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이 필요함.
- 면세유류 공급 수혜액은 최근 3년평균 약 4,800억원에 달함.
- 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 등 수산세제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DDA 협상결과 세제지원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환급 또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 2002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어업용 석유류 면세기간은 2005. 6. 30까지 2년 연장되었으며, 2005. 12. 31까지는 25% 과세토록 되어 있음
- 사후환급 또는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자원조성·어항건설

등 어업에 투자 또는 회원조합에 지원하여 운용수익을 어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함.

5. 수산부문 공제·보험제도 도입

- 어선등급에 따라 어선보험 적용범률이 달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선원보험도 이원화되어 있어 어업인 불편, 보험가입 및 운영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용의 일원화와 재해어선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함.
 - ※ 동일사업장내 어선이 2척 이상인 경우(권현망, 선망등) 등급별로 보험가입대상이 서로 다름.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수협이 선원 및 어선공제를 법률에 의한 정책보험으로 전환하여 어업인 복지증진 및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함.
 - 어선원보험 적용대상을 근해어업허가어선, 8톤이상 및 5인이상 상시어선원 고용어선의 소유자는 의무가입토록 하고, 기타는 임의보험으로 함.
-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재산의 보호 및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류에 대하여 태풍(폭풍)·해일·적조의 위험을 부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
 -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어류·양식업을 우선 적용함.
 - 양식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율의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율을 국조보조로 지원함.
- ※ 농업의 경우, 2001년 3월 1일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태풍, 서리, 우박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6. 수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가.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 예금자 보호, 생산자 단체로서의 회원조합의 역할 강화, 어업인 보호 및 회원조합의 추가부실 발생으로 인한 부실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 잠식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 ※ 최근 5년간 회원조합 결산결과 누적적자 7,082억원 발생.
- 적기시정조치등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인력감축, 임원개선 등 강력한 구조조정

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된 회원조합 경영개선계획을 금년 중 조기 완료하도록 함.

- 정부의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일선수협 자체의 경영건전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조합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추진함.
- 회원조합 경영개선자금의 정상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 전액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을 일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범위 특례규정을 마련함 (개정 수협법 부칙).
- 아울러 회원조합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경영 체제를 구축토록 함.
 - 조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감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조합 경영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진단의뢰하여 회원조합의 경영진단을 실시함.

나. 수협중앙회 경영효율화 방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비신용사업 중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차입금 이자부담 등으로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사업 추진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신용부문이 분리된 상태에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도부문에 대한 경제부문의 지원이 필요함.
 - 수협 비신용부문 자본적립금 전액 잠식, 신용부문의 부실회원조합 자금지원 기능의 비신용사업 이전 및 지도사업비 부담 이전 등으로 경제사업 부문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음.
- 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잠식된 경제사업부문의 자본적립금(943억원)을 정부가 5년간 분할지원하고, 수협중앙회 자체 자구노력을 실시하여 경영의 조기정상화를 추진토록 함.
- 불안정한 국제원유가 및 수산보조금 감축에 대비하고 어업인들에게 저가의 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 유류저장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2003~2005년간 2개지역 40만 드럼 규모.

제5절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 검토 배경

- '9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WTO체제의 출범,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체결 등 새로운 경쟁구조 속에서 장기간 누적되어온 수산업의 구조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기여해 왔음.
- 그러나 그 동안 수산정책이 주로 직접적인 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음.
 - 어업·어촌의 정보화 수준은 도시지역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 관련 통계의 신뢰성도 매우 낮음.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어업인구의 감소와 어업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공동화와 어업후계인력의 양성 및 공급능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
 - 수산과학 기술수준은 수산선진국(미국, 일본) 대비 50~80% 수준으로 수산분야의 개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매우 취약함.
 - 지방분권화 확산, WTO-DDA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나, 수산정책 추진체계와 관련조직은 여전히 과거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의 동력으로서 광범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인적자원의 육성, 새로운 기술개발기반 강화, 그리고 이를 선도하는 정책추진 체계와 관련조직의 개편 등 수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산통계 및 정보화의 강화

가. 수산통계제도 개선

-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을 통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확립함.
 - 해양수산부내에 수산통계 기획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통계조사조직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조직(수산기술관리소, 지방해양수산청등), 수협, 원양협회 등을 활용함.
 - 통계조사기획, 집계·처리, 결과공표 및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함.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유통통계, 양식통계, 어촌통계 등 기존의 수산통계를 확충하고, 아울러 신규 통계를 개발함.
 - 앞으로 공신력 있는 체계화된 정부승인 수산물유통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절실함.
 - ※ 일본의 경우 1952년부터 수산물 유통통계를 실시하고 있음.
 - 유통명령제, 양식관측제 등의 실시를 위해서는 정확한 양식통계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 어민의 의식변화, 어촌의 생활 및 주거환경, 어촌관광자원, 어촌복지 등 어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촌통계조사를 실시(5년마다 실시하는 어업총조사시 어촌통계조사)할 필요가 있음.
- 표본설계의 개선을 통하여 표본오차를 줄이고, 통계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수산통계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됨.
 - 적절한 표본 및 표본크기로 표본설계를 개선하고, 통계용어의 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통계조사대상을 명확히 함.

나. 수산정보화 확충 방안

- 어촌과 도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정보화 환경을 조성함.
 - 어가 PC보급 확대, 어가홈페이지 구축, 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사업을 추진함.
 -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서 및 낙도지역을 순회하여 교육하는 정보화 서비스센터를 운영함.
- 수산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각종 수산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의 편리를 도모함.

3. 지속적인 수산전문인력 양성

가.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 현재의 수산계 고교를 영어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특성화 자연수산고와 진학과 취업 위주의 일반수산고 운영체제로 개편함.
 - 각 해역별로 1교씩 자연수산고를 지정하고, 영어 희망자만 입학시켜 직업학교 형태로 운영함.

- 자영수산고는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로 전환하고, 기존어민교육, 청소년 어업체험 교육, 어촌주민 교양 교육 등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함.
- 수산고 졸업자의 동일계 진학 및 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진학 희망 수산고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 졸업자의 공무원, 수협 등 수산업관련 기관 특채 확대
 -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관련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자격증 활용 제도의 정비
 - 졸업자 중 어업경영희망자를 해양수산부가 우선적으로 후계자로 지정하여 지원
- 수산계대학을 지역수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수산기술개발 및 보급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함.
 - 특성화 대학 지정을 전 수산계 대학으로 확대
 - 수산계대학 승선관련학과 학생의 해양계 대학에 준한 지원 확대

나.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활용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함.
 - 일정규모 이상의 어업경영체에 관련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채용 및 채용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어업경영체의 의견,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시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기준 설정
- 수산전문인력의 수산분야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함.
 - 전문인력의 수산업 신규진입이 용이하도록 수산업법상의 면허, 허가 등 어업권 취득규정 개정을 추진함.
 - 기술수용력이 저하된 노령경영자의 은퇴를 유도하고, 신지식 보유 전문인력의 어업경영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및 지원제도를 검토함.

4. 첨단수산기술 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해양의 방대한 자원잠재력과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는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BT, IT, ET 등 최신첨단기술의 접목에 의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수산업의 성장동력은 국가적인 수산과학기술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획·관리·평가 체제의 구축, 그리고 투자예산의 확대 및 인

력확보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수요대응형 및 장기적 시장창출형 기술 등 기술특성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수산과학기술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함.
 - 수산부문 국가기술지도(National Technology Road Map) 작성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제시함.
 - 수산과학기술개발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하여 작성토록 할 법적근거를 마련함.
- UR협상 이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개편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2004년도 이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일반회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
- 양식어업 등 기존의 비교우위요소를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산업으로 육성함.
 - 해양수산 생명공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사업기간('02~ '07) 중 해양 수산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
 -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공학육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자문·조정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해양생명공학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체제의 구축과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산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분야의 조사·연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선진어업 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실용적 첨단 양식기술 개발사업,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보급, 치어탈출장치 어구의 개발·보급 및 과학적 어장 탐색 및 청정해역 생산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5. 수산관련 조직체제 개편

- WTO-DDA협상, 한·칠레 FTA 및 한·일 FTA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수산분야 업무처리 능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통상협력 조직을 강화함.
 - DDA협상 및 FTA 등 수산통상관련업무를 총괄할 통상교섭심의관(3급) 및 통상교섭과 신설을 검토함.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수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대비하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관련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을 신설 또는 확충함.
- 한·중,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지속반복적 양자협상의 진행에 따른 전략의 수립과 회담 참석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과 불법어업의 단속, 어업분쟁의 조정 및 협상 등 기존 업무의 확대에 따라 어업협상 및 어업지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어업인들의 사회참여와 장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NGO 협력 및 지원, 사회정책보험의 개발, 어촌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어촌사회복지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함.
- 수입수산물의 급증, GMO 수산물의 확대 가능성 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도모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장비 및 인력확충이 필요함.
- 수산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지원기능을 강화함.
 - 총정원 범위내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 연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행정업무를 총괄적 조정·운영·협력하는 기능을 강화함.

제4장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의 확충

제1절 쾌적한 정주 공간의 조성

1. 검토 배경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와 혼주화는 더욱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면 지역에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인구 유출과 자연감소가 진행되어 2010년에는 인구가 2천 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면이 전체 면의 약 40%정도에 달할 것임.
 - 읍·면지역에서의 농가비율은 2000년의 40%미만에서 2010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 농어촌 지역이 과소화되고 기동력이 향상됨에 따라 정주체계상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 중심지의 기능이 약화되며 거주지와 중심도시(시·군청소재지급 이상의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정주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일부 면소재지는 자족적인 시장기능을 발휘할 만한 임계규모 이하로 인구가 떨어져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임.
 - 중심도시는 각 종 시설이 집적되고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어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 한편, 정보화가 진전되고 국민들의 가치관과 생활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농어촌공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기대도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전망됨.
 -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함에 따라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주5일 근무 등이 실시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될 전망이다.
 - 전국을 만나질로 묶어주는 고속 교통망이 정비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의 관광 및 여가 활동이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 은퇴자 또는 노령자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임.
- 이러한 역할에 대응하면서 농어촌이 정주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주거지 개발, 농어촌 관광 등 농어촌 개발의 정책 대상을 도시민에까지 확대함.
- 도시적 편리성 추구보다는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쾌적성을 유지·발전시킴.
- 모든 지역에 대한 분산투자보다는 개발 의욕이 높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 육성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파트너쉽을 중시함.

2.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가. 농어촌 거점중심도시의 육성

- 농어촌의 중심도시(시·군청 소재지, 성장가능성이 높은 읍 등)에 산업시설, 유통·금융·문화·복지·생활관련 시설 등을 집중 입지시키며, 배후 농어촌과의 교통·정보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개발거점'으로 육성함.
 - 농어촌 거점중심도시 육성은 적은 투자비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임.
 - 농어촌 거점중심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 등을 가급적 입지시키며,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인구의 집중을 유도함.
- 농어촌 중심도시 육성수단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함.
 - 2000년 말에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특히 지방소도읍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함.

나. 마을단위 개발사업의 확대추진

- 마을을 농어촌지역개발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마을은 농어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유효한 개발단위임. 특히 마을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 단위(직접지불제, 농어촌관광 등 추진단위로서도 마을이 적합)임.
 - 건전한 마을 공동체는 농어촌의 개발비용을 줄여주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국의 4만개가 넘는 모든 마을에 대한 분산 투자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개발의욕이 높은 마을을 공모방식으로 선택하여 종합개발방식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함.
 - 소멸이 예상되는 마을,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마을에 대한 투자는 가

급적 억제함.

- 주민들에게는 공모 방식이 스스로 마을의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는 포괄보조금을 지급하여 따라 주민스스로가 소득원개발, 생활환경정비,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용도에 정부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는 마을단위 농촌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농림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행정자치부:아름마을 가꾸기,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 등)함.
- 공모방식과는 별도로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자율적 개발 분위기를 정착시키며 농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유도함.
 - 예를 들어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 독일의 「우리마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경연대회는 195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다. 다양한 주거 정비 정책의 추진

- 농어촌 공간의 주거지로서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쾌적한 주거지를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한정되어 있음.
 -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행정자치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 농림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민간업자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주거지가 개발됨으로서 고밀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등 도시와의 차별성이 높지 않음 (1990년 읍과 면의 주택총계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3%, 1.5%였으나 2000년에 읍 36.7%, 면 11.8%로 급증).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정비 정책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
 - 현행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용자금 지원규모(현재 2,000만원)를 늘리고 이자율은 하향 조정하며 주택용자금 지원이 가능한 주택규모 상한(현행 30평)을 완화함.
 - 농어촌 주거환경종합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감. 특히 관광시범마을, 중심마을, 성장가능성이 높은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 실비용 주택단지, 농촌형 임대주택, 전원주거단지 등을 정책적으로 조성함.
- 농어촌 주민에 의한 신규 단지 조성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농지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할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함(일본의 농주조합법 참고). 이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에 농지소유자에 의한 택지건설 근거, 장려조치(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함.

3.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가. 쾌적성 증진을 농어촌 공간정비의 주요 목표로 설정

- 농어촌 어메니티의 유지·보존은 국토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장소적 매력을 높여 주어 농어촌관광 등을 통한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농어촌 어메니티는 WTO농업 협상 의제중의 하나인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NTC)의 주요 구성 요소임. 따라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나. 환경친화적 관점에서의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쾌적성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환경친화적 계획 및 시공 기법, 재료 등의 지속적 개발 : 도로, 하천, 택지개발, 농업기반정비 사업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계획 및 시공기법과 자연재료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함.
 - 환경친화적 개발을 제도적으로 유도 : 계획단계에서 환경 및 생태자연 등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종합적인 관점에서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 바이오매스(Bio-mass)를 활용한 난방, 태양열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을 개발함(예: 농어촌 자연에너지이용 촉진사업(가칭))
 - 농어촌의 자연생태계(수변공간, 비오톱 등)를 보호하고 녹지공간(예: 농어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및 농어촌생활기반사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추진함(예: 농어촌자연환경종합정비사업(가칭)).

다. 농어촌 경관 보존을 위한 종합적 노력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점증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존·창출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유념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어촌 경관을 창출하고 이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추진함.
- 농어촌 경관은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작성하여 그 지역의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관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스스로의 경관 보전 활동을 수행케하며 외지인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해당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함.
 - 경관조례 및 경관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나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지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는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경관 보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함.
 - 한국형 경관자원의 발굴, 경관계획수립 방법, 경관을 배려한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함.
 -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건축경관, 가로경관, 마을화단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경관정비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함.

4.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

가. 농어촌 육상 교통 운영주체 다양화

- 기존의 운송회사가 수지 악화를 이유로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통해 유지시키기보다는 공영화나 주민자치조직으로의 운행주체의 변화를 유도함.
-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업체의 경영수지는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운행 기피 노선이 갈수록 증가(2000년도에만 농어촌버스는 전체 보유대수의 약 1/5이 감소)하고 있음.

- 수지 악화를 이유로 기피하는 노선은 반납신청을 받아 주민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주민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함.
- 이 경우 차량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된 차량을 회수하여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공영버스로 활용하되 차량을 제공한 개인에게도 지원금을 보조함.
-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일반 국고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차량구입비 보조보다는 운행비 보조로 전환하여 일반 차량의 공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현재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운송회사에 대한 적자 보조)과 농특세에 재원을 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음.

나. 연안 교통에 대한 종합대책 강구

- 연안여객선용 연료유에 대한 조세감면을 유지하여 도서민에 대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료유에 대한 조세감면이 폐지될 경우 여객선 운임이 상승하여 도서민 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면세유 공급 중단시 여객선 운임 18%상승 예상) 조세감면을 계속하여 도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운항의 효율성을 높임.
-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건조자금을 지원함.
 - 연안여객선의 경우 해양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노후여객선을 법정기한내 대체토록 지원하지 못할 경우 도서 지역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조선자금을 농특회계상의 지원항목에 편입하여 지원함.
- 연안여객선 전용 선착장의 시설 확충을 지원함.
 - 선착장 시설이 없어 여객선의 접안이 안되고 이용객의 승·하선이 어려운 기항지나 선착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어려운 기항지의 시설을 개선함.

5.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가. 어촌종합개발의 지속적 추진

-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생활여건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미 완료된 지역이 많아 이 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94~2008)에 미포함된 65개 권역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나. 어항의 지속적 정비

- 어항의 정비 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특히 어촌 정주어항은 지방재정 약화로 개발수준이 더욱 미약하기 때문에 지속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지정 및 지방지정어항에 집중 투자하여 어항의 완공율을 제고하고, 어촌 정주어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육지 소규모항 중 이용율이 높은 곳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함.
- 특히 신규지정 개발항은 지역특성에 따라 관광, 교통, 생활 거점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높음.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가칭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추진함.
- 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촌 정주 어항에 대하여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어촌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제2절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경제 활성화

1. 검토 배경

-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어업소득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의 증가 지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의 97.4%에서 2000년 80.6%, 2001년 75.9%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1960년대 소득조사 이후 가장 큰 격차).
 - 선진국과 비교하여 농외소득 비중이 낮아 농업소득 감소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00년 한국의 농외소득(이전소득포함)은 52.8%인데 비하여 일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수준임.
 - 이처럼 농외소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농어촌에 농어업 이외의 일자리가 그만큼 제약되어 있기 때문임.
- 농업만에 의지해서는 농가소득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접지불제 등 획기적인 농가소득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어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이 농어촌에 입지하여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농공단지 조성 등 농어촌지역의 산업 입지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함.
 - 농어촌 관광과 같이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 도시민과의 관계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간·도서지역의 공동화를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을 도입함.

2. 농어촌 지역의 산업입지 촉진

가. 농공단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 농공단지 정책은 1984년 시작된 이래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의 확대,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공단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다수 입주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노임소득 외에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낮으며, 입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임.
- 반면에 고용측면에서는 2000년의 기준 10만4천명 고용원중 현지인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농공단지가 입지한 지역이 산업-생활-교육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어촌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기준 강화 및 입지 후 연계개발을 추진함.
 - 입지 기준으로 농어촌 중심성을 중시하여 가급적 읍급 이상 도시에 입지 시킴.
 - 농공단지개발과 병행하여 초고속통신망, 물류·용수 등 기반시설, 주택과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함.
 - 특히 농공단지가 입지한 인근에 문화마을과 같은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일차리와 거주지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최근 경기 호전 등으로 조성 수요가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과지역주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함.
 - 농공단지의 시·군별 한도 규모(현행 30만평)를 늘리며 논의 편입비율제한(현재 단진 면적의 60%이내) 완화를 검토함.
- 공동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여 입주업체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함.
 -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농공단지의 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함.
- 인력 훈련과 취업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함.
 -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비보조 현실화, 고용장려금 지급, 전직상담소 설치·운영 등을 지원함.
-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함.
 - 민간이 조성하는 소규모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농공단지와 동등하게 지원하며, 제조업 위주의 입주업체 제한 규정을 완화함.
 - 특정 업종 중심의 전문단지,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강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함.
 - 다만, 농공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경관과 쾌적성을 해치지 않도록 입지 선정, 단지 설계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함.
- 농공단지 입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함.

나. 농산물 가공산업 등 지연산업의 활성화

- 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산업의 농어촌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원료,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전통주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함. 특히 맥주 생산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장 면허제를 도입함.
 - 농촌지역 전통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며 재산세·종토세·법인세 등은 일정기간 동안 감면함.
 - 식품제조·가공시의 주원료 및 부원료 제한을 완화함. 특히 주류 한약재 등의 식품 가공시 주·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3. 농어촌관광의 활성화

가.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을 추진

- 농어촌 관광을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농어촌 관광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상품화함으로써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임.
 - 농어촌 관광은 환경농업과 체험어장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직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도시민은 농어촌 관광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며 농어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외국 사례

- <프랑스> 전체 관광수입 중 23%(1992년)를 농촌관광이 차지, 농가의 관광사업이나 생산물 직매 등도 농업활동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영국> 농장경영다각화사업, 미사용건축물 보조사업, 농지임지화사업, 농장관광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음.
- <일본> 도시민과 농어촌주민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단기 방문의 농어촌관광을 추진하고 있음. 체험학습, 시민농원·오너농원, 지역특산물의 직매, 축제·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관광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나.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 도시민의 의식조사 및 시장조사를 정례화하여 이를 농어촌 관광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도시민이 농어촌 관광에 대한 관심, 농어촌 관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각 종 체험활동 경험 및 의향, 농어촌에서의 숙박 경험 및 의향, 바람직한 농어촌 모습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함.
- 도시 주부 등의 농어촌 방문을 알선하거나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활동을 장려함.
 -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
 - 유치원, 초등학교생들의 농어촌 현장체험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정규수업에 농촌현장체험시간을 편성하거나 방학숙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 농어촌관광 관련 정보를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도시민의 수요를 농어촌 관광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함.
 -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어촌 관광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함. 이 방안으로 현재 농림부, 농협, 관광공사, 지자체, 기타 개인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링크체제를 강화함.
 - 농어촌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농촌관광 경영주 혹은 마을 단위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함.

다. 농어촌관광 물적 기반의 확충

- 농어촌 관광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농어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를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 꽃길 조성, 마을 숲가꾸기, 수변공간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장려함.
 -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농어촌관광관련 기반시설(공동 숙소, 테마파크, 자연탐방로, 간이 스포츠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함(가칭 농촌관광기반정비사업, 어촌관광기반정비사업).
- 마을 단위 농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관광의 물적 및 인적 기반을 확충함.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행자부 아름마을 가꾸기,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휴양마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각 사업이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추며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기존 관광 농원, 휴양 단지, 민박 마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종합 개발 사업과 연계하며, 면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어촌 관광과 연계함.
-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되, 사업내용에 민박용 별채 건립, 마을 소공원 조성 등을 포함시킴.

라.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 확립

- 농어촌관광 경영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을 완화함.
 - 농어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소규모 음식물 판매 및 숙박행위,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며, 농어촌관광사업에서의 소득을 소득세 감면대상 부업소득으로 인정함.
 - 펜션업 등을 추가하여 농어촌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관광농원 등의 참여 규제를 완화함.
- 농어촌 관광의 최종 수익이 개별 경영체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숙소와 식당을 개설하기 위한 농어가 주택의 개보수 및 정화조 등의 위생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농어촌관광실무교육훈련 참가비 지원, 마케팅을 위한 광고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함.
- 현재 농어촌 관광 관련자가 농어촌관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함.
 - 특히接客서비스기법, 마케팅, 인터넷사이트 관리 능력, 체험활동 지도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지 안내 등에 관한 교양교육을 실시함.
- 농어촌관광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관련자를 조직하고, 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민간기구를 구성함.
 - (財)도시농촌교류센터(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초기에는 정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함.
- 농어촌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함.
 - ※ 일본의 농산어촌휴가법 참조

마. 어촌·해양 관광의 적극적 추진

- 어촌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관광과는 별도로 어촌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갯벌, 도서, 어업을 이용한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

-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르는 어업에서 즐기는 어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함.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 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함.
-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어촌민속전시관건립을 계속 추진함.

4. 도시자본 유치와 농어촌지역 활성화

가. 도시자본의 농어촌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농어촌 내부의 자생적인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는 도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은 농어촌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민의 왕래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함.
-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 완화, 알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함.
 - 특히 ‘전원주거’, ‘여가·휴양공간’으로서의 농어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도시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투자유치센터」를 개설하여 관련 분야 정보제공, 투자상담 등으로 농어업·농어촌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함.
- 농어촌자원과 도시자본을 연결하는 공동개발방식의 다양한 사업을 개발함.
- 도시자본에 의한 농어촌의 난개발, 자연생태 및 전통문화 훼손 등 부작용 억제 대책을 강구함.

나.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활용 촉진

- 이농 등으로 공·폐가가 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도시민이 은퇴주택 및 주말용 주택 등으로 활용함.
 - 개인, 회사 등이 농어촌빈집을 취득하여 신축 또는 개축(리모델링)하여 주말용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민이 폐·공가, 농지·초지나 자연휴양림내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말 등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민의 농가주택 등의 보유 또는 매입을 위한 양도소득세, 별장, 초지전용 관련 규제를 완화를 검토함.
 -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상시거주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종토세 중과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함.
 - 초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 건축시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함.

다. 관광·체육·위락시설 등의 유치

-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관광·체육·위락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적극 유치 될 수 있도록 세제, 토지 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면지역에 위치한 관광·체육시설에 농지조성비, 초지조성비, 대체조립비 등 부담금 감면을 검토함.
 - 사업대상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함.

라.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유치

- 민간기업 및 개인이 노인주택, 노인형 아파트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거나, 농가가 단독 또는 도시민과의 공동 출자로 기존 농지 및 농장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함.
 - 노인복지시설 부지로 국공유지·국유림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에 복지시설 설치시 재산세·종토세 면제 방안을 검토함.
 - 1주택을 소유한 도시 노인이 농어촌지역(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택을 추가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함.

마. 교육, 연수·수련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의 학교시설과 민간 기업체 및 공공단체의 임직원 수련·연수시설,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등이 농어촌에 쉽게 입지 할 수 있도록 유인 조치를 강구함.

- 국유지·국유림 또는 폐교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함.
- 교육, 연수·수련시설에 대해 농지조성비, 대체조립비를 감면을 검토함.
-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토세 등의 감면 조치를 강구함.
- 농어촌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 육성기금의 건축비, 시설보강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함.

바. 어항 구역내의 투자 촉진

- 어항구역내의 기타 어항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을 수산물의 생산, 유통, 문화 관광 등 복합사업공간으로 개발함.
- 어항배후시설 부지 매각 및 민간자본시설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어항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함.

제3절 농어촌 개발체계의 개선

1. 검토 배경

- 여러 부처가 표와 같이 농어촌개발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중앙 부처가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수립한 계획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미약함.
 - 농어촌 공간정비에 관한 통일된 비전 제시와 일관된 사업추진이 어려움.
 - 부처간의 영역 다툼으로 새로운 개발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표 4-3-1〉 농어촌개발사업 주관부처와 사업내용

주관부처	사업명칭	사업기간	근거법령 및 기타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붕개량사업	'67-'75	'76년 이후 불량주택개량으로 확대
		불량주택개량사업	'76-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95.12.29)
		불량화장실개량사업	'80-'96	'79년 부터 지자체별로 추진
		입식부엌개량사업	'91-'96	'83-'90까지 일부 지자체별로 추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97-'0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취락구조개선사업	'76-'94	'95년 이후 종합적 마을개발사업으로 확대
		패키지마을조성사업	'95-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소도읍개발사업	'72-현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01.7.2)
		오지종합개발사업	'90-'04	오지개발촉진법('88.12.31) 1차 10개년 계획('90-'99) 2차 5개년 계획('00-'04)
		도서종합개발사업	'88-'07	도서개발촉진법('86.12.31) 1차 10개년 계획('88-'97) 2차 10개년 계획('98-'07)
농림부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01-'04	상향식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90-현재	농어촌정비법('94.12.22)
		문화마을조성사업	'91-현재	농어촌정비법
농촌진흥청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01-현재	상향식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83-현재	농촌진흥법 '97년 부터 행자부에서 농진청으로 이전하여 통합 추진
산림청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	'02-현재	농촌진흥법
해양수산부		산촌종합개발사업	'95-'04	산림기본법
건설교통부		어촌종합개발사업	'95-'06	농어촌정비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96-현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2. 농어촌계획 체계 구축

가. 새로운 국토법 틀 속에서 선계획·후개발 체계 구축

- 농어촌지역의 공간을 질서 있게 관리하며 난개발, 저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차원의 종합적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개발사업이 집행되는 선계획-후개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기본계획-도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농어촌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됨.
 - 특히 동 법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 예를 들면 성장이 예상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마을에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2종지구단위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마을계획 제도의 도입

-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내용에 구속력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
 - 계획에 의거하여 마을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해당 주민에게 계획 수립과정은 지역의 미래상 및 필요 사업 등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수립된 계획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유인조치를 통한 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함. 예를 들어 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대해서는 공공개발 사업의 우선 시행권을 부여하거나 각종 시범사업 공모시에 가산점을 부여함.
- 계획수립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마을계획수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함.
 - 각종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비에 마을계획 수립비를 포함시킴.

3. 농어촌 개발의 추진체계 조정

-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간 협력을 제도화함.
 - 기획예산처,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산자부, 산림청, 광역 지자체 등의 과장급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함.

- 상설 협의체에서 농어촌관련 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농어촌개발사업 통합시행지침”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적용함.
- 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간 농어촌개발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함.
 - 오지면(행자부), 일반면(농림부), 도서 및 어촌(행자부, 해수부), 산촌(산림청) 등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농어촌개발 업무를 부처별 기능에 맞추어 「기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4. 농어촌개발 재원의 확충 및 배분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재조정하여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함.
- 지방양여금에 교통세와 농특세의 편입비중을 확대하고, 국세세목 구성을 재편하여 지방양여금의 총량을 확대함.
- 지방양여금에서 농어촌개발 분야에 대한 재원 비중을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함.
- 농어촌개발사업 부문 내에서도 사업간 대상지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우선순위, 재원배분 비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어촌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소도읍 육성 및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환경 및 어메니티 관련 사업의 투자 비중을 높임.
 - 도로는 양적 확대보다 환경친화적 도로 정비와 같이 질적정비 쪽으로 투자 방향을 조정함.
- 농어촌개발사업 시행시 지원규모나 자치단체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
 - 지역발전수준,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낮추거나 부담분을 시·도가 확보하도록 함.

제4절 농어업·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1. 검토 배경

- 농어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학급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어촌 교육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이촌향도(離村向都)하는 세대의 상당수는 교육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의 자녀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 소규모 학급, 소규모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지 못하고 농어촌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도·농간 학력격차는 더욱 커져 상급학교 진학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이촌향도를 부추기고 있음.
 - 결과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이촌향도) ⇒ 학교 통폐합 ⇒ 교육여건 악화 ⇒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 ⇒ 이촌향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농어촌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어촌교육의 기반마저 와해될 우려가 있음. 지역에 따라서는 1개 면 1개 초등학교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방법을 통해 농어촌 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 학교와 시설의 활용

가. 농어촌 학교의 지역 종합교육문화센터화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여유 시설(공간)을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함.
 - 농어촌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 통폐합을 지양함.
 -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남는 시설(공간)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중심학교, 통합교육센터, 교육문화종합센터 등으로 발전시킴.
 - 면 단위에서 지리적 위치 및 규모 면에서 중심이 되는 학교와 주변의 소규모

학교들을 연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및 교원인력을 공동 활용함.

- 독립적인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되, 시범실시과정에서 파악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함.
- 읍·면 단위 초·중등학교를 지역의 종합적인 교육·문화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임.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함.

나. 폐교를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활용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교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주민과는 관련이 적은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폐교시설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폐교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함.
 -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주민들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마을 도서관, 놀이방, 건강관리실 등과 같은 주민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함.

3.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가.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문제 해결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교의 교원 정원을 확대함.
- 수업자료의 준비 및 교사의 각종 행정업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정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교사 인력을 확충하고 활용함.
- 졸업 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학생의 교육·사범계 대학 특례입학제도 및 교사우선임용제도를 도입함.
- 불가피하게 복식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식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복식수업용 특수교재 및 학습 보충을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함.

나. 전공 상치교사 문제의 해소

- 중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교과목을 담당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사인력풀(pool)제를 최대한 활용함.

- 지역의 각급 학교 교사인력을 교육청 단위로 총망라하여 교사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순회교사인력을 확충·활용함.
- 지역사회의 각계 전문가를 해당 분야의 교원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실습·교과 과정에 농어촌 학교 실습·교과지도과정을 필수요건으로 정함.

다. 농어촌 학교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 농어촌 학교의 관사를 신·개축하여 교사들의 생활환경을 도시수준으로 개선함.
 - 가족이 함께 생활해도 불편이 없는 주거시설,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텔레비전 위성방송의 수신 등 도시수준의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여건을 구비함.
- 가족이 농어촌에 함께 거주하는 교사에 대하여 농어촌 거주수당을 지급하고 동일지역의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교사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농어촌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 등을 확대함.
- 농어촌 근무교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양양을 위하여 외국의 농어촌교육 현장을 시찰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라. 농어촌 병역의무 교사제도 도입

-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교사인력의 농어촌학교 근무를 유도함.
 - 농어촌 출신 교사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치함.

마. 농어촌학교의 학교급식 확대

- 초등학교에만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농어촌의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확대 실시함.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가 많지 않으므로 공동급식을 실시하여 급식시설의 활용도를 높임.

바. 농어촌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농어촌 초등학생들이 매년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 중에서 1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초등학생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특기교사 또는 강사에게 사용을 허용함.
- 시·군 교육청 단위의 특기적성교육강사를 풀제로 운영함.

사. 통학버스 운영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함.
- 농어촌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
- 농어촌 공용버스의 운영과 연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

아.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경지면적이 1.0ha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경지면적이 2.0ha 이하인 농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용자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범위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용자해 줌.
- 용자규모의 정액화로 인한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비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함.

4.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가. 대학특례입학제도 개선

-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현재 입학정원의 3%, 학과별 정원의 10%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각각 5%, 15% 수준으로 확대함.
- 졸업 후 농어촌 근무를 희망하는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운영함(졸업 후 농어촌 지역 우선 임용).
- 농수산고 졸업생에 대한 농수산계 대학 특별전형 비율을 입학정원의 5%, 학과별 정원의 15%까지로 함.

나. 농어촌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도시유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실비로 제공함.

다. 대학 입학 시 지역할당제의 도입 권장

-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대학입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신입생 선발 시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함.
 - 서울대 등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입학정원 내에서 지역별(도 또는 시·군)로 일정비율의 입학정원을 설정·운영함.
 -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지방의 국·공립대학은 신입생 선발 시 해당지역 고등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할당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함.

5. 농수산계 후계인력 양성의 강화

가. 농수산계 고교의 운영체계 개편

- 절대적으로 부족한 후계농수산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고는 각 도에 1개교, 수산고는 각 해역별로 1개교를 자영 농수산고교로 지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협력학교로 집중 지원함.
- 자영농수산고 중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에는 전문화 과정(2~3년)을 설치 운영 하도록 지원함.
 - 졸업생은 농수산인력정책과 연계하여 영농 및 영어 정착을 적극 지원함.
- 자영 농수산고의 학교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함.
 - 교육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재, 실험실습기자재 및 농(어)장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함.
 -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 앙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함.
 - 산학협동을 통한 연계교육·실습·연수기회를 확대 강화함.

나. 농수산계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재정립

- 순수 농수산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중견 영농·영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함.

- 실습·훈련 기자재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현장 경험 및 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수산분야의 관련전문가들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우수 입학생 확보와 학생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전문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예 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함.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능한 농수산인력의 확보·양성에 기여하도록 함.
 - 졸업생들이 영농·영어 정착을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함.
 - 졸업생들의 영농·영어 정착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과 아울러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농수산계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농수산업전문대학 및 대학의 실험·연구시설, 그리고 교수인력을 활용함.
 - 대학별 특성화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기술 향상을 지원함.
- 농어업인의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어교육을 체계화함.
- 기존의 기초과정의 반복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기초과정,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으로 단계화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함.
 - 교육은 현행 농수산 관련 기관 중에서 시설, 인력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 학점제의 운용을 통해 일정한 과정(학점)을 이수하면 동등학력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농어업인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제5절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1. 검토 배경

-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
- 농어촌 지역은 주로 젊은 층의 이농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업인들은 장기간의 노동과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농부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음.
 - 농부증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완전한 치료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보건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의사 등 의료인력 역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음.
- 그 동안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왔고, '94부터 농특세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왔으나 농어업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94~2001년까지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총 2,793억 원의 농특세가 지원되었음.
- 증가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됨.
 - 농어촌지역에서는 노령화에 의한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와 함께 농어작업에 의한 농부증(어업인 포함)의 증가가 예상됨.
 - 농어촌지역의 교통 및 통신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임.

2.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시설·장비·인력 확충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한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배치함.
- 보건지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함.
 - 1차 의료장비, 이동진료차량, 공중보건의의 숙소 개·보수 등을 지원함.
-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지역 노인 및 거동불편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함.
 - 방문보건의료기기세트 등 장비를 보강하고, 방문보건의료차량의 운영비 지원을 확대함.

나.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근무방안 강구

-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이 정한 최소 배치기준까지 전문의료인력을 확보함.
 - 장기적으로 보건소는 일반의사 중심(50% 이상)으로 충원하고,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확대 충원함.
-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하여 배치 전에 보건사업전담, 보건행정전담, 전문과목진료, 1차 진료 등의 기능별로 분화하여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함.
- 공중보건의사는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여 주민친화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유도함.
- 보건진료원들이 가정간호 및 사례관리서비스(Case Management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회를 부여함.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건지소가 폐소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순회진료를 강화함.

3.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 지방자치단체(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실천하는 우수 보건소를 선정, 포상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4.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체계 확립

- 농약중독, 농어업 작업에 의한 사고 등 다발성손상과 특정부위손상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도시와의 응급 후송체계를 구축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약 20개 지역)의 보건의료원이나 정부지원 민간병원을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장비 및 운영비를 보조함.
 - 농어촌지역 119구급대 차량에 응급구조사의 동승을 제도화하고, 인근 보건지소나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응급 협조체계를 구축함.
- 농어촌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노후응급의료 장비를 개선함.
 - 장비 확충 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중복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함.

5.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 농어업인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고령자,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 질환, 농부증(어업인 포함), 잠수병, 치과질환, 고혈압·당뇨·치매·뇌졸중 등 4대 질환 등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질환 집중관리 및 가정간호 사업을 확대 추진함.
 - 농어촌지역 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함.
- 농어업 작업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확대함.
 - 우선, 읍·면 당 1개소씩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주민이용시설이 한 곳으로 집적되도록 유도함.

- ※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경우, 안성면민의 집(기존 면사무소)내로 보건지소를 이관하고 목욕탕, 이·미용실을 설치 운영함.
- 건강관리실과 찜질방 등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해상조업과 같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농부증(어업인 포함) 예방 및 치료방법을 강구함.
- 민간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등과 제휴하여 농부증 등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질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함.

나.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도서 및 벽지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보완함.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도서개발촉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들을 대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상적인 부분은 구체화함.
- 도서·벽지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도서벽지 의료지원 중앙기구, 도서벽지 의료지원센터, 도서벽지 지정병원, 응급후송선 및 헬리콥터, 마을건강원, 도서벽지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법을 보완함.
-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
- 군경 및 행정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및 해상교통 장비 등 지원체계를 수립함.
-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에서 쾌속 후송선 4척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능 및 지역적 한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군경 선박 및 헬리콥터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원 받아 후송하고 있는 실정임.
- 주민자치조직(의료생활협동조합)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한 의료자원이 유치되도록 함.
- 재정지원, 공공건물 저가 임대, 공중보건의사 지원 및 도서근무수당 제공 등의 지원책을 강구함.

제6절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농어촌 복지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농어촌 복지의 종합적인 비전 제시나 계획이 미흡하였고, 농어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왔음.
 - 농어촌복지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미비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등 효율적인 농어촌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취약함.
 - 지금까지의 농어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은 제한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복지 수요자들의 참여나 의견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많았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인 농어촌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크게 부족했음.
 - 도시지역의 복지프로그램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농어업 및 농어촌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린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미흡했음.
- 최근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문제가 농정의 핵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순한 산업적 가치보다 농어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새롭고 다양한 사회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어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 발전과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21C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농어촌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어촌교육·복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농어촌교육·복지특별법 제정

- 농어촌교육·복지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어촌 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역은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촌지역을 포괄하며 전국의 군 지역과 도·농 통합시 및 광역시의 읍과 면 지역을 말함.
-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201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
- 농어촌교육·복지증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주요 농어촌 교육·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함.
- 국가는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농어촌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
- 농어촌교육·복지증진특별위원회는 농어촌지역의 교육·복지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3.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함.
 - 농특회계 등을 통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함.
 - 지원기간은 일정기간(10년 정도) 연장 후, 향후 국고지원의 연장, 지원방식 등을 재검토함.
-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은 전액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사용하고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일반예산 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
 - 2002년 농어민연금의 농특세 예산 총액 707억 원 중 보험료 지원은 271억 원(38%), 관리운영비지원은 436억 원(62%)임.
 - ※ 2003년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비율(최저등급 기준)을 현행 1/3에서 1/2로 확대 예정임.
- 현행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지원, 정율지원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함.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제도 개선

- 농어촌지역 보험가입자의 부담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역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업인과 직장인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함.
 -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의 금융거래자료 축적 및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 구축 추세에 맞추어 소득비례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함.
-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폐경 농지, 빈 축사, 사용되지 않는 수산양식장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경우 소득 관련 보험료를 경감함.
- 농어촌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이 낮은데다,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어촌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비율을 조정함.
 - 현재는 일반 농어촌(22%경감)과 도서·벽지지역(50%경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 폭(22~50%)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보험료 경감배점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
 - ※ 현재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시간” 및 “가장 가까운 병원 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의 최대배점 기준이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은 농어촌 주민들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함.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므로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 산정 시 농어촌 주민들의 특수성을 잘 반영해야 함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은퇴 여건을 조성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 재산, 부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을 조정함.

- 농업소득을 조사할 때 농축산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을 실사하거나 합리적인 소득추정방식을 도입함.
- 부양의무자 구분을 절대적 부양의무자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하고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차등 적용함.
 - 부부간 및 1촌 중 혈연관계인 자는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하고, 2촌 이상(형제, 손자녀 등), 1촌 중 비 혈연관계(사위, 며느리, 서부모 등) 및 결혼한 직계존속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함.

6.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가. 영유아보육 지원

- 지역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
 -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함.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희망자에게 학교, 노인회관 등을 우선적으로 임대함.
 -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함.
- 마을 단위의 놀이방은 보호와 탁아 위주로 운영하고, 리 단위의 탁아방은 농어촌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농협 등에서 지원하여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근거리 보육을 담당함.
 - ※ 시·도별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농어촌보육 인력을 양성함.
- 저소득층 및 만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되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개선함.
 - 보육료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함.
- 농어촌형 친환경 보육시설을 육성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함.
 - 각 도별로 1개소를 생태환경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농협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함.
 - 시범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참여 기관의 확대를 유도함.

나. 여성복지 지원

- 현행 농가도우미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되, 여성어업인에 대한 어가도우미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확산하고(어업인 포함) 및 내실화를 추진함.
 - 농어촌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촌여성의 부업 규모의 창업을 촉진하며, 농수산물 가공 관련 사업장을 유치함.
- 여성농어업인들의 가족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취사장 설치를 검토함.

다. 노인복지 지원

- 도시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농어촌지역으로 확산시킴.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확대함.
 - 독거 노인에게 위급상황 발생시 보건소, 병·의원,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 등으로 응급구조 요청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어촌노인을 포함하도록 조정함.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농어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을 확대함.
 - 시설 확충,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함.
- 경로당·노인정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리운영비의 지원을 확대함.
 - 농번기에는 임시 탁아소로 활용하고, 농한기에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며, 민요공연·건강교육·가족관계 개선교육·음악교실·예절교육 장소로 활용도를 제고함.
 - 농어촌 경로당 및 노인정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미등록시설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함.

라. 문화복지 지원

- 문화복지시설들을 상호 연계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복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
 - 대규모 공연·전시·체육시설 등은 군 단위로 설치함으로써 이용률 제고함.
 - 면 단위 문화복지시설은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집적하고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함.

- 농업기술센터, 농협, 복지회관, 마을회관, 지역 내 학교 등 시설간 연계를 위한 「문화네트워크사업」을 도입하되, 2003년에는 전국의 20개 정도의 면 단위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함.
-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순회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면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